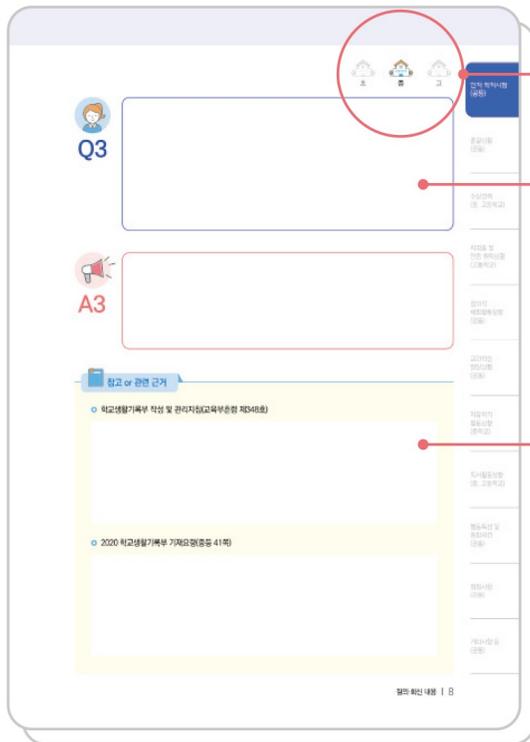


2020  
학교생활기록부 종합 지원센터  
질의·회신 사례집



## 일러두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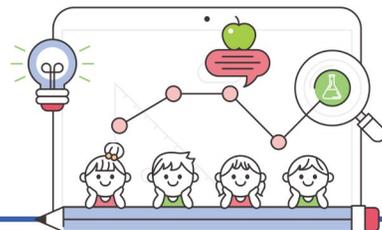
- 본 사례집은 학교생활기록부 종합 지원 포털(<https://star.moe.go.kr>)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2020년 4월부터 12월까지 접수된 사례 중 참고가 될 만한 사례를 일부 재구성하여 제작되었습니다.
- 학교생활기록부 관련 법령 및 정책의 개정 등으로 인한 적용 시점에 따라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내용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2021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관리는 각 학교급별 <2021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례집의 수록 내용은 관련 법령 및 지침에 우선하지 않으며, 해당 질의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확대·적용 또는 정정을 위한 증빙자료로서의 활용은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사례집은 학생·교원·학부모의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자료이며, 학교생활기록부 관련 문의가 있으실 경우 교육(지원)청 및 교육부 담당부서 또는 학교생활기록부 종합 지원센터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용될 수 있는 학교급을 의미합니다.

실제 문의 사례이므로 문의 내용의 학교급은 적용되는 학교급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020학년도 질의·회신 사례집이므로 해당 문의의 근거로만 이해하시고, 2021학년도는 2021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의 근거를 확인 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2020

학교생활기록부 종합 지원센터

질의·회신 사례집

# Contents 목차

---





◆ 인적·학적사항(공통)	6
◆ 출결상황(공통)	19
◆ 수상경력(중·고등학교)	30
◆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고등학교)	41
◆ 창의적 체험활동상황(공통)	43
◆ 교과학습 발달상황(공통)	111
◆ 자유학기 활동상황(중학교)	144
◆ 독서활동상황(중·고등학교)	150
◆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공통)	156
◆ 정정사항(공통)	163
◆ 기타사항 등(공통)	179

# 인적·학적사항 FAQ



Q1

부모의 공무원 해외파견으로 인해 자녀가 의무 교육 면제 대상이 될 경우

1. 귀국 전 면제 신청을 위해 학교에 제출해야 할 서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요?
2. 현지 외국 학교에 재학하다가 추후 귀국할 때 국내 원적교에 제출해야할 증빙서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요?
3. 국내 재취학 시 학년 배정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A1

학적처리에 사용하는 용어 및 해설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348호)을 따르고 있고, 학적사항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는 <2020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을 따르고 있으며, 초·중·고등학생의 재취학, 면제 등 ‘학적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도교육청의 지침에 의거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28조(취학의무의 면제·유예) 및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348호)에 따라 취학의무를 면제받으려는 아동이나 학생의 보호자는 해당 아동이나 학생이 취학중인 학교의 장에게 취학 의무의 면제를 신청하여야 하고, 학교의 장은 의무교육관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학의무의 면제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에, 출국 전 의무교육면제 신청을 위해 학교에 제출해야 할 증빙서류(해외파견 관련 소속기관 공문 등)는 시도교육청 및 학교에 문의 하시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2. 귀하의 자녀의 경우와 같이 의무교육대상자가 의무교육을 중단하였다가 의무교육연령 내에 다시 의무교육을 받고자 하여 재취학할 때 해당 학교에 제출하는 서류는 <202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 인적·학적사항의 ‘귀국학생 등의 학적 처리 방법’에 안내된 제출 서류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2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따라 정당한 해외출국으로 면제 후 국내학교에 재취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외국학교의 재학기간과 교육과정 이수 내용을 근거로 학년을 결정합니다. 이 때 학년 배정은 외국학교 재학증명서 상의 재학기간과 성적증명서 상의 교육과정 이수 내용을 우리나라 학제(12학년제)에 맞추어 계산하여 정하되, 외국학교 입학 전 국내학교의 최종 재학 학년에 외국 학교 재학기간을 합산하여 우리나라 학제에 맞추어 계산합니다. 또한, 9월에 1학기가 시작되는 나라에서 수학하여 학제 차이로 인해 한 학기가 중복된 경우 귀국 후 국내학교에 재취학할 때 한 학기 올려주고, 한 학기 월반이 되었을 경우 국내학교에 재취학할 때 한 학기 내려서 학년을 배정하게 됩니다.



## 참고 or 관련 근거

###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348호)

제7조(인적·학적사항) ① '학생정보'란에는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와 입학 당시의 주소를 입력하되, 재학 중 주소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주소를 누가하여 입력한다.

② 중·고등학교에서는 입학 전 전적학교의 졸업연월일과 학교명을 입력하며, 검정고시 합격자는 합격 연월일과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이라고 입력한다.

③ 재학 중 학적변동이 발생한 경우 전출교와 전입교에서 각각 학적변동이 발생한 일자, 학교와 학년변동 내용을 입력한다. 학적 처리에 사용하는 용어는 별표 7과 같다.

④ '특기사항'란에는 학적변동의 사유를 입력한다. 특기사항 중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항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17조에 따른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입력한다.

제19조(자료의 정정) ① 학교의 학년도는 「초·중등교육법」제24조에 따라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하며, 매 학년이 종료된 이후에는 당해 학년도 이전의 학교생활기록부 입력 자료에 대한 정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 ○ 202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등 35쪽, 중등 43쪽)

(초등) 사. 재취학

1) 의무교육대상자가 의무교육을 중단하였다가 의무교육연령 내에 다시 의무교육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학년, 학교 및 학교급을 달리하여도 재취학으로 처리한다.

(중등) 바. 재취학

1) 의무교육 대상자가 의무교육을 중단하였다가 의무교육연령 내에 다시 의무교육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학년, 학교 및 학교급을 달리하여도 재취학으로 처리한다.

### ○ 202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등42쪽, 중등 49쪽)

4) 귀국학생 등이 외국학교에서 수학한 같은 기간의 기록은 학년을 결정하는 참고자료로, 해당 학년의 정규교육 과정을 이수한 기록이 아니므로 해당 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에 입력하지 않는다. 다만, 학적사항의 '특기사항'란에 외국학교명과 수학기간은 입력할 수 있다.

### ○ 초·중등교육법 제24조(수업 등)

① 학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인적·학적사항  
(공통)

출결상황  
(공통)

수상경력  
(중·고등학교)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고등학교)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공통)

교과학습  
발달상황  
(공통)

자유학기  
활동상황  
(중학교)

독서활동상황  
(중·고등학교)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공통)

정정사항  
(공통)

기타사항 등  
(공통)



귀국학생 학적사항 특기사항란에 외국학교명을 입력할 때 학력미인정기관도 입력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귀국학생 등이 외국학교에서 수학한 같은 기간의 기록은 학년을 결정하는 참고자료로, 해당 학년의 정규교육과정을 이수한 기록이 아니므로 해당 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에 입력하지 않습니다. 다만, 학적사항의 특기사항란에 외국학교명과 수학기간은 입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학연수 등의 내용은 학생부에 기재할 수 없습니다.



참고 or 관련 근거

● 202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등 18쪽, 중등 18쪽)

- 3. 다음은 사교육 유발 요인이 큰 사항으로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란을 포함하여 학교생활기록부의 어떠한 항목에도 기재할 수 없음.  
자. 어학연수, 봉사활동 등 해외 활동실적 및 관련 내용

● 202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등 42쪽, 중등 49쪽)

- 4) 귀국학생 등이 외국학교에서 수학한 같은 기간의 기록은 학년을 결정하는 참고자료로,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한 기록이 아니므로 해당 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에 입력하지 않는다. 다만, 학적사항의 '특기사항'란에 외국학교명과 수학기간은 입력할 수 있다.



인적·학적사항  
(공통)



재취학은 '의무교육대상자가 의무교육을 중단하였다가 의무교육연령에 내에 다시 의무교육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학년, 학교 및 학교급을 달리하여도 재취학으로 처리한다.' 라고 명기되어 있는데 6학년 (또는 다른 학년)에서 미인정 결석(홈스쿨링, 미인정 유학 등)으로 정원외학적관리되던 학생이 초등학교 졸업 검정고시를 치루지 않고 중학교 1학년(또는 2~3학년)에 재취학(진학)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출결상황  
(공통)

수상경력  
(중·고등학교)



초·중·고등학생의 입학전형, 전·편입학, 재취학, 유예, 면제 등 학적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도교육청의 지침에 의합니다. 또한, 의무교육대상자가 의무교육을 중단하였다가 의무교육연령 내에 다시 의무교육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학년, 학교 및 학교급을 달리하여도 재취학으로 처리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무교육인 초등학교, 중학교의 경우 학교급이 달라도 재취학으로 처리합니다. 다만, 검정고시 합격 등 학적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속교육청 소관부서로 반드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고등학교)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공통)



참고 or 관련 근거

○ 202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등 35쪽, 중등 43쪽)

(초등) 사. 재취학

- 1) 의무교육대상자가 의무교육을 중단하였다가 의무교육연령 내에 다시 의무교육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학년, 학교 및 학교급을 달리하여도 재취학으로 처리한다.

(중등) 바. 재취학

- 1) 의무교육 대상자가 의무교육을 중단하였다가 의무교육연령 내에 다시 의무교육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학년, 학교 및 학교급을 달리하여도 재취학으로 처리한다.

교과학습  
발달상황  
(공통)

자유학기  
활동상황  
(중학교)

독서활동상황  
(중·고등학교)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공통)

정정사항  
(공통)

기타사항 등  
(공통)



**〈사례1〉**  
 담임교사가 1주일 휴직 후 복직하였습니다. 1주일 담임을 맡아주신 기간제교사도 담임 이력에 입력 하나요?

**〈사례2〉**  
 기재요령에 따르면 학급담임교사 A교사→B교사→A교사로 변경된 경우에는 A, B, A교사 모두 입력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순회 교사나 교과전담 교사가 배정된 경우에도 담임으로 입력하나요?



교사의 직위나 기간에 관계없이 내부 결재 및 나이스 상 학급담임 배정을 통해 학교장이 임명한 담임 이라면 학급담임교사 이력에 기재되어야 하며, 학년 중 학급담임교사가 변경된 경우 학교장이 임명한 학급담임교사는 모두 입력하되, 줄이 바뀌어 표시되도록 해야 함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예: 학급담임교사가 A교사-B교사-C교사로 변경된 경우에는 A교사, B교사, C교사 모두 입력해야 함)  
 ※ 2019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은 내용이 다르므로 정정의 경우 해당 학년도 기재요령을 확인하고 처리하시기를 안내하여 드립니다.

**참고 or 관련 근거**

● 202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등 93쪽, 중등 168쪽)

- ④ 학급담임교사 이력  
 가. 학년 중 학급담임교사가 변경된 경우 학교장이 임명한 학급담임교사는 모두 입력하되, 줄이 바뀌어 표시되도록 한다.

**기재 방법**

- 교육정보시스템의 [교육과정]-[담임편성관리]-[담임교사편성]에서 '학생부반영' 과 '이력추가'를 선택한 후 등록함.
- 학급담임교사가 A교사 → B교사 → C교사로 변경된 경우에는 A교사, B교사, C교사 모두 입력함.
- 학급담임교사가 A교사 → B교사 → A교사로 변경된 경우에는 A교사, B교사, A교사 모두 입력함.

● 2019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등 89쪽, 중등 166~167쪽)

- ④ 학급담임교사 이력  
 가. 학년 중 학급담임교사가 변경된 경우 학교장이 임명한 학급담임교사는 모두 입력하되, 줄이 바뀌어 표시되도록 한다.

**기재 방법**

- 교육정보시스템의 [교육과정]-[담임편성관리]-[담임교사편성]에서 '학생부반영' 과 '이력추가'를 선택한 후 등록함.
- 학급담임교사가 A교사 → B교사 → C교사로 변경된 경우에는 A교사, B교사, C교사 모두 입력함.
- 학급담임교사가 A교사 → B교사 → C교사로 변경된 경우에는 B교사, A교사를 입력함.



최근 베트남 하노이 한국국제학교에서 학생이 전입을 왔습니다.  
 나이스 시스템을 통해 전입 자료를 받았으나 건강기록부는 전송이 안된다며 원본을 출력하여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전 학년도 건강기록부 자료(신체발달사항, 건강검진 현황)는 현재 담임교사가 등록을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출결상황  
(공통)

수상경력  
(중·고등학교)



이전 학년도 건강기록부 자료는 [학적]-[기본학적관리]-[추가입학/입력누락자등록]에서 입력하시기를 안내하여 드립니다.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고등학교)



참고 or 관련 근거

○ 202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등 44쪽, 중등 52쪽)

④ 기타사항

사. 한국학교 전출·입 처리 방법

〈한국학교에서 국내학교로 전입 시〉

- ① 국내학교에서 한국학교로 전입 동의 요청 공문을 발송함.
- ② 교육정보시스템의 [학적]-[기본학적관리]-[추가입학/입력누락자등록]에서 전입생으로 등록함.
- ③ 한국학교에서 받은 전학서류(학교생활기록부, 건강기록부, 재학증명서 등)를 참고하여 이전학년도 학생자료를 [학적]-[기본학적관리]-[추가입학/입력누락자 자료입력]에서 입력함.

※ 한국학교에서는 전학서류 발급 시 한국학교장의 직인을 반드시 날인하고, 학부모는 귀국 후 한국학교에서 발급받은 서류를 국내학교에 제출함.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공통)

교과학습  
발달상황  
(공통)

자유학기  
활동상황  
(중학교)

독서활동상황  
(중·고등학교)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공통)

정정사항  
(공통)

기타사항 등  
(공통)



**〈사례1〉**

행정정보연계를 통하여 주소를 연계하였을 때, 같은 주소가 두 번 입력된 경우 이전 주소 삭제를 하려면 결재를 받아야 하나요?

**〈사례2〉**

대다수 학생의 행정정보공동이용 연계된 주소에서의 차이점은 띄어쓰기인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입력된 주소를 삭제하고 연계된 주소만 남겨 놓아야 하나요?



교육부(교수학습평가과-6162) 공문에 따라 주소 현행화 작업을 하되, 중복 주소 삭제의 경우 필수 사항은 아니며 별도의 결재 없이 담임교사가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정보공유 연계시스템을 통한 주소 현행화 시 단순 띄어쓰기 오류 등은 실질적인 주소 변동 사항이 아니므로 기존 주소는 삭제할 수 있으나, 삭제할 경우 현행화 주소 등록일은 기존 주소 등록일로 변경해주시기를 안내 하여 드립니다.

(예시) 기존 주소(2019.3.2.), 현행화 주소(2020.9.7.) → 현행화 주소(2019.3.2.)



**참고 or 관련 근거**

● 202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등 37~38쪽, 중등 34쪽)

[학생정보 변경 시 처리 방법]

※ 주소 변경은 별도의 정정절차 없이 교육정보시스템의 {누가주소등록} 탭에서 처리함.

● 2020학년도 2학기 학교생활기록부 행정정보공유 연계시스템 운영 안내[교육부 교수학습평가과-6162, 2020.8.20.]

목적: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에 기재되는 학생의 인적사항 중 주소 관리 시 교원의 업무 경감 및 학부모의 증빙서류 제출 불편 해소

Q7

외국 국적의 학생들이 입학하였습니다. 반드시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영문만 표기)에 있는 영문 이름을 입력해야 하는지 한국에서 사용하는 이름을 입력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출결상황  
(공통)

A7

외국인의 경우 여권(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에 표기된 영문 또는 한글의 성명과 성별을 입력하며, 증빙서류에 학생의 성명이 영문과 한글로 병기되어 있을 경우, 학생과 학부모의 희망에 따라 성명 표기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 학생의 외국인 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등 증빙서류에 한글 성명이 병기되어 있을 경우에 한하여, 병기된 한글 성명으로도 입력이 가능합니다.

수상경력  
(중·고등학교)

자격증 및  
인증 취득사항  
(고등학교)

참고 or 관련 근거

202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등 37쪽, 중등 33쪽)

나. 외국인의 경우 여권(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에 표기된 영문 또는 한글의 성명과 성별을 입력한다.

※ 증빙 서류에 학생의 성명이 영문과 한글로 병기되어 있을 경우, 학생과 학부모의 희망에 따라 성명 표기방식을 선택할 수 있음.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공통)

교과학습  
발달상황  
(공통)

자유학기  
활동상황  
(중학교)

독서활동상황  
(중·고등학교)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공통)

정정사항  
(공통)

기타사항 등  
(공통)





2020학년도 A학년 외국인학생은 외국인등록번호를 학생정보의 주민등록번호란에 입력하였습니다. 그런데 B학년 외국인 학생 중 일부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3000000' 또는 '4000000' 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현재 등록된 그대로 두어도 무방한지, 아니면 외국인등록번호를 확인하여 정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정정을 해야 할 경우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없이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을 작성하여 정정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331호)에 따르면 우리나라 주민등록번호가 미부여 된 외국국적자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를 입력해야 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3~6학년 외국인 학생들의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 등록번호가 부여되었는지 확인하시고, 부여되었다면 증빙서류(주민등록초본, 외국인등록증, 외국인 등록사실증명)를 받아 정정하시면 됩니다.

또한, '학생정보 중 학생 본인의 개명만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을 작성하여 정정함'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입생은 본인의 개명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는 수정하면 되고, 2~6학년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없이 정정대장을 작성하여 정정하면 됩니다.



### 참고 or 관련 근거

#### ○ 202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등 37쪽, 중등 33쪽)

다. 우리나라 주민등록번호가 미부여 된 외국국적자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를 입력한다.

- 다만,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입력방식에 따라 앞 6자리는 생년월일, 뒤 7자리는 남자는 '3000000', 여자는 '4000000'으로 하고, 2000년 이전 출생자는 남자는 '1000000', 여자는 '2000000'으로 입력하며 동성 쌍둥이일 경우 끝자리에 1·2를 부여함.

#### ○ 202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등 37~38쪽, 중등 37쪽)

(초등)

가. 학생정보가 변경된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을 통하여 정정한다.

※ 신입생은 학생정보 중 학생 본인의 개명만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을 작성하여 정정함.

- ▶ 신입생을 제외한 재학생과 졸업생의 학생정보 정정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없이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을 작성하여 정정함.

(중등)

가. 인적사항이 변경된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을 통하여 정정한다.

※ 학생의 개명으로 인한 성명 정정은 학생 본인의 개명 이력이 표기된 주민등록초본(기본증명서)을 근거로 함 (졸업생 개명 포함).

※ 3학년과 졸업생의 인적사항 정정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없이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을 작성하여 정정함.



학기 중에 유예, 자퇴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학생도 학생부 서술형 항목을 작성해야 하나요?

출결상황  
(공통)



〈202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따라 학생이 전출·휴학·면제·유예·제적·자퇴·퇴학할 경우에도 원적교에서는 해당 학생이 재학할 때까지의 각종 자료를 교육정보시스템 등에 입력해서 보관해야 합니다. 이에, 학기 중에 학업을 중단한 학생에 대해서도 학적 특기사항, 출결상황,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 영역별 특기사항, 자유학기활동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을 입력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관찰 내용이 없는 경우라도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은 ‘(해당 사유)로 인해 활동내용이 없음’, 교과학습발달상황은 시도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의거 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처리,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상담결과 등 각 항목의 내용을 종합하여 작성하실 것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아울러, 고등학교의 경우 기초교과(군)과 탐구교과(군)의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모든 학생에 대해 입력하시기를 알려드립니다.

수상경력  
(중·고등학교)

자격증 및  
인증 취득사항  
(고등학교)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공통)



참고 or 관련 근거

○ 202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등 28쪽, 중등 28쪽)

자. 학생이 전출·휴학·면제·유예·제적·자퇴·퇴학할 경우에도 원적교에서는 해당 학생이 재학할 때까지의 각종 자료를 교육정보시스템 등에 입력하여 보관해야 한다. 다만,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영역별 누가기록과 행동특성 누가기록 관련 사항은 시도교육청 지침에 따른다.

교과학습  
발달상황  
(공통)

자유학기  
활동상황  
(중학교)



유의사항

○ 2021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초등학교 30쪽, 중학교 30쪽)

자. 학생이 전출·휴학·면제·유예·제적·자퇴·퇴학할 경우에도 원적교에서는 해당 학생이 재학할 때까지의 각종 자료를 교육정보시스템 등에 입력하여 보관해야 한다. 다만,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영역별 누가기록과 행동특성 누가기록 관련 사항은 시도교육청 지침에 따른다.

독서활동상황  
(중·고등학교)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공통)

○ 2021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고등학교 30쪽)

자. 학생이 전출·휴학·제적·자퇴·퇴학할 경우에도 원적교에서는 해당 학생이 재학할 때까지의 각종 자료를 교육정보시스템 등에 입력하여 보관해야 한다. 다만,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영역별 누가기록과 행동특성 누가기록 관련 사항은 시도교육청 지침에 따른다.

정정사항  
(공통)

기타사항 등  
(공통)

  
Q10

전입생 자료 정정처리 주체 문의  
전출교에서 송부한 전입생의 학생부를 검토해보니 비문, 오타 등으로 정정해야 할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를 전출교에 정정하여 보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전출교에서는 전입교에서 정정해야 한다는 회신을 받았는데 아직 학적반영 전이므로 전출교에서 정정해서 보내줘야 하는게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A10

이전 학년도 자료의 정정은 전출교에서 자료를 받아 전입교에서 정정하셔야 함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더불어 당해 학년도 자료의 수정은 학적 반영 전이라면 전출교와 합의하여 처리하시기를 안내하여 드립니다.

 참고 or 관련 근거

- 202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등 29쪽, 중등 29쪽)
  - 이전 학년도 자료의 정정은 전출교에서 자료를 받아 전입교에서 처리함.
  - ※ 전출교는 학교생활기록부의 내용을 대조·확인 작업을 철저히 하여 오류가 없도록 확인하고 자료를 전송할 책임이 있음.



Q11

검정고시 합격자가 정상 입학 했는데도 학교생활기록부 학적 특기사항에 검정고시 관련 내용이 없습니다.

학생에게 검정고시 합격 연월일을 구두로 물어보고 기재하면 되나요? 처리 담당자 지정 등 처리 방법이 궁금합니다.

출결상황  
(공통)

A11

검정고시 합격통지 공문을 확인하시어 '20□□년□□월□□일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 이라고 학생부에 입력되어야 함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또한 위 내용은 교육정보시스템의 [학적]-[기본 신상관리]-[학적사항탭에서 등록하여야 하므로 담임교사가 입력하며, 교육정보시스템에서의 처리에 관하여는 소속 시도교육청의 나이스지원센터로 문의하실 사항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수상경력  
(중·고등학교)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고등학교)



참고 or 관련 근거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348호)

제7조(인적·학적사항)

- ② 중·고등학교에서는 입학 전 전적학교의 졸업연월일과 학교명을 입력하며, 검정고시 합격자는 합격 연월일과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이라고 입력한다.
- ④ '특기사항' 란에는 학적변동의 사유를 입력한다. 특기사항 중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항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른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입력한다.

● 202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등 33쪽, 중등 41쪽)

나. 검정고시 합격자는 검정고시 합격 연월일과 검정고시 합격 내용을 입력하되, 중학교 입학의 경우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 고등학교 입학의 경우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으로 입력한다.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공통)

교과학습  
발달상황  
(공통)

자유학기  
활동상황  
(중학교)

독서활동상황  
(중·고등학교)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공통)

정정사항  
(공통)

기타사항 등  
(공통)

  
Q12

고등학교에 입학 후 자퇴를 한 학생이 타 시도교육청에서 학교를 재배정 받은 경우, 학적 처리를 어떻게 하나요? '재입학', '재취학' 또는 편입학 중 어떤 학적용어로 처리하면 되는지 헛갈립니다.

  
A12

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 남은 시점에 1학년으로 처음 고등학교에 들어오는 경우에는 '재입학', '재취학', '편입학'에 해당되지 않으며 '입학'으로 처리함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참고 or 관련 근거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348호)

별표 7(학적처리에 사용하는 용어)

입학: 학교에 들어감(1학년 신입학).

4. 재입학: 고등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자가 중단 이전의 학교에 재학 당시 학년 또는 그 아래의 학년으로 다시 입학함(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 및 특수교육대상학생은 불가)
5. 재취학: 의무교육 대상자로서 “면제, 유예, 정원외학적관리” 중인 자(의무교육을 중단한 자)가 다시 의무교육을 받고자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에 다니게 되는 것
6. 편입학: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자로서 학업을 중단한 자가 중단 이전의 학교에 재학 당시 학년의 차상급 학년으로 다시 입학하거나 다른 학교로 다시 입학함(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자가 학업중단 이전과 동일 또는 하위의 초·중학교 학년으로 다시 입학하는 경우에도 편입학으로 처리).

○ 202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등 33쪽, 중등 41쪽)

가. 입학

- 1) 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 남은 시점까지 1학년으로 처음 학교에 들어옴.

# 출결상황 FAQ



인적·학적사항  
(공통)



### 〈사례1〉

월요일에 학생의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월요일, 화요일은 등교를 하고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3일만 결석한 경우에는 출결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사례2〉

경조사 사안일 발생 전이나 후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나요?

### 〈사례3〉

학생의 할머니 사망으로 인한 출석 인정 결석을 장례식에 3일, 탈상 2일로 나누어서 할 수 있나요?

출결상황  
(공통)

수상경력  
(중·고등학교)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348호)에 따라 조부모 사망 시 출석인정은 5일이며, 경조사 사안일 발생 전후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도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월요일(사망일)부터 금요일까지 출석 인정이 가능한 범위 안에서 결석하였기 때문에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합니다. 아울러 연속된 결석 일수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하므로 3일과 2일은 분리하여 인정할 수 없습니다.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공통)

교과학습  
발달상황  
(공통)



## 참고 or 관련 근거

### ○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348호)

별표 8(출결상황 관리)

#### 2. 결석

나. 다음의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6)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구분	대상	일수
결혼	• 형제, 자매, 부, 모	1
입양	• 학생 본인	20
사망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3
	•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 경조사 일수에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음. 연속된 결석 일수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함.

### ○ 202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등 57쪽, 중등 65쪽)

#### 나. 결석

9) 경조사 사안 발생일 전·후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도 가능 일수 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자유학기  
활동상황  
(중학교)

독서활동상황  
(중·고등학교)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공통)

정정사항  
(공통)

기타사항 등  
(공통)



**〈사례1〉**

학생이 수술 및 입원치료로 인해 며칠간 원격 수업을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코로나19관련 공문에서 학생이 7일 이내에 수업 참여시 출석인정을 해주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학생이 2주간 입원 후 퇴원하여 입원 기간 후반부 1주일에 해당하는 원격 수업에 모두 참여한 경우 출결처리방법이 궁금합니다.

**〈사례2〉**

해외입국으로 인해 자가격리를 받는 학생이 학급에서 실시하는 원격수업에 참여하면 출석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아니면 자가격리 기간은 무조건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교육부 교수학습평가과-2010(2020.4.7.) 「원격수업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 안내」에 따르면 원격수업 중 출결확인 원칙적으로 당일 교과별 차시 단위로 실시하되, 수업유형에 따라 7일 내 최종 확인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초등학교는 학교장이 출결 확인 기간을 별도 설정 가능하며, 담임 교사와 교과전담교사가 각 수업에 대해 관리함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원격 수업 기간 중 학생 출결 관리는 단위 학교에서 사전에 원격수업 유형별 출결·학생평가·학생부 관리 계획 (유형별 출석 확인방법, 출결 확인 시기를 포함한 인정 기준, 출결 기록 및 관리방법, 출석 및 결석 사유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종류 및 제출 기한 등 포함)을 마련하고, 원격수업 관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적용여부를 학교장이 최종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방역 관련 법령에 따른 등교중지 대상 학생이 학급 단위 이상 원격수업 운영 중 희망에 따라 원격수업을 수강한 경우,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출석(수업)으로 처리합니다.



## 참고 or 관련 근거

### ○ 「원격수업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 안내」(교육부 교수학습평가과-2010, 2020.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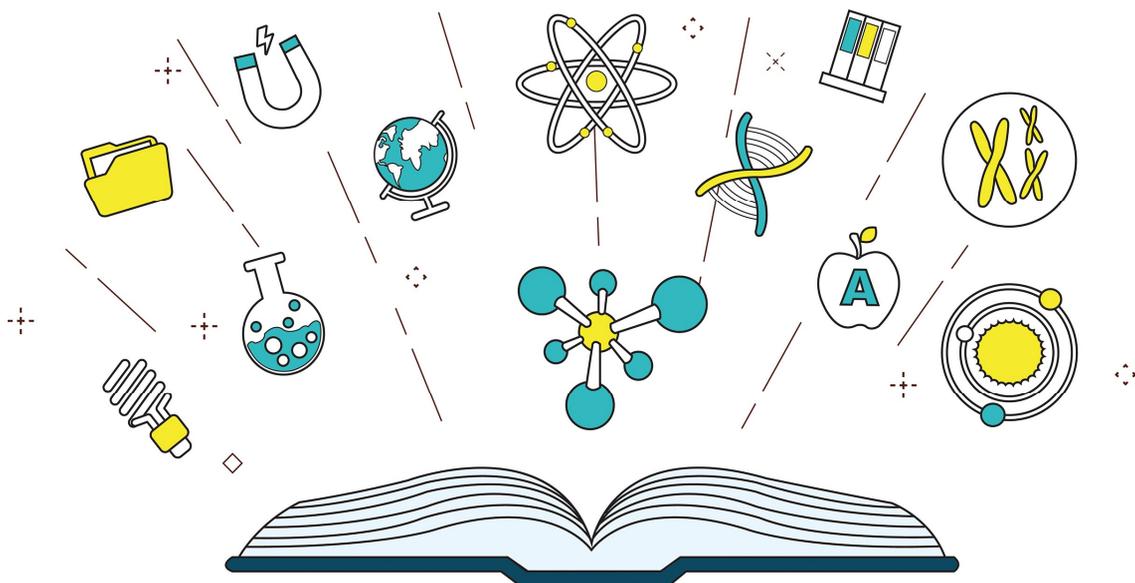
#### 1. 학생 출결 관리

- (출결 확인) 원칙적으로 당일 교과별 차시 단위로 실시하되, 수업유형에 따라 7일 내 최종 확인  
※ 초등학교는 학생 발달 단계를 감안하여 학교장이 출결 확인 기간을 별도 설정가능하며, 담임교사와 교과 전담교사가 각 수업에 대해 관리(긴급 돌봄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의 원격수업 출결 여부 포함)
- (출결 기록) 교과교사가 실시간 또는 사후 출석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차시별로 출결 보조장부(출석부) 또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메뉴에 출석 또는 결석(결과)으로 기록  
- 교과교사와 담임교사가 미 수강 학생 수강 독려 및 대체학습 안내
- (출결 처리) 교과교사의 출결 기록(출석부 등)과 학생이 제출한 결석 사유 증빙자료 확인 후 담임교사가 1주일(7일) 단위로 종합하여 월(月)단위 또는 등교개학 후 출결(마감) 처리\* 가능  
\*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통해 처리하되, 학교장이 학교 여건 등을 감안해 출결(마감)처리 시기 등 세부적인 사항 결정 가능

###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원격수업 및 등교수업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2020학년도 2학기 이후), [교육부 교수학습평가과(2020.8.)]

#### ■ 학생 관리

- (등교중지 대상 학생\*) 방역 관련 법령에 따른 등교중지 대상 학생이 학급단위 이상 원격수업 운영 중 희망에 따라 원격수업을 수강한 경우,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출석(수업)으로 인정  
\* 확진 받은 학생, 격리통지 받은 학생(동거인이 격리대상자인 경우 포함), 코로나19 의심 증상 학생



인적·학적사항  
(공통)

출결상황  
(공통)

수상경력  
(중·고등학교)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고등학교)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공통)

교과학습  
발달상황  
(공통)

자유학기  
활동상황  
(중학교)

독서활동상황  
(중·고등학교)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공통)

정정사항  
(공통)

기타사항 등  
(공통)



〈사례1〉

자가진단 시 단순 발열이나 콧물, 기침 등으로 인하여 결석하게 되는 경우 어떻게 출결 처리하면 되나요?

〈사례2〉

코로나19 자가진단 시 단순 발열이나 콧물, 기침 등 증상으로 인하여 결석하게 되는 경우 학교에서 정한 결석계 이외에 별도의 학교장 내부결재를 받아야 하나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원격수업 및 등교수업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2020학년도 2학기 이후)에 따르면, 발열, 기침, 호흡곤란 등 코로나19 주요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등교중지가 되며,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합니다.

또한 발열로 인한 결석 시 학교장 내부결재 여부는 교내 법정감염병 및 출석인정결석 처리 방법에 따라 학교에서 판단하시기를 안내하여 드립니다.





## 참고 or 관련 근거

###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원격수업 및 등교수업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2020학년도 2학기 이후), [교육부 교수학습평가과(2020.8.)]

- (등교중지 학생) 특정 학생이 「학교보건법」 제8조, 「학교보건법시행령」 제22조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출석하지 못한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
  - ※ 확진자 발생 등에 따른 시설이용 제한 조치로 일과 중 등교중지 되는 경우, 해당일은 '출석인정 조퇴' 처리

### Ⅰ 등교중지 대상 학생 Ⅰ

대상	등교 중지 기간	출결증빙 자료
확진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입원치료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 입원치료통지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 22호 서식]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 격리통지서
가족(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 가족(동거인)의 격리통지서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임상 증상 발현 학생) ※ 임상증상 발현 시 '유·초·중등 코로나19 감염 예방 관리안내 (제2-2판)'에 따라 선별진료소 방문(해당 지침 5, 9, 40페이지 참고)	증상 발현 시부터 증상 소멸(호전) 시까지 ※ 참고사항 1. 귀가 후 3~4일 간 증상을 관찰하여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될 경우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또는 보건소로 우선 문의 후 안내에 따라 조치 2.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자가 격리 통지를 받지 않았고 증상이 없다면 등교 가능 3.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이 등교수업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증상이 코로나19와 연관성이 없고 타인에게 전파되는 감염병이 아니라는 것을 의사의 소견 등으로 확인 후 등교(진료확인서 등 제출)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 검사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예: 선별진료소 진료확인서(발급 가능 시), 문자 통지 사본 등)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학부모의견서 등 ※ 선별진료소 방문 또는 진료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발급 가능 시 권장) ※ 고사 기간 중에는 선별진료소 등의 방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필수 확인 (예: 선별진료소 방문확인서, 진료확인서, 콜센터 또는 보건소와 통화 사실 증빙자료 등) ☞ 객관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출결 처리와 별개로 인정점 부여는 학업성적관리 규정에 따라 별도 처리 가능

### ○ 202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등 51쪽, 중등 59쪽)

훈령 별표 8(출결상황 관리)

#### 2. 결석

나. 다음의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 1)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인적·학적사항  
(공통)

출결상황  
(공통)

수상경력  
(중·고등학교)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고등학교)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공통)

교과학습  
발달상황  
(공통)

자유학기  
활동상황  
(중학교)

독서활동상황  
(중·고등학교)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공통)

정정사항  
(공통)

기타사항 등  
(공통)



학생선도위원회에서 출석정지 7일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미인정결석 7일로 처리하였는데 특기사항도 기재해야 하나요?



학생선도위원회에서 출석정지 7일 처분을 받은 경우, 우선 장기결석(연속하여 출석하지 않은 경우로 그 기간은 학교장이 정함)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장기결석에 해당하는 경우 출결 특기사항에 장기결석 사유를 입력합니다. 다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가해 학생의 세부 조치사항을 조치결정일자와 함께 결정 즉시 입력하는 것과 달리, 학생선도위원회에 의한 처분은 해당 법령과 조치사항을 적지 않고, '학교규칙 위반' 등 학교에서 정한 장기결석의 사유를 입력하실 것을 알려드립니다.



참고 or 관련 근거

○ 202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등 60쪽, 중등 68쪽)

㉓ 특기사항

가. 특기사항에 입력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장기결석: 결석 종류별로 사유를 입력함.
- 2) 기타결석: 1일이라도 사유를 입력함.

※ '장기결석'은 연속하여 출석하지 않은 경우로 그 기간은 학교장이 정함.

○ 202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등 83쪽, 중등 127~128쪽)

㉔ 학업성적관리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생략)

- 5.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방법 및 기재내용 등에 관한 사항
- 6. 학교생활기록부 정정을 위한 증빙자료의 객관성 여부 등을 포함한 정정에 관한 사항
- 7. 고등학교의 교과목별 기준성취율에 따른 분할점수 산출 방식 등에 관한 사항
- 8. 기타 학교 학업성적관리 관련 업무



유의사항

○ 2021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등학교 63~64쪽, 중학교 65~66쪽, 고등학교 62~63쪽)

㉓ 특기사항

가. 특기사항에 입력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장기결석: 결석 종류별로 사유를 입력함.
- 2) 기타결석: 1일이라도 사유를 입력함.

※ '장기결석'은 같은 종류로 연속하여 출석하지 않은 경우로, 그 기간은 7일 내외의 범위(최대 3일의 범위에서 조정 가능)에서 학교장이 정함.

Q5

〈사례1〉

교외체험학습, 훈련, 대회, 경조사 등으로 인한 '출석인정 결석'이 생길 경우 출결 비교등록 및 특기 사항을 기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사례2〉

출석인정결석(교외체험학습 등)이 '출석일수'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출결상황  
(공통)

수상경력  
(중·고등학교)

A5

출석인정 결석의 경우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 이외에는 그 사유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교외 체험학습, 훈련, 대회, 경조사 등으로 인한 출석인정결석은 [출결상황-특기사항]에 사유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또한 교육정보시스템의 [학적]-[출결관리]-[출결관리]의 '비고등록'란은 출결상황 특기 사항의 보조부로 결석, 지각, 조퇴, 결과의 사유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출석인정 결석은 출석으로 인정함에 따라 출석일수에 포함됩니다. 다만, 학생이 출석인정 결석기간에 창의적 체험활동이 있었다면, 실제 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시간이므로 창의적 체험활동의 자율활동, 진로활동의 누가기록 및 이수시간은 입력하지 않습니다.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고등학교)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공통)



참고 or 관련 근거

● 202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등 61쪽, 중등 69쪽)

나. 특기사항에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없는 내용을 입력할 수 없다.  
(입력 불가능 내용의 예) 해외 봉사활동, 해외 어학연수, 교외 대회 참가 등  
※ 출석인정 결석의 경우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 이외에는 사유를 입력하지 않음.

● 202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등 61쪽, 중등 69쪽)

다. 출석인정 결석은 출석으로 처리하며, 해당 학년 동안 1회의 결석·지각·조퇴·결과도 없는 경우 출결상황 '특기사항'란에 '개근'으로 입력한다.

● 202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등 62쪽, 중등 70쪽)

라. 교육정보시스템의 [학적]-[출결관리]-[출결관리]의 '비고등록'란은 출결상황 특기사항의 보조부로, 결석·지각·조퇴·결과의 사유를 입력할 수 있다.

● 202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등 69쪽, 중등 93쪽)

가.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특기사항은 활동 내용(활동실적, 진보의 정도, 행동의 변화 등)을 종합하여 학생의 개별적 특성이 드러나도록 입력한다.

● 202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등 93쪽)

가. 창의적 체험활동의 영역별 이수시간은 정규교육과정 내에서 실시한 학년·학급단위의 활동 시간을 기준으로, 본인이 실제로 참여하여 이수한 시간을 입력한다.

교과학습  
발달상황  
(공통)

자유학기  
활동상황  
(중학교)

독서활동상황  
(중·고등학교)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공통)

정정사항  
(공통)

기타사항 등  
(공통)



2015년 해외이주로 인해 면제처리된 학생의 출결특기사항에 개근이 적혀 있습니다. (총 수업일수 194일 중 93일 출석) 당해 학년의 전 과정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개근이라 적힌 출결특기사항을 정정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출결특기사항 기록 당시인 2015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따르면 수업일수가 다른 중도 편입 학생은 당해 학년의 전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출결 특기사항에 '개근'으로 입력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면제 학생에 대한 명시는 없더라도 수업일수가 다르고, 당해 학년의 전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개근'을 입력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객관적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할 사항입니다.



참고 or 관련 근거

● 2015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등 29쪽, 중등 32쪽)

출석인정결석은 출석으로 처리하며, 해당학년 동안 1회의 결석·지각·조퇴·결과도 없는 경우 특기사항에 '개근'으로 입력한다.

※ 수업일수가 다른 중도 편입학생은 당해 학년의 전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출결 특기사항에 '개근'으로 입력하지 않음(상위학년으로 중도 재취학한 경우도 동일).



인적·학적사항  
(공통)



소년분류심사원에 30일간 위탁된 학생의 출결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출결상황  
(공통)



소년분류심사원의 경우 1개월 이내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하며 교육정보시스템에서 위탁학생으로 등록하여 처리합니다. 소년분류심사원에서 공문으로 발송한 출결 현황을 위탁학생 출결에서 등록하시면 됩니다.

수상경력  
(중·고등학교)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고등학교)



참고 or 관련 근거

202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등 46쪽, 중등 54쪽)

카. 소년원학교 등 학적처리 방법

- 1) 재학생의 소년원 학교 입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입학·전학 또는 편입학한 것으로 본다(「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

※ 교육정보시스템에서는 위탁학생으로 등록하여 관리함.

202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등 63~64쪽, 중등 71~72쪽)

라. 위탁학생 출결처리 방법

- 1) 소년보호기관별 출석일수 인정 여부 처리는 [참고자료6] 소년보호기관 관련 처리를 참조한다.
- 2) 재학 중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거나 유치된 소년의 위탁 또는 조사를 위하여 출석하는 기간과 소년원 송치에 의한 1개월 이내의 소년원 교육기간은 재적학교의 출석일수로 인정한다(「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31조제2항).
- 3)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제1항에 따라 판사 또는 검사가 의뢰한 대안교육 대상 소년이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정해진 대안교육과정(비행예방 및 재범방지 또는 사회적응을 위한 체험과 인성위주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을 재적학교의 출석일수로 인정한다(「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5조).

※ 법무부의 청소년비행예방센터(청소년꿈키움센터)는 직제상 지역 소년원 및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소속 기관임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1조(학적관리) ① 보호소년이 소년원학교에 입교하면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입학·전학 또는 편입학한 것으로 본다.

- ②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서 재학하던 중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거나 유치된 소년 및 「소년법」 제32조제1항제8호의 처분을 받은 소년의 수용기간은 그 학교의 수업일수로 계산한다.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공통)

교과학습  
발달상황  
(공통)

자유학기  
활동상황  
(중학교)

독서활동상황  
(중·고등학교)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공통)

정정사항  
(공통)

기타사항 등  
(공통)



〈사례1〉

질병으로 하루를 결석했을 경우 복통(1일)로 특기사항을 기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례2〉

‘단기결석의 횟수가 많을 경우 이를 누계하여 주된 사유를 입력할 수 있음.’에 해당되는 기준횟수를 반드시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결정해야 하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사례3〉

단기결석이 5회 이상일 경우 그에 대한 특기사항을 입력하도록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규정 하였으나, 일부 담임이 1일 결석에 대한 특기사항을 기재한 경우가 있는데 정정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단기결석의 경우 횟수가 많을 경우 이를 누계하여 주된 사유를 입력하고, 출결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는 시도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따라 학교장이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단기 결석의 횟수에 대한 부분은 학교장(또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이 결정합니다.

더불어 학교장의 결정에 의해 단기결석 5일 이상 결석 시 출결 특기사항란에 단기결석 사유를 기재 하도록 결정하였다면 결정된 바에 따라 기재하나, 단 1회의 단기결석으로 출결특기사항에 기재된 사항의 정정 여부는 귀교의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하시기를 안내하여 드립니다.



## 참고 or 관련 근거

### ● 202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등 60쪽, 중등 68쪽)

가. 특기사항에 입력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장기결석: 결석 종류별로 사유를 입력함.
- 2) 기타결석: 1일이라도 사유를 입력함.
- 3) 단기결석: 횟수가 많을 경우 이를 누계하여 주된 사유를 입력할 수 있음.
- 4) 지각·조퇴·결과: 입력하지 않으나 반복적인 지각·조퇴·결과의 경우 사유를 입력할 수 있음.
  - ※ '장기결석'은 연속하여 출석하지 않은 경우로 그 기간은 학교장이 정함.
  - ※ 학교장이 정한 기간의 장기결석 중 질병결석인 경우에도 사유를 입력하되, 개인정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질병의 경우에는 사유를 입력하지 않음.
  - ※ 입력할 수 있는 반복적인 지각·조퇴·결과 횟수는 학교장이 정함.

### ● 202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등 83쪽, 중등 127~128쪽)

[별표 9] 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

- 5)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 ⑥ 학업성적관리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5.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방법 및 기재내용 등에 관한 사항



인적·학적사항  
(공통)

출결상황  
(공통)

수상경력  
(중·고등학교)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고등학교)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공통)

교과학습  
발달상황  
(공통)

자유학기  
활동상황  
(중학교)

독서활동상황  
(중·고등학교)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공통)

정정사항  
(공통)

기타사항 등  
(공통)

## 수상경력 FAQ



### <사례1>

[나이스-학생생활-수상경력-수상대장관리]를 조회하니 교육감 어린이날 표창상, 광역시장 어린이날 표창상, 교육지원청 청소년의 달 기념 모범학생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과학의 날 우수과학 어린이상 등 모두 교외 상이 조회됩니다.

이러한 교외상을 나이스 수상대장에서 삭제해야 하는지요?

### <사례2>

각 학교에서 학칙에 의거하여 졸업식 시상 중 체육상, 기능상, 예능상의 경우 시,군대회 3위 이내 등의 기준에 근거하여 졸업생을 대상으로 학교장상을 시상합니다. 학기 초 학교교육계획서 시상 계획에 포함된 경우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교내상이라 하더라도 교외상을 근거로 주는 경우에는 지침에 위배되나요?

### <사례3>

학생들에게 학년말에 학교장상을 주기로 하였는데 올해부터 초등학교는 수상대장에 입력안해도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관련 자료 및 근거를 정확히 찾고 싶어 질문을 드립니다. 입력을 안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모든 교외상은 학교생활기록부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교외상의 수상대장 기재 여부는 '학교의 수상대장 운영 방침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수상대장 관리차원에서 수상대장에 입력은 할 수 있지만, 교외 기관 단체장이 수여한 표창장, 감사장, 공로상은 학교 생활기록부 어떠한 항목에도 기재할 수 없으므로 학교생활기록부 수상경력에는 미반영합니다. 또한 교외상을 근거로 교내상을 시상한 경우도 수상대장에는 입력할 수 있으나 학교생활기록부에는 반영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초등학교는 2019학년도부터 수상내역 항목이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제외되어 교내 수상 내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는 없으나, 수상대장은 나이스 시스템 보조장부로 활용이 가능하므로 학교에서 협의하여 활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참고 or 관련 근거

### ○ 202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등 18쪽, 중등 18쪽)

3. 다음은 사교육 유발 요인이 큰 사항으로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을 포함하여 학교생활기록부의 어떠한 항목에도 기재할 수 없음.

가. 각종 공인어학시험 참여 사실과 그 성적 및 수상 실적

나. 교과·비교과 관련 교외대회 참여 사실과 그 성적 및 수상 실적\*

\* 학교장의 참가 허락을 받아 참여한 각종 교외대회에서의 수상실적도 기재 불가함.

다. 교외 기관·단체(장)등에게 수상한 교외상(표창장, 감사장, 공로상 등도 기재 불가함)

라. 교외 인증시험 참여 사실이나 그 성적

마. 모의고사·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원점수, 석차, 석차등급, 백분위) 및 관련 교내 수상실적

### ○ 202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등 74쪽)

제9조(수상경력)

가. 학교생활기록부의 공신력을 높이고 사교육을 유발하는 입학전형 요소 배제의 일환(「고등학교 선진화를 위한 입학제도 및 체제 개편 방안」 등)으로 2011학년도부터 초·중·고등학교 모두 '수상경력'란에 교내 상만 입력하고 교외상은 입력하지 않는다.

나. 모든 교외상은 학교생활기록부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하지 않는다(창의적 체험활동상황,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

※ 교육정보시스템의 교외상 수상대장 입력 여부는 학교장이 정하나 학교생활기록부에는 반영하지 않으며, 각종 교외상 관련 대회 참가 내용은 학교생활기록부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하지 않음.

다. 교내상은 학교생활기록부 수상경력에만 입력하며, 수상경력 이외의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하지 않는다.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특기사항,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및 '특기사항', 자유학기 활동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

※ 시상 계획이 있는 각종 교내 대회와 행사의 준비과정 및 참가 사실은 학교생활기록부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하지 않음.

※ '대회'라는 용어는 수상경력을 제외한 학교생활기록부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하지 않음.



인적·학적사항  
(공통)

출결상황  
(공통)

수상경력  
(중·고등학교)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고등학교)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공통)

교과학습  
발달상황  
(공통)

자유학기  
활동상황  
(중학교)

독서활동상황  
(중·고등학교)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공통)

정정사항  
(공통)

기타사항 등  
(공통)



대회를 1학기에 실시하고 1학기에 시상 내역을 내부 결재를 끝냈는데 수상 대장 상신을 2학기 일자에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수상 대회 및 결재가 1학기에 있어 1학기로 인정이 되는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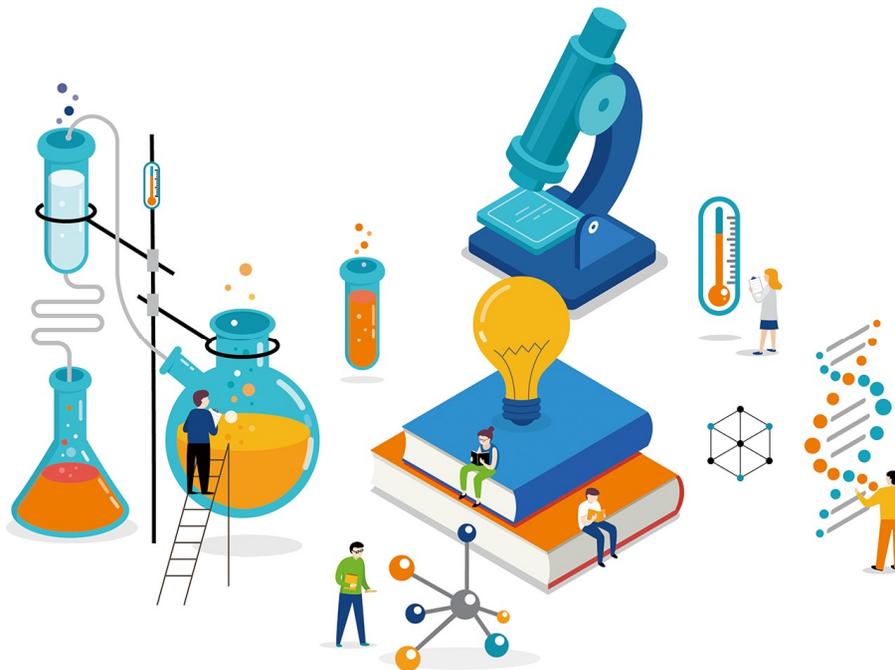
상급학교 진학 시 수상경력은 학생별 1학기에 1개씩만 제공하고, 1학기에 운영한 수상실적은 반드시 1학기 수상대장에 입력하여 연간시상계획에 공지된 대로 운영하시기를 안내하여 드립니다. 입력 방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이스(NEIS) 지원센터로 문의하실 것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참고 or 관련 근거

● 202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등 79쪽)

- 2020학년도 1~2학년의 경우 상급학교 진학 시 수상경력은 학생별 한 학기에 한 개씩만 제공함.





최우수와 우수를 합친 수상 인원(6명)이 장려 수상 인원(4명)보다 많습니다. 구체적인 등급별 수상 인원은 최우수(2명), 우수(4명), 장려(4명)입니다. 이렇게 하위등급 수상 인원보다 상위등급 수상 인원을 더 많이 시상하지 않음에 위배되지 않는지 문의 드립니다.



'하위등급 수상 인원보다 상위등급 수상 인원을 더 많이 시상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규정은 '각 등급별' 수상인원을 의미하므로, 각 등급별 수상 인원이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라면, 두 개의 상위등급의 수상 인원을 합한 인원이 장려상 수상 인원보다 많은 것은 규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다만, '등급별 수상 비율, 수상인원 등'은 관련 내용을 '학교교육계획서, 실시계획 등'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시상해야 함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참고 or 관련 근거

202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등 78쪽)

09. 수상경력

⑤ 기타

가. 학교생활기록부의 공신력을 높이고, 교내상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중·고등학교의 '교내상' 운영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교내상 수상인원은 대회(부문)별 참가인원의 20% 이내로 권장한다.

※ 하위등급 수상 인원보다 상위등급 수상 인원을 더 많이 시상하지 않음.



인적·학적사항 (공통)

출결사항 (공통)

수상경력 (중·고등학교)

자격증 및 인증 취득사항 (고등학교)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공통)

교과학습 발달사항 (공통)

자유학기 활동상황 (중학교)

독서활동상황 (중·고등학교)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공통)

정정사항 (공통)

기타사항 등 (공통)



**<사례1>**  
 1학기에 계획되었던 대회의 '시상대상 인원 변경(5명→3명)'으로 인해, 2학기 초(30일 이내)에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1학기에 계획된 대회를 2학기 초에 수정하여 대회를 운영한 경우 수상경력에 입력할 수 있는지요?

**<사례2>**  
 1학기에 미실시한 대회의 시행(월) 등 시상계획 변경이 가능한지요?



상급학교 진학 시 수상경력에 학생별 1학기에 1개씩만 제공하기에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정보공시가 이루어진 1학기 시상계획 변경은 불가합니다. 다만, 학교교육과정 운영 시 불가피한 상황으로 1학기에 계획된 교내대회를 실시하지 못한 경우라면 미실시한 대회에 한하여 사전에 학생, 학부모에게 시상 변경을 안내한 후 2학기 초 연간시상계획을 변경하여 학교장 결재 후 변경계획을 최종 공지하고 2학기 대회로 추가하여 운영 가능합니다.(1학기 실시한 대회를 2학기 초에 수정 불가함)



참고 or 관련 근거

○ 202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등 78쪽)

⑤ 기타

가. 학교생활기록부의 공신력을 높이고, 교내상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중·고등학교의 '교내상' 운영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의 제8조제3항제2호(각종 교내 대회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행위)에 저촉되는 대회는 실시할 수 없다.
- 2) 학년 초 학교교육계획에 연간 대회 및 수상내용 등의 실시계획(수상비율, 시행월, 담당부서, 공개방식 등)을 기재한다.
  - ※ 학년 초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실시한 교내상의 경우에 한하여 수상경력에 입력할 수 있음. 단, 교육 목표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학기 초(학기 시작 후 30일 이내)에 연간시상계획을 변경하여 학교장의 결재 후, 변경계획을 공개한 경우의 수상실적 내용만 입력할 수 있음.



## 유의사항

### ○ 2021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학교 74~75쪽, 고등학교 72쪽)

#### ㉟ 기타

가. 학교생활기록부의 공신력을 높이고, 교내상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중·고등학교의 '교내상' 운영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의 제8조제3항제2호(각종 교내 대회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행위)에 저촉되는 대회는 실시할 수 없다.

2) 학년 초 학교교육계획에 연간 대회 및 수상내용 등의 실시계획(수상비율, 시행월, 담당부서, 공개방식 등)을 기재한다.

※ 학년 초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실시한 교내상의 경우에 한하여 수상경력에 입력할 수 있음. 단, 교육 목표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학기 초(학기 시작 후 30일 이내)에 연간시상계획을 변경하여 학교장의 결재 후, 변경계획을 공개한 경우의 수상실적 내용만 입력할 수 있음.



인적·학적사항  
(공통)

출결상황  
(공통)

수상경력  
(중·고등학교)

자격증 및  
인증 취득사항  
(고등학교)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공통)

교과학습  
발달상황  
(공통)

자유학기  
활동상황  
(중학교)

독서활동상황  
(중·고등학교)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공통)

정정사항  
(공통)

기타사항 등  
(공통)



〈사례1〉

독서경시대회 참여를 위해 읽은 도서를 독서기록 상황에 입력할 수 있나요?  
그리고 다독상을 수여할 경우 다독상 수상과 관련된 독서활동상황은 입력 가능한가요?

〈사례2〉

연간시상계획에 따라 동아리활동 발표대회를 계획했습니다. 수상경력과 동아리활동 특기사항이 중복 인가요?

〈사례3〉

자율활동 시간에 실시한 교내 행사에 참여한 학생 중 수상을 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자율활동 특기 사항란에 관련 내용을 기재해도 될까요?

〈사례4〉

교내 한글날 백일장을 창의적 체험활동 자율활동으로 운영하였습니다. 결석생을 제외하고 해당 활동을 자율활동 누가기록에 입력하려고 합니다. 시상 계획이 있는데 누가기록이 가능한가요?



시상 계획이 있는 각종 교내 대회와 행사의 준비과정 및 참가 사실은 학교생활기록부 어떠한 항목 에도 입력하지 못함에 따라 참가 여부 및 수상 여부와 관계없이 정성적 평가를 포함하는 서술형 항목 (창의적 체험활동,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자유학기활동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시상계획이 있는 대회나 행사(동아리활동 발표대회, 자율활동 행사)와 관련된 내용을 입력하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간시상계획을 세우실 때는 보다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객관적 사실만 정량적 으로 입력하는 독서활동상황에는 대회와 관련된 도서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 서술형 항목이 아닌 해당 활동의 누가기록은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해당 영역의 이수시간 계산을 위한 보조장부로 입력이 가능합니다.



## 참고 or 관련 근거

### ○ 202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등 74쪽)

#### 제9조(수상경력)

가. 학교생활기록부의 공신력을 높이고 사교육을 유발하는 입학전형 요소 배제의 일환(「고등학교 선진화를 위한 입학제도 및 체제 개편 방안」 등)으로 2011학년도부터 초·중·고등학교 모두 '수상경력'란에 교내 상만 입력하고 교외상은 입력하지 않는다.

나. 모든 교외상은 학교생활기록부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하지 않는다(창의적 체험활동상황,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

※ 교육정보시스템의 교외상 수상대장 입력 여부는 학교장이 정하나 학교생활기록부에는 반영하지 않으며, 각종 교외상 관련 대회 참가 내용은 학교생활기록부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하지 않음.

다. 교내상은 학교생활기록부 수상경력에만 입력하며, 수상경력 이외의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하지 않는다.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특기사항,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및 '특기사항', 자유학기 활동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

※ 시상 계획이 있는 각종 교내 대회와 행사의 준비과정 및 참가 사실은 학교생활기록부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하지 않음.

※ '대회'라는 용어는 수상경력을 제외한 학교생활기록부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하지 않음.



인적·학적사항  
(공통)

출결상황  
(공통)

수상경력  
(중·고등학교)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고등학교)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공통)

교과학습  
발달상황  
(공통)

자유학기  
활동상황  
(중학교)

독서활동상황  
(중·고등학교)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공통)

정정사항  
(공통)

기타사항 등  
(공통)

  
Q6

〈사례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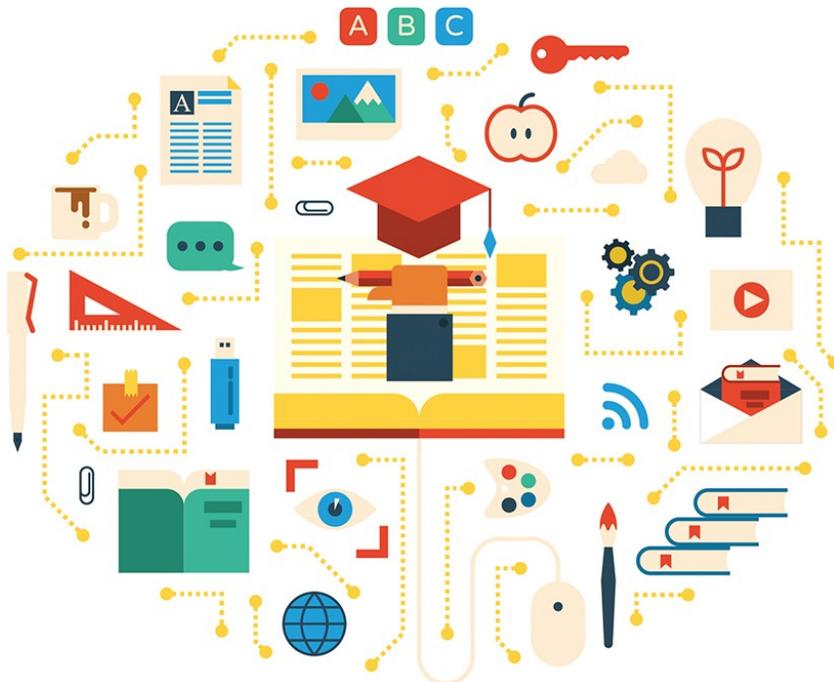
8월 말에 전출간 학생이 1학기 교과우수상 수상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과우수상 수상대장이 전출 후에 완결되었습니다. 해당 학생의 누락된 교과우수상은 어떻게 기록해야 하나요?

〈사례2〉

위탁학생이 위탁기관에서 수상한 상은 학교생활기록부에 입력할 수 있나요?

  
A6

202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따라 전출생의 경우 전출교에서 교과우수상 내역을 공문으로 보낸 후 전입교에서 학급담임이 [학급별수상관리]에서 입력하고, 위탁학생의 경우 위탁기관에서 받은 상은 교내상으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위탁기관에서 공문을 받아 재적교에서 [학급별수상관리]에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 참고 or 관련 근거

### ○ 202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등 28쪽, 중등 28~29쪽)

차. 전출입 시 자료 송부는 다음에 따라 처리한다.

- 1) 전출 시에는 교육정보시스템 등에 전출일 현재까지의 각종 자료를 입력·확인 후 전입교로 전송한다. 이 때, 입력의 근거가 되는 증빙서류는 원적교에서 보관한다  
※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및 행동특성 관련 누가기록 자료의 전송 방법은 시도교육청 지침에 따름.
- 2) 위 '1)'의 각종 자료는 전출 당일 전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의 '전출(입) 요청 공문' 혹은 '전입(출) 승인 공문'은 발송하지 않는다.  
※ 전출 당일 모든 자료의 전송이 어려울 경우에는 기본학적 자료만 전출 당일 전송하고 나머지 자료는 전입교와 협의를 통해 추후 전송 가능함.
- 3) 위 '1)'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전출일까지 입력하지 못한 당해학년도의 누락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전출교) 작성한 증빙서류를 포함한 '자료 입력 관련 공문'을 전입교로 전송함.  
나) (전입교) 소속 시도교육청 지침에 따라 위 '가)'항의 '자료 입력 관련 공문' 등을 근거로 자료를 입력·관리함.

#### 기재 방법

- 교과우수상 대상자나 사정회 수상대상자가 시상일자 이전에 전출 간 경우 전입교에서 [학생생활]-[수상경력]-[학급별수상관리]에서 입력할 수 있으며, 수상연월일은 전출교에서 보내온 공문을 근거로 입력함.

### ○ 202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등 78쪽)

#### ㉟ 기타

- 라. 대안교육기관 위탁교육·직업과정 위탁교육 위탁학생·공동교육과정 수강학생과 국내학교 간 교환학생(도·농 교류 등)이 위탁기관 및 교환학교에서 받은 상은 교내상으로 입력할 수 있다.  
※ 영재교육기관(영재학교, 영재학급, 영재교육원) 관련 수상, 학교운영위원장상, 재단이사장상, 동문 회장상, 학부모 회장상 등은 입력할 수 없음.  
※ 당해 학교의 상장번호 자동채번 설정과 관계없이 직접 입력할 수 있는 [학생생활]-[수상경력]-[학급별수상관리]에서 등록하며, '수여기관'에는 위탁기관장을 입력함.

인적·학적사항  
(공통)

출결상황  
(공통)

수상경력  
(중·고등학교)

자격증 및  
인증 취득사항  
(고등학교)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공통)

교과학습  
발달상황  
(공통)

자유학기  
활동상황  
(중학교)

독서활동상황  
(중·고등학교)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공통)

정정사항  
(공통)

기타사항 등  
(공통)



고3의 경우 대입전형자료 생성 및 학교생활기록부 입력이 종료된 이후에 받는 교내상의 수상명에 학교 이름이 포함되어도 되나요?



해당 수상경력이 수상대장에는 반영되나 학교생활기록부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라면, 수상명에 고등학생이 재학하는 학교명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생활기록부에 반영되는 경우라면 대입전형자료 생성 및 학교생활기록부 입력 종료와 관계없이 학교명은 입력이 불가합니다.



참고 or 관련 근거

● 202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등 19쪽)

- 4.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에는 학생이 재학(또는 졸업 예정)한 고등학교를 알 수 있는 내용을 '학적사항', 수상 경력의 '수여기관', 봉사활동 실적의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을 제외한 어떠한 항목에도 기재할 수 없음.



#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FAQ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의 학생부 서술형 항목 중 이전 학년도 자료에 자격증 준비과정, 취득 후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전 학년도에 기재된 자격증 관련 내용을 정정해야 하나요?



〈202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따라 2011학년도 이후에는 '자격증 및 인증취득상황'란에만 입력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자격증 준비 및 취득 사실을 서술형 항목에 입력한 경우 정정을 통해 삭제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내용이 2019학년도 이후에 입력된 내용이라면 자격증 준비 및 취득 사실 등에 대한 기재 사항은 정정 검토 대상이며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2018학년도 이전에 입력된 내용이라면 소급 적용하여 정정하지 않습니다.



## 참고 or 관련 근거

### 202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등 85쪽)

#### 유의사항

- 초·중학교는 2010학년도, 고등학교는 2011학년도 이후 교내·외 인증은 학교생활기록부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하지 않음.
- 고등학교의 경우, 재학 중 취득한 기술 관련 자격증에 한해 입력이 가능하며, 기술 관련 민간자격 국가 공인 현황은 매년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 과정을 거침([참고자료 2참조]).
- 고등학교의 경우 자격증의 명칭 및 취득 사실은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란에만 입력하고, 학교생활기록부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하지 않음.
- 2020학년도 1~2학년의 경우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은 대입전형자료로 제공하지 않음.

인적·학적사항  
(공통)

출결상황  
(공통)

수상경력  
(중·고등학교)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고등학교)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공통)

교과학습  
발달상황  
(공통)

자유학기  
활동상황  
(중학교)

독서활동상황  
(중·고등학교)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공통)

정정사항  
(공통)

기타사항 등  
(공통)



재학생이 작년에 취득한 국가기술자격증을 올해 입력하려고 하니 교무학년도가 달라 입력이 되지 않습니다. 입력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전학년도에 취득한 자격증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자격증의 종류 및 입력 가능 여부를 심의 하여 정정대장을 통해 누락된 자격증을 입력합니다. 다만, 고등학교 재학 중 취득한 국가기술자격증, 국가자격증, 국가공인 민간자격증 중 기술 관련 자격증에 한해 입력할 수 있으며, 국가공인 민간 자격증의 경우, 공인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고 입력하여야 합니다.



참고 or 관련 근거

○ 202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등 81~82쪽)

〈자격증 및 인증 취득 상황〉

① 명칭 또는 종류

가. 기술 관련 국가공인 민간자격증은 급수와 취득 연도를 확인하고 공인기간 내 공인 효력이 있는 것만 입력한다.

※ 고등학교의 경우, 재학 중 취득한 국가기술자격증, 국가자격증, 국가공인 민간자격증 중 기술 관련 자격증에 한해 입력할 수 있으며 그 외의 각종 민간자격증과 국제공인자격증은 입력할 수 없음.

- 국가기술자격증 참조 사이트: <http://www.q-net.or.kr/crf005.do?id=crf00501&gSite=Q&gld=>

- 국가전문자격증 참조 사이트: <http://www.q-net.or.kr/crf005.do?id=crf00502&gSite=Q&gld=>

※ 동일 명칭 또는 종류의 자격증이더라도 등급이 다른 경우 취득한 순서대로 입력함.

※ 고등학교 교육정보시스템의 [학생생활]-[자격증및인증취득상황]-[자격증코드관리]에서 {추가}로 등록 시 자격증을 {조회}하면 국가공인 민간자격증이 모두 검색되므로 반드시 기술 관련 자격증([참고자료 2] 참조)인지 확인 후 등록해야 함.

※ 자격증 증빙자료로 자격증 원본이나 자격증 취득확인서가 있으며, 자격증 입력 시 사본을 별도로 보관함.

#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FAQ



멘토링 활동의 봉사활동 시간과 자율활동 특기사항 중복 기재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멘토링 활동을 진행하여 봉사시간을 주고, 자율활동 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봉사활동 실적에  
 멘토링 활동 봉사시간을 인정하고 관련 내용을 자율활동 특기사항에 함께 기재할 수 있는지 문의  
 (창의적 체험활동 실적 중복 인정 불가한 것이 봉사활동을 포함한 것인지)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실적은 한 개 영역에 입력하고, 다른 영역에 중복하여 입력하지 않으므로  
 멘토링 활동을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한다면 자율활동 특기사항에 기재 불가함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 참고 or 관련 근거

- 202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등 77쪽, 중등 101쪽)

**유의사항**

- 특기사항에는 활동실적(내용)의 단순한 나열식 입력은 지양하며, 구체적인 특정 대학명, 기관명\*, 상호명, 강사명\*\*은 입력하지 않음.
  - \*기관명
    - 교육관련기관(교육부 및 소속기관\*, 시도교육청 및 직속기관·교육지원청 및 소속기관\*\*에 한함)의 경우 기관명을 입력할 수 있음.
    - \* 교육부 소속기관: 대한민국학술원, 국사편찬위원회, 국립국제교육원, 국립특수교육원, 교원소청 심사위원회, 중앙교육연수원(총 6개 기관)
    - \*\* 시도교육청 및 직속기관·교육지원청 및 소속기관: [참고자료 5] 참조
    - 봉사활동 실적의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에는 구체적인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을 입력함.
  - \*\*강사명
    - 특정 강사명은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 모두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참여한 강의(또는 교육 활동)의 강사를 말함.
-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실적은 한 개 영역에 입력하고, 다른 영역에 중복하여 입력하지 않음.
- 자율활동·동아리활동·진로활동의 특기사항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입력함.

- 202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등 73쪽, 중등 97쪽)

- '활동 내용'란에는 간당한 문장으로 구체적인 봉사활동 내용 또는 제목을 입력한다.
  - ※ 학교교육계획(정규교육과정 포함에 따라 시행되는 봉사활동은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에 '학교'로 입력함. 위탁기관에서 실시한 봉사활동의 경우 '학교' 위탁기관명으로 입력함.
  - ※ 청소년단체활동에서 실시한 봉사활동은 '봉사활동 실적'란에 '개인'으로 관련사항을 입력함.
  - ※ 동아리활동(자율동아리 포함)으로 실시한 봉사활동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인적·학적사항 (공통)

출결상황 (공통)

수상경력 (중·고등학교)

자격증 및 인증 취득사항 (고등학교)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공통)

교과학습 발달상황 (공통)

자유학기 활동상황 (중학교)

독서활동상황 (중·고등학교)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공통)

정정사항 (공통)

기타사항 등 (공통)



**〈사례1〉**  
 본교는 학생회장 임기가 2학년 2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인데 학생회장 임원 입력을 2학년 담임이 해야 하는지, 3학년 담임이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사례2〉**  
 임원을 학기 단위로 임명하는데 1, 2학기 모두 임원을 한 경우 활동기간을 1년으로 입력해도 되나요?



학교생활기록부는 당해학년도를 기준으로 입력하므로 2학년 2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활동하는 학생회장의 경우, 2학년 담임과 3학년 담임이 각각 학기별로 임원활동기간을 기재하실 것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아울러 학기 단위로 임명하는 임원의 경우에는 활동기간을 학기 시작일부터 학기종료일까지 입력해야 함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참고 or 관련 근거**

● 202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등 70쪽)

08.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③ 자율활동

다. 자치활동 관련 특기사항에 입력하는 임원의 활동기간은 1학년은 입학일부터 학년 말, 2~5학년은 3월 1일부터 학년 말, 6학년은 3월 1일부터 졸업일까지를 기준으로 입력한다.

※ 학기 단위로 임명하는 경우의 임원의 활동기간은 학기 시작일부터 학기 종료일까지로 입력함.

**기재 방법**

- 학교 사정에 따라 임원의 활동기간이 학기 또는 학년 단위가 아닌 월 단위 등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실제 임명기간을 활동기간으로 입력함.
- 임원이 임기 도중에 그만두는 경우에는 종료일까지를 임명기간으로 입력함.
- 학기 중, 임원의 학적변동으로 재 선출하는 경우 신임 임원 활동기간의 시작일은 재선출일을 입력하되, 학교의 여건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 5학년 2학기 및 6학년 1학과 같이 학기 단위로 임명하는 경우 해당 학년의 자율활동 영역에 나누어 임원 활동기간을 입력함.

● 202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등 94쪽)

12.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④ 자율활동

다. 자치활동 관련 특기사항에 입력하는 임원의 활동기간은 1학년은 입학일부터 학년 말, 2학년은 3월 1일부터 학년 말까지로 입력한다.

※ 학기 단위로 임명하는 경우의 임원의 활동기간은 학기 시작일부터 학기 종료일까지로 입력함.

**기재 방법**

- 1학년 2학기 및 2학년 1학과 같이 학기 단위로 임명하는 경우 해당 학년의 자율활동 영역에 나누어 임원 활동기간을 입력함.

Q3

봉사활동 관련 내용이 학교교육계획서에 있으나 정규수업시간에 운영한 것이 아닌 경우 해당 봉사활동의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을 (학교)로 입력해야 하는지 (개인)으로 입력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시) 점심시간에 운영한 급식실 도우미 활동, 점심시간 또는 방과 후 시간에 운영한 도서실 사서 도우미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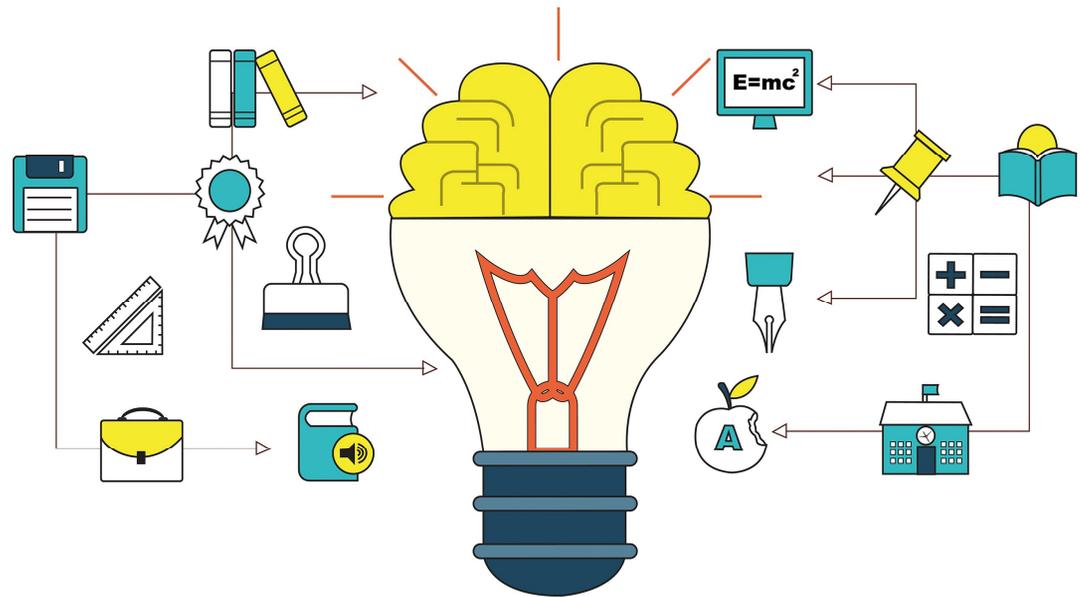
A3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학교 차원의 봉사활동 실적인 경우 '구체적인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란에 '(학교)'로 입력하고, 학생 개인 계획에 따른 봉사활동인 경우에는 '(개인)'으로 입력하실 것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이에, 귀하께서 문의하신 봉사활동의 경우 학교교육계획서에 명시되어있고, 학교 일과 중에 운영한 학교가 주체인 봉사활동 실적에 해당하므로 봉사활동 영역의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에 '(학교)'로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 or 관련 근거

202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등 73쪽, 중등 97쪽)

- 7. 봉사활동 실적
  - 2) 봉사활동 실적의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란에는 '학교' 또는 '개인'의 구분은 봉사활동 계획 주체에 따라 입력한다.



인적·학적사항 (공통)

출결상황 (공통)

수상경력 (중·고등학교)

자격증 및 인증 취득사항 (고등학교)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공통)

교과학습 발달상황 (공통)

자유학기 활동상황 (중학교)

독서활동상황 (중·고등학교)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공통)

정정사항 (공통)

기타사항 등 (공통)



동아리 활동 중 정규교육과정으로 편성되지는 않았으나 학교교육계획에 의해 이루어지는 학생의 자율동아리가 2개(방송부, 풍물부)가 있습니다. 방송부와 풍물부를 동시에 한 학생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해당 학생들은 2개 이상 활동한 경우에도 자율동아리는 학년당 1개만 입력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할 때, 학년당 1개만 입력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학생의 학습권 보장으로 여러 개의 자율동아리 활동을 할 수는 있으나 내실있는 운영으로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는 학생별로 학년당 1개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학년당 1개는 학교 운영의 측면이 아닌 학생별 기재를 의미함에 따라 동일 학년 내에서도 학생의 희망(2가지 활동 중 기재를 희망하는 1가지를 선택)에 따라 서로 다르게 기재하실 수 있음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참고 or 관련 근거

● 202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등 71쪽, 중등 95쪽)

(초등) 4. 동아리활동

다. 정규교육과정으로 편성되지는 않았으나 학교교육계획에 의해 이루어지는 학생의 자율동아리 활동은 가입에 제한을 두지 않으나 기재 동아리 개수를 학년당 1개로 제한하고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 사항(동아리명 및 간단한 동아리 설명)만 기재한다.

(중등) 5. 동아리활동

다.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학생의 자율동아리활동은 학년당 한 개만 입력한다.

※ 자율동아리명을 입력하되, 필요 시 동아리 소개를 30자 이내(동아리명과 공백 포함)로 입력할 수 있음.

〈예시〉 (위드유: 자율동아리) 소외 계층을 위한 봉사동아리



2020학년도에는 창의적 체험활동 봉사활동 중 원격수업으로 실시한 봉사소양교육을 인정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원격수업으로 실시한 봉사소양교육의 경우 환경정화활동, 캠페인활동, 이웃돕기 활동 3가지 중 어떤 영역에 해당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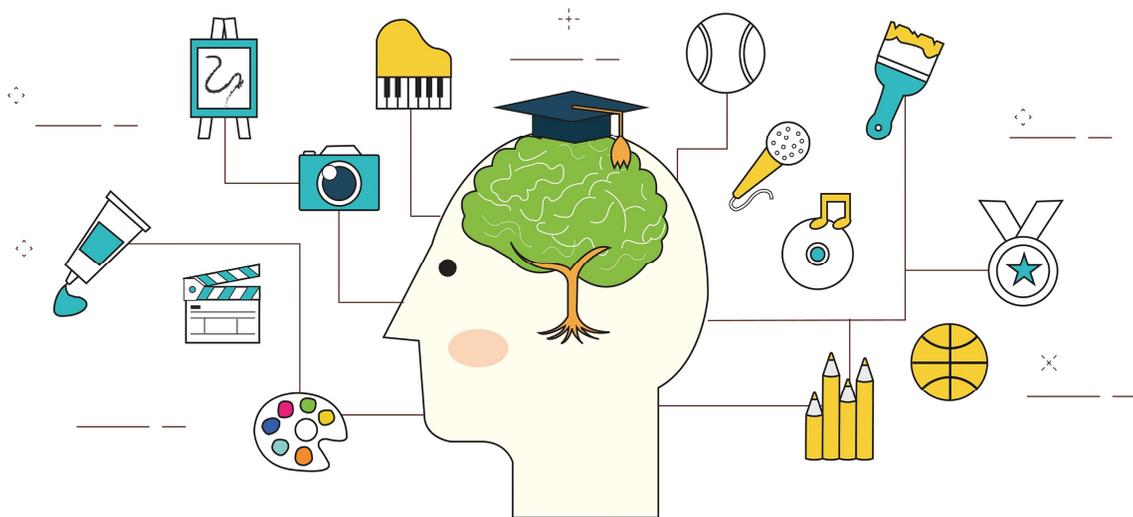


봉사활동에 대한 세부 지침은 시도교육청 봉사활동 운영 지침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소속 시도교육청 봉사활동 지침을 확인하여 학교교육과정 또는 학교교육계획상 원격수업으로 실시한 봉사활동의 내용이 어떤 영역과 관련되어 있는지 학교에서 판단하여 입력하실 사항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참고 or 관련 근거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348호)**  
 제13조(창의적 체험활동상황) ① 창의적 체험활동의 4개 영역(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별 활동내용, 평가방법 및 기준은 교육과정을 근거로 학교별로 정한다.
- 202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등 89쪽)**  
 다. 각급 학교에서는 시도교육청 봉사활동 운영 계획을 참고하여 학교·지역사회 실정에 맞는 봉사활동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인적·학적사항  
(공통)

출결상황  
(공통)

수상경력  
(중·고등학교)

자격증 및  
인증 취득사항  
(고등학교)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공통)

교과학습  
발달상황  
(공통)

자유학기  
활동상황  
(중학교)

독서활동상황  
(중·고등학교)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공통)

정정사항  
(공통)

기타사항 등  
(공통)



학기단위로 입력하는 경우 임원의 활동기간은 학기 시작일부터 학기종료일까지 입력한다고 되어 있는데, 2학기 임원인 경우 종료일이 2월 28일을 의미하는 것인지 혹은 종업식(방학식)을 의미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학기단위로 입력하는 임원의 활동기간은 학기 시작일부터 학기 종료일까지입니다. 2학기 종료일은 2월 말일(초등학교 1-5학년, 중고등학교 1-2학년) 또는 졸업일(초등학교 6학년, 중고등학교 3학년)을 의미합니다.



**참고 or 관련 근거**

● **202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등 70쪽)**

3. 자율활동

다. 자치활동 관련 특기사항에 입력하는 임원의 활동기간은 1학년은 입학일부터 학년 말, 2~5학년은 3월 1일부터 학년 말, 6학년은 3월 1일부터 졸업일까지를 기준으로 입력한다.

※ 학기 단위로 임명하는 경우의 임원의 활동기간은 학기 시작일부터 학기 종료일까지로 입력함.

● **202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등 94쪽)**

12.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④ 자율활동

다. 자치활동 관련 특기사항에 입력하는 임원의 활동기간은 1학년은 입학일부터 학년 말, 2학년은 3월 1일부터 학년 말까지로 입력한다.

※ 학기 단위로 임명하는 경우의 임원의 활동기간은 학기 시작일부터 학기 종료일까지로 입력함.

Q7

**〈사례1〉**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누가기록과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의 누가기록 횟수가 정해져 있나요?

**〈사례2〉**  
창의적 체험활동 누가기록의 입력 여부, 기록의 횟수 등을 학교에서 정할 수 있나요?

인적·학적사항  
(공통)

출결상황  
(공통)

수상경력  
(중·고등학교)

A7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과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의 누가기록 방법은 시도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누가기록 기재 방법에 대한 사항은 관할 시도교육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고등학교)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공통)

참고 or 관련 근거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348호)**

제4조(처리요령)

- ④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에 필요한 보조부는 각 학교의 실정에 맞게 계획을 수립하여 전산입력·관리하되,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의 누가기록 방법은 시도교육감이 정한다.

○ **202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등 28쪽, 중등 28쪽)**

제4조(처리요령)

자. 학생이 전출·휴학·면제·유예·제적·자퇴·퇴학할 경우에도 원적교에서는 해당 학생이 재학할 때까지의 각종 자료를 교육정보시스템 등에 입력하여 보관해야 한다. 다만,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영역별 누가기록과 행동특성 누가기록 관련 사항은 시도교육청 지침에 따른다.

※ '각종 자료'라 함은 학적 특기사항, 출결상황,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영역별 특기사항(누가기록 포함),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누가기록 포함) 등을 말함.

※ 학생부 내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의 누가기록 입력·관리 방법'을 시도 교육감이 정하도록 하였는바, 전산입력 방법도 그 중 하나에 해당함.

교과학습  
발달상황  
(공통)

자유학기  
활동상황  
(중학교)

독서활동상황  
(중·고등학교)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공통)

정정사항  
(공통)

기타사항 등  
(공통)



〈사례1〉

순회교육을 받는 학생들은 창의적 체험활동 입력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례2〉

기저질환으로 평가기간을 제외하고 한 번도 등교하지 않은 학생의 창의적 체험활동 이수시간과 특기사항 기재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사례3〉

위탁학생으로 창의적 체험활동(동아리, 자율) 내용이 없는 경우, 학생부 자료 검증 시 예외 처리 문구를 “위탁학생으로 활동 내용 없음”으로 입력해도 되는지 문의



순회교육 학생 또는 기저질환 학생의 경우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창의적 체험활동에 참여를 하였다면 개별적인 특성이 드러나도록 입력하시고, 이수시간이 0시간인 경우에는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 방안 교육부 공문에 준하여, ‘순회교육 대상자로 활동내용 없음’ 또는 출석인정 결석으로 인한 ‘등교수업 미참여로 특기사항 없음’ 등으로 기재하여 주시기를 안내하여 드립니다.

더불어 위탁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 창의적 체험활동 특기사항 기재 시 위탁기관에서 자료를 받아 입력하되, 이수 시간(실제 학생이 참여한 시간)이 0시간인 경우는 ‘위탁학생으로 활동 내용이 없음’ 이라고 기재할 수 있습니다.





## 참고 or 관련 근거

### ○ 202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등 67쪽, 중등 89쪽)

#### 제13조(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초등) 가. 자율활동·동아리활동·안전한 생활의 특기사항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활동 내용이 우수한 사항(참여도, 활동의욕, 진보의 정도, 태도 변화 등)을 중심으로 개별적인 특성이 드러나도록 구체적인 문장으로 통합하여 입력한다. 다만, 진로활동 영역은 별도로 구분하여 입력한다.

(중등) 가. 창의적 체험활동은 영역별로 학급담임교사와 창의적 체험활동 담당교사가 분담하여 평가하고, 평소의 활동상황을 누가 기록한 자료를 토대로 활동실적, 진보의 정도, 행동의 변화, 특기사항 등을 종합하여 '특기사항'란에 문장으로 입력한다.

### ○ 202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등 69쪽, 중등 93쪽, 107쪽)

#### ㉓ 특기사항

다. 창의적 체험활동 각 영역의 이수시간이 0시간인 학생에 대해서는 <예시>와 같이 그 사유를 특기사항에 입력한다.

<예시> 재택학생의 경우: 개별화교육에 따라 활동 내용이 없음. / 장기결석생인 경우: 장기결석으로 활동 내용이 없음. / 위탁학생의 경우: 위탁학생으로 활동내용이 없음.

※ 단, 위탁교육기관, 병원학교·원격수업기관의 활동 내용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의 자료를 그대로 입력함.

###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원격수업 및 등교수업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중등)(2학기 이후) 안내(교육부 교수학습평가과-6534, 2020. 8. 31.)

### ○ 서술형 항목 기재 방안 안내(교육부 교수학습평가과-9690, 2020. 12. 23.)

#### ■ 항목별 기재 방안

#### <상황별 기재 방안>

• (관찰 내용 확보) 등교수업 및 관찰 가능 원격수업에 참여(1차시 이상)한 경우, 해당 내용을 근거로 관찰 내용 기재

• (관찰 내용 미 확보) 등교수업 및 원격 수업 중 실시간 쌍방향 수업 등 관찰 가능한 수업에 모두 불참한 학생(고위험군 학생 및 가정학습 신청자 등 장기 미등교 학생)의 경우, 그 사유를 특기사항(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기재

⇒ (기재 내용) 코로나19로 원격수업에 참여함. 출석인정 결석(학생별 결석 종류 기재)으로 인한 등교수업 미 참여로 특기사항 없음.

※ 창·체의 경우, 원격수업으로 실시한 정량적 기록 병기 가능

• (전체 미 참여) 위탁, 장기결석 등으로 특정 교과 또는 창체 영역의 편성시간 전체를 참여하지 않은 경우 각 항목의 기재 방법 준수

※ 단, 특수교육대상자를 암시하는 '개별화교육'은 '순회교육'으로 변경하여 입력

인적·학적사항  
(공통)

출결상황  
(공통)

수상경력  
(중·고등학교)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고등학교)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공통)

교과학습  
발달상황  
(공통)

자유학기  
활동상황  
(중학교)

독서활동상황  
(중·고등학교)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공통)

정정사항  
(공통)

기타사항 등  
(공통)



손 뜨개질 제작물품(재료비+참가비 부담한 봉사활동, 비대면 봉사활동) 기부로 실시한 봉사활동 실적 인정 가능한가요?



봉사활동에 대한 세부 지침은 시도교육청 봉사활동 운영 지침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해당 손 뜨개질 제작 물품 기부의 봉사실적 인정 여부는 소속 시도교육청 봉사활동 지침에 따라 학교교육 계획 수립 과정, 운영 방법, 제작비 부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교에서 판단할 사항임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다만, 봉사활동 인정의 판단 기준으로 단순 기부는 불가능하며 노력이 들어간 봉사는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참고 or 관련 근거

○ 202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등 73쪽, 중등 97쪽)

7. 봉사활동 실적

나. 물품 및 현금의 단순 기부는 봉사활동 시간으로 환산하여 인정할 수 없으므로 학교생활기록부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하지 않는다.

※ 인정대상이 되는 봉사활동은 자원봉사활동의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 비정파성, 비종파성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202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등 89쪽)

다. 각급 학교에서는 시도교육청 봉사활동 운영 계획을 참고하여 학교·지역사회 실정에 맞는 봉사활동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 Q10

1학기 중, 위탁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다가 원적학교로 돌아온 학생의 창의적 체험활동 입력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위탁교육을 받는 동안에는 수행한 활동이 없지만, 출결에 있어서 출석처리가 되었습니다. 이에, 원적 학교로 돌아온 후에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해 누적입력을 하고 나니, “학생부반영기록”과 “이수시간 기준일”이 같지 않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10

위탁기관에서 실시한 창의적 체험활동 누가기록 자료를 바탕으로 본교에서 창의적 체험활동 각 영역별 누가기록을 하신 후 합산한 이수시간을 직접 입력하실 것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더불어 교육 정보시스템 입력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나이스 지원센터로 문의하시기를 안내하여 드립니다.



#### 참고 or 관련 근거

##### 202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등 70쪽, 중등 107쪽)

※ 단, 위탁교육기관, 병원학교·원격수업기관의 활동 내용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의 자료를 그대로 입력함.

##### 202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등 68쪽, 중등 104쪽)

#### 기재 방법

- 위탁기관에서 활동한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영역별 활동 내용은 [학적]-[(초·중)위탁학생관리/(고)위탁·현장실습 학생관리]-[위탁학생창의적체험활동관리]에서 입력함.

인적·학적사항 (공통)

출결상황 (공통)

수상경력 (중·고등학교)

자격증 및 인증 취득사항 (고등학교)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공통)

교과학습 발달상황 (공통)

자유학기 활동상황 (중학교)

독서활동상황 (중·고등학교)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공통)

정정사항 (공통)

기타사항 등 (공통)

  
Q11

**〈사례1〉**  
창의적 체험활동 계획 시 대회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학생부 기재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누가기록도 입력 불가능하나요?

**〈사례2〉**  
자율활동 시간에 일부 학생이 경시대회에 참여한 경우 자율활동 누가기록 시 '경시대회 참여'라고 기재해도 되나요?

  
A11

시상 계획이 있는 각종 교내 대회의 준비과정 및 참가 사실은 학교생활기록부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할 수 없으며, 창의적 체험활동의 누가기록 입력 및 관리 방법은 시도 교육감에 위임된 바, 해당 사항은 소속 시도교육청의 소관부서에 문의해야 할 사항임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누가기록은 학교생활기록부에 나타나지 않는 보조부이므로 '대회'라는 용어가 금지사항이 아닙니다. 창의적 체험활동의 보조부 기록과 관리에 대한 것은 시도교육감이 정합니다. 다만, 창의적 체험활동의 영역별 이수시간은 학생이 실제 참여한 시간을 기재하고 누가기록하므로 경시대회 참여학생의 경우 계획된 자율활동에는 참여했다고 볼 수 없기에 이수시간과 누가기록 시 이 점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 참고 or 관련 근거

### ● 202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등 18쪽, 중등 18쪽)

3. 다음은 사교육 유발 요인이 큰 사항으로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란을 포함하여 학교생활기록부의 어떠한 항목에도 기재할 수 없음.

나. 교과·비교과 관련 교외대회 참여 사실과 그 성적 및 수상 실적

※ 학교장의 참가 허락을 받아 참여한 각종 교외대회에서의 수상실적도 기재 불가함.

### ● 202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등 88쪽, 중등 155쪽)

※ 대회와 관련하여, 대회의 명칭을 단순행사로 변경하여 입력하는 행위 불가

※ 위 항목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포함하여 학교생활기록부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하여서는 안 됨.

###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348호)

제4조(처리요령)

④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에 필요한 보조부는 각 학교의 실정에 맞게 계획을 수립하여 전산입력·관리하되,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의 누가기록 방법은 시도교육감이 정한다.

### ● 202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등 93쪽)

#### ㉞ 시간

가. 창의적 체험활동의 영역별 이수시간은 정규교육과정 내에서 실시한 학년·학급단위의 활동 시간을 기준으로 본인이 실제로 참여하여 이수한 시간을 입력한다.

※ 정규교육과정 내에서 실시한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영역별 활동 내용은 누가 기록하여 관리함.

※ 어떠한 사유(경조사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출석인정·질병·미인정·기타결석·조퇴 등을 구분하지 않음)로든 참여하지 않은 시간은 제외함. 단, 현장체험학습(수련활동 등)기간 동안 미참여 학생을 대상으로 별도의 창의적 체험활동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 경우 해당 활동의 누가기록 이수시간 및 특기사항을 입력할 수 있음.

인적·학적사항  
(공통)

출결상황  
(공통)

수상경력  
(중·고등학교)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고등학교)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공통)

교과학습  
발달상황  
(공통)

자유학기  
활동상황  
(중학교)

독서활동상황  
(중·고등학교)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공통)

정정사항  
(공통)

기타사항 등  
(공통)

  
**Q12**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특기사항을 기록 할 때, 누가기록에 있는 내용만 입력할 수 있나요?

  
**A12**

누가기록뿐만 아니라, 학교 정규교육과정 상 교사가 직접 관찰 평가한 내용은 창의적 체험활동 특기사항에 기재가 가능함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참고 or 관련 근거**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348호)**  
제13조(창의적 체험활동상황)

② 제1항의 자율활동·동아리활동·진로활동은 영역별 이수시간 및 특기사항(개별적 특성이 드러나는 사항 등)을 입력하고, 봉사활동은 실적을 입력한다.
- **202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등 67쪽, 중등 103쪽)**  
제13조(창의적 체험활동상황)

가. 창의적 체험활동은 영역별로 학급담임교사와 창의적 체험활동 담당교사가 분담하여 평가하고, 평소의 활동상황을 누가 기록한 자료를 토대로 활동실적, 진보의 정도, 행동의 변화, 특기사항 등을 종합하여 '특기사항'란에 문장으로 입력한다.
- **202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등 27쪽, 중등 27쪽)**  
제4조(처리요령)

다. 학교생활기록부의 서술형 항목은 교사가 직접 관찰 평가한 내용을 근거로 입력하며,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실시한 교육활동 중 교사 지도하에 학생이 직접 작성한 자료는 활용할 수 있다.

Q13

〈사례1〉

1학기 학급 임원에 중도 취학생이 당선된 경우에는 임원 재임 기간을 학기 시작일부터 기재해야 하는지, 아니면 취학 일자부터 기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사례2〉

학생자치회 임원인 학생이 전출을 가서 임기 도중 그만두고 새 임원을 선출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입력하면 될까요?

A13

중도 입급한 학생의 재임기간은 학적 생성일부터 시작하여 학기종료일까지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임기 도중에 그만두는 경우 1학년의 경우 입학일부터(2~3학년의 경우 3월 1일부터) 전출일까지를 임명기간으로 입력하며, 재선출된 신입 임원의 경우 학교의 여건에 따라 달리 정한 내용이 없다면 재선출일을 시작으로 입력해야 함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참고 or 관련 근거

○ 202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등 70쪽)

③ 자율활동

다. 자치활동 관련 특기사항에 입력하는 임원의 활동기간은 1학년은 입학일부터 학년 말, 2~5학년은 3월 1일부터 학년 말, 6학년은 3월 1일부터 졸업일까지를 기준으로 입력한다.

※ 학기 단위로 임명하는 경우의 임원의 활동기간은 학기 시작일부터 학기 종료일까지로 입력함.

기재 방법

- 학교 사정에 따라 임원의 활동기간이 학기 또는 학년 단위가 아닌 월 단위 등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실제 임명기간을 활동기간으로 입력함.
- 임원이 임기 도중에 그만두는 경우에는 종료일까지를 임명기간으로 입력함.
- 학기 중, 임원의 학적변동으로 재 선출하는 경우 신입 임원 활동기간의 시작일은 재선출일을 입력하되, 학교의 여건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 5학년 2학기 및 6학년 1학과 같이 학기 단위로 임명하는 경우 해당 학년의 자율활동 영역에 나누어 임원 활동 기간을 입력함.

○ 202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등 94쪽)

④ 자율활동

다. 자치활동 관련 특기사항에 입력하는 임원의 활동기간은 1학년은 입학일부터 학년 말, 2학년은 3월 1일부터 학년 말까지로 입력한다.

※ 학기 단위로 임명하는 경우의 임원의 활동기간은 학기 시작일부터 학기 종료일까지로 입력함.

기재 방법

- 임원이 임기 도중에 그만두는 경우에는 종료일까지를 임명기간으로 입력함.
- 학기 중, 임원의 학적변동으로 재 선출하는 경우 신입 임원 활동기간의 시작일은 재선출일을 입력하되, 학교의 여건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인적·학적사항 (공통)

출결상황 (공통)

수상경력 (중·고등학교)

자격증 및 인증 취득사항 (고등학교)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공통)

교과학습 발달상황 (공통)

자유학기 활동상황 (중학교)

독서활동상황 (중·고등학교)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공통)

정정사항 (공통)

기타사항 등 (공통)



**〈사례1〉**  
 학기 초에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학교스포츠클럽을 개설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운영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동아리 특기사항에 학교스포츠클럽명과 이수 시간을 어떻게 입력해야 하나요?

**〈사례2〉**  
 올해 본교는 코로나19로 인해 학교스포츠클럽 부서도 개설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활동 내용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 아무것도 입력 안해도 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학교생활기록부는 학생의 활동을 기록하는 문서로 모든 활동과 관련하여 학교에서 미운영한 사항은 미입력하고, 학생이 미참여한 사항은 그 사유를 입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2020학년도에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학교스포츠클럽은 “2020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서술형 항목 기재 방안” (교육부 공문)에 따라 학교스포츠클럽 등록 후, 활동 시간이 0시간인 학생에 대해서는 ‘동아리활동’란에 미입력한다고 안내드렸습니다.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348호)**
  - 훈령
  - ⑧ 「학교체육진흥법」 제10조에 따른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내용은 ‘동아리활동’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력한다. 이 경우 활동 내용은 학교장이 인정한 기간 동안 수행한 것으로 한정한다.
    1. 클럽명
    2. 활동시간
    3. 개별적 특성이 드러나는 특기사항
  - ⑨ 제8항에도 불구하고 정규교육과정에 포함되지 않은 학교스포츠클럽활동은 특기사항을 입력하지 않는다.
  - ⑩ 제8항의 활동시간은 동아리활동 이수시간에 합산한다.
- **202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등 69쪽, 중등 93쪽)**
  - ㉓ 특기사항
 

다. 창의적 체험활동 각 영역의 이수시간이 0시간인 학생에 대해서는 〈예시〉와 같이 그 사유를 특기사항에 입력한다.  
 〈예시〉 장기결석생인 경우: 장기결석으로 활동 내용이 없음. / 위탁학생의 경우: 위탁학생으로 활동 내용이 없음.
- **2020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서술형 항목 기재 방안 안내[교육부 교수학습평가과-9690(2020. 12. 23.)]**  
 〈상황별 기재 방안〉
  -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학교스포츠클럽) 학교스포츠클럽 등록 후, 활동 시간이 0시간인 학생에 대해서는 ‘동아리활동’란에 미입력



인적·학적사항  
(공통)

### Q15

OO교과교육연구회와 교육연구정보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주관한 온라인 행사에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참여한 내용을 창의적 체험활동 특기사항에 기재할 수 있을까요?

출결상황  
(공통)

### A15

복수의 기관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주관한 체험활동의 경우는 해당 기관 모두가 동일학교급 타학교와 교육관련기관 중 하나에 만족해야 합니다. 교육연구정보원의 경우는 기재요령에서 제시하는 교육관련 기관에 속하지만, 교과교육연구회는 동일학교급 타학교나 교육관련기관에 속하지 않으므로 기재할 수 없습니다.

수상경력  
(중·고등학교)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고등학교)



### 참고 or 관련 근거

#### ○ 202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등 68~69쪽, 중등 91쪽)

나.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영역별 체험활동 특기사항은 활동 장소가 국내일 경우에 한하여 다음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 입력한다(봉사활동 제외).

- 1) 학교교육계획에 의해 학교가 주최하고 주관한 체험활동
- 2) 학교장이 승인하여 동일학교급 타학교에서 주최하고 주관한 체험활동
- 3) 학교장이 승인한 교육관련기관에서 주최하고 주관한 체험활동

※ 복수의 기관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주관하는 체험활동은 모든 기관이 위 1), 2), 3) 조건을 갖추었을 때만 기재가능함.

※ 교육관련기관은 교육부 및 소속기관, 시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소속기관에 한함.

- 교육부 소속기관: 대한민국학술원, 국사편찬위원회, 국립국제교육원, 국립특수교육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중앙교육연수원(총 6개 기관)
- 시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소속기관 현황은 [참고자료 5]를 참조함.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공통)

교과학습  
발달상황  
(공통)

자유학기  
활동상황  
(중학교)

독서활동상황  
(중·고등학교)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공통)

정정사항  
(공통)

기타사항 등  
(공통)

Q16

〈사례1〉

현재 고3 재학생의 2018학년도 창의적 체험활동 특기사항에 학생이 하지 않은 활동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학생이 하지 않은 활동이 기재된 경우, 정정을 통해 삭제할 수 있을까요?

〈사례2〉

현재 6학년 학생들의 2015학년도 창의적 체험활동의 세부능력 특기사항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누가기록에는 교사의 주관적인 평가내용(교사가 관찰한 학생의 특성이 담긴 내용)은 없지만, 객관적인 내용(〈예시〉 민속놀이 ~회, 종이접기 ~회)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누가기록을 근거로 “창체 활동의 동아리활동 세부능력 및 특기 사항”을 정정하여 기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16

2018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따르면 창의적 체험활동은 본인이 실제로 참여하여 이수한 시간을 입력하며, 학생이 실제로 활동한 것을 바탕으로 교사가 관찰·평가를 통해 입력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재된 해당 활동 참여명단, 활동일 출결 증빙자료 등’의 객관적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정정할 수 있습니다.

2015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따르면 자율, 동아리, 진로활동의 이수시간은 영역별로 입력하고 특기사항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영역별로 개별적인 특성이 드러나거나 활동내용이 우수한 사항(참여도, 활동의욕, 진보의 정도, 태도 변화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문장으로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객관적 증빙자료는 (1) 해당 증빙 자료가 해당 학년도에 작성되었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 여부와 (2) 해당 증빙 자료가 훈령과 지침(기재요령)에 명시된 항목별 입력 주체가 작성한 것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 여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해당 누가기록의 객관적 증빙자료 가능 여부를 포함한 정정사항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하실 사항임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 참고 or 관련 근거

### ○ 2018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등 81쪽, 중등 89쪽)

#### ㉓ 시간

- 창의적 체험활동의 영역별 이수시간은 정규교육과정 내에서 실시한 학년·학급단위의 활동 시간을 기준으로 본인이 실제로 참여하여 이수한 시간을 입력한다.

#### ㉔ 특기사항

- 가.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특기사항은 활동 내용(활동실적 진보의 정도 행동의 변화 등)을 종합하여 학생의 개별적 특성이 드러나도록 입력한다. 단, 봉사활동은 개인 계획에 의해 실시한 내용도 포함하여 입력한다.  
※ 활동실적(내용)의 단순한 나열식 입력은 지양함.

### ○ 202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등 98쪽, 중등 174쪽)

가. 당해 학년도 이전의 학교생활기록부 입력 자료에 대한 정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학교생활기록부를 정정할 수 있다.

1) 객관적 증빙자료란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료를 말한다.

- 가) 해당 증빙자료가 해당 학년도에 작성되었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해당 증빙자료가 훈령과 지침 기재요령에 명시된 항목별 입력 주체가 작성한 것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

인적·학적사항  
(공통)

출결상황  
(공통)

수상경력  
(중·고등학교)

자격증 및  
인중 취득상황  
(고등학교)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공통)

교과학습  
발달상황  
(공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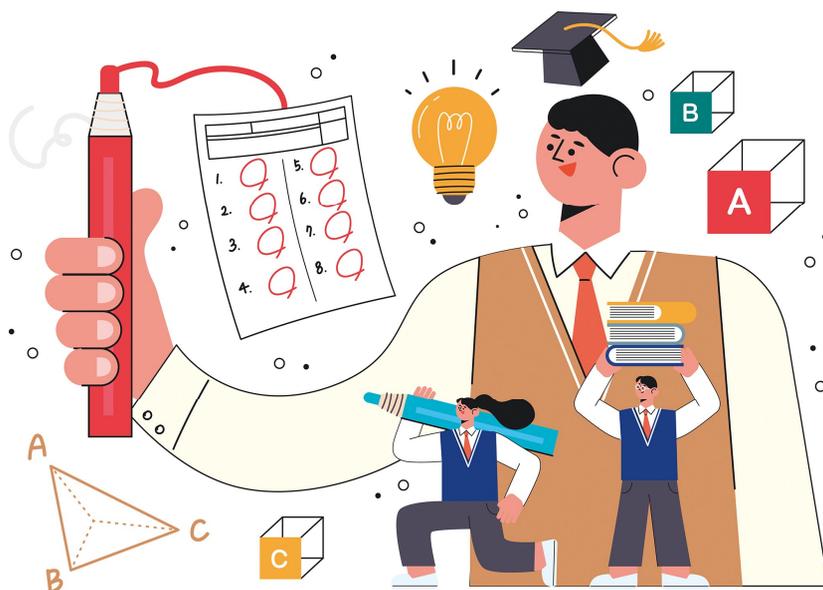
자유학기  
활동상황  
(중학교)

독서활동상황  
(중·고등학교)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공통)

정정사항  
(공통)

기타사항 등  
(공통)





온라인으로 활동한 창의적 체험활동의 활동명 기재 시, 예를 들어 '개학식(온라인)'과 같이 뒤에 반드시 '온라인'으로 표기해야 하나요?



창의적 체험활동명에 '온라인'을 표기해야 하는 지침은 없습니다. 따라서 표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참고 or 관련 근거

○ 코로나19대응을 위한 원격수업 및 등교수업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중등)(2학기 이후) 안내 (교육부 교수 학습평가과-6534, 2020.8.31.)

[학생부 기재]

■ 기본 원칙

- (학생부 기재) 원격수업 및 등교수업 기간 중 교사가 직접 관찰·확인한 학생의 수행 과정과 결과를 종합적으로 기재
  - ※ 원격수업 기간 중 직접 관찰하지 못한 과제물 내용은 기재하지 않되, 등교수업 시 해당 과제물을 활용한 수업을 진행한 경우 등교수업에서 관찰한 내용은 기재 가능
- (기재 내실화) 내실 있는 학생부 기재를 위해 원격수업 및 등교수업 계획·운영 시 학생의 수행과정 및 결과를 관찰할 수 있는 방안 확보
  - ※ 예) 원격수업 시 관찰 가능 유형(Ⅰ·Ⅱ)을 포함하여 운영, 원격수업과 연계하여 등교수업 시 학생참여형 수업 실시 등
- (인적·학적·출결) '20. 3. 1.부터의 사항을 기재
  - ※ 고등학교는 학교의 원격수업 운영일수를 출결 특기사항에 일괄입력



인적·학적사항  
(공통)

### Q18

OO교과수업 시간과 창의적 체험활동시간에 미국의 OO고등학교와 온라인 실시간 시스템을 통한 문화 교류 프로그램을 실시했습니다.

담임으로서 학급학생들과 진행하다보니 학기 초 교육계획서에는 해당 활동내용이 없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활동을 위한 재료구입 등을 하면서 세부시행계획을 세우고 내부결재를 통해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경우 해외활동실적금지에 의해 학생부 기재할 수 없는 것이지요? 만약 기재가능하다면 교과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또는 진로활동 특기사항 등 어떤 영역에 입력해야 하나요? 미국의 OO고등학교 학교이름도 입력 가능할까요?

출결상황  
(공통)

수상경력  
(중·고등학교)

### A18

해외 활동실적은 기재 금지사항이나 문의하신 활동내용은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국내에서 학교가 주최하고 주관하여 실시한 활동이기에 기재 가능합니다. 다만 해외고등학교명은 '기관명 및 고교정보 블라인드 처리 항목'이기에 입력 불가하며 학교교육계획 시에 계획된 영역에 입력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해당 교과 수업 시간에 이루어진 활동인 경우에만 입력 가능하며 개인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는 202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149쪽)에 안내된 6가지만 입력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생활기록부 영역별 내용은 해당 영역에만 입력해야 합니다. 즉 교육과정 편성 운영지침 등에 따라 각 활동별 성격이 정해져 있으므로 자율활동으로 진행한 프로그램은 자율활동에, 진로활동으로 계획하여 진행한 활동은 진로활동에, 교과수업 시간에 진행한 활동은 교과영역에 입력하셔야 합니다.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고등학교)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공통)

교과학습  
발달상황  
(공통)



### 참고 or 관련 근거

#### ○ 2020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등 27쪽, 중등 27쪽)

마. 학교생활기록부 영역별 내용은 해당 영역에만 입력한다.

※ 입력 글자 수 초과를 이유로 특정 영역의 내용을 타 영역에 입력하지 않음.

#### ○ 2020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등 68~69쪽, 중등 91쪽)

나.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영역별 체험활동 특기사항은 활동 장소가 국내일 경우에 한하여 다음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 입력한다(봉사활동 제외).

- 1) 학교교육계획에 의해 학교가 주최하고 주관한 체험활동
- 2) 학교장이 승인하여 동일학교급 타학교에서 주최하고 주관한 체험활동
- 3) 학교장이 승인한 교육관련기관에서 주최하고 주관한 체험활동

#### ○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19.11.28.),(교육부 교수학습평가과-4875(2020. 7. 1.))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내 고교 정보를 블라인드 처리함

: 재학 학교명뿐만 아니라, 학교명의 일부를 활용한 별칭 및 타 학교명도 입력 불가함

독서활동상황  
(중·고등학교)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공통)

정정사항  
(공통)

기타사항 등  
(공통)

  
Q19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인해 2020학년도 개학이 연기되었습니다. 개학하기 전인 '2020. 3월 말 ~ 2020.4월 초'에 봉사활동을 실시하였을 경우, 봉사활동 인정 시간 및 기재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19

학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까지입니다. 즉 개학일이 늦어졌지만 학생의 진급이나 졸업은 학년제로 운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봉사활동을 포함하여 학교의 교육과정은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까지 운영됩니다.

따라서 3월 1일 이후 개학일 이전의 봉사활동을 하였다면 당해 학년도 봉사활동실적으로 인정되며 학교 생활기록부에 입력 가능합니다.

봉사활동시간은 1일 8시간 이내로 인정하며, 수업시간이 7교시인 경우는 1시간, 휴업일인 경우 8시간까지 인정할 수 있습니다. 봉사활동시간 인정에 대한 부분은 원격수업 여부에 관계없이 등교수업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적용되며, 온라인 개학 이전 휴업일에 실시한 봉사활동은 1일 8시간 이내로 인정됩니다.

다만, 개인봉사활동의 경우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사전계획서 및 인정 여부에 대해 소속학교에 문의하신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참고 or 관련 근거

○ 2020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등 74쪽, 중등 98쪽)

마. 봉사활동 시간 인정은 1일 8시간 이내로 인정한다.

※ 1일 8시간 이내로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평일 수업시간이 7교시인 경우 1시간, 6교시인 경우 2시간, 4교시인 경우 4시간, 휴업일(토요일·공휴일·방학·재량휴업일)인 경우 8시간 이내로 인정함.

※ 교외체험학습 기간 등 학교장 출석인정 결석 기간의 봉사활동은 당일 수업시수와 봉사활동 시간을 합하여 8시간 이내로 함.

〈예시〉 교외체험학습일에 봉사활동 8시간을 한 경우 봉사활동 당일 학교 수업이 7시간이면 봉사활동은 1시간만 인정함.

※ 다만, 현행은 1일 최대 봉사활동 인정 가능 시간(8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회당 4시간으로 연 3회의 범위 내에서 실적으로 인정함.

○ 2020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등 76쪽, 중등 100쪽)

카. 당해학년도(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 봉사활동 실적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며, 다음 년도에서 누락된 사항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을 통해 입력한다.

○ 초·중등교육법[시행 2020. 10. 20.]

제24조(수업 등) ① 학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26조(학년제) ① 학생의 진급이나 졸업은 학년제로 한다.



초

중

고



구체적인 특정 대학명, 기관명, 상호명은 학생부에 입력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대입공정성강화방안이 적용되고 있기에 \*\*대학명이 봉사활동실적 또는 주관기관명에 입력된 경우, \*\*대학명도 삭제해야 하나요?



봉사활동실적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란에는 실제 봉사활동을 실시한 장소와 기관명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봉사 활동내용에는 기재할 수 없습니다.



### 참고 or 관련 근거

#### ● 202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등 73쪽, 중등 97쪽)

##### ⑦ 봉사활동 실적

가. 봉사활동 실적에는 학교교육계획에 의해 실시한 봉사활동과 학생 개인계획에 의해 실시한 봉사활동의 구체적인 실적을 입력한다.

- 1) 학생 개인계획에 의해 실시한 봉사활동은 학교장이 승인한 경우만 입력한다.
- 2) 봉사활동 실적의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란의 '학교' 또는 '개인'의 구분은 봉사활동계획 주체에 따라 입력한다.
  - ※ 봉사활동 실적의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에는 구체적인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을 입력함.
- 3) '활동 내용'란에는 간단한 문장으로 구체적인 봉사활동 내용 또는 제목을 입력한다.
  - ※ 학생의 성장, 감상 등 학생의 특기사항을 드러낼 수 있는 정성적인 평가내용의 입력은 불가함.

인적·학적사항  
(공통)

출결상황  
(공통)

수상경력  
(중·고등학교)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고등학교)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공통)

교과학습  
발달상황  
(공통)

자유학기  
활동상황  
(중학교)

독서활동상황  
(중·고등학교)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공통)

정정사항  
(공통)

기타사항 등  
(공통)

Q21

〈사례1〉

사회 토론동아리가 학교 정규교육시간 외(등교시간 전 또는 주말 등)에 캠페인 활동 등과 같은 봉사 활동을 진행하였다면 이 경우는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사례2〉

국어 사랑동아리에서 등교시간과 점심시간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고운말 사용하기' 캠페인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토요일 지역행사에 참여하여 '고운말 사용하기' 캠페인활동을 진행하고 행사 뒷정리를 도왔습니다. 이 경우 캠페인활동에 참가한 학생들은 봉사활동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사례3〉

미술동아리가 동아리시간 외에, 미술실이나 특별실을 청소했다면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의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A21

봉사활동 시간은 다른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의 시간과 중복하여 인정할 수 없으며, 특히 동아리활동의 일환으로 봉사활동을 실시한 경우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동아리활동으로만 인정됩니다. 이에, 정규교육과정 시간 포함 여부와 관계없이 동아리 활동으로 실시한 봉사활동은 동아리활동 실적으로만 인정되며, 봉사활동 실적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참고 or 관련 근거

○ 202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등 73~74쪽, 중등 97~98쪽)

⑦ 봉사활동 실적

※ 동아리활동(자율동아리 포함)으로 실시한 봉사활동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바. 봉사활동 시간은 다른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의 시간과 중복하여 인정할 수 없다.

※ 봉사동아리 부서에서 동아리활동의 일환으로 봉사활동을 실시한 경우,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동아리활동 내용으로만 인정함.

○ 202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등 77쪽, 중등101쪽)

☎ 유의사항

•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실적은 한 개 영역에 입력하고, 다른 영역에 중복하여 입력하지 않음.

  
Q22

동아리 부서명을 'fly'로 정해 운영하고 영문 부서명 그대로 입력할 수 있나요? 아니면 한글 발음표기 ('플라이')로 반드시 바꿔서 기재해야 하나요?

  
A22

학교생활기록부의 영문 입력은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가능하며 해당 동아리의 영문 부서명이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되는지는 소속 시도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에 따라 단위학교의 학업성적관리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사용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또한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되어 사용되는 영문은 그대로 학교생활기록부에 입력이 가능합니다.



참고 or 관련 근거

● 202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등 27쪽, 중등 28쪽)

- 바. 학교생활기록부의 문자는 한글로 입력하되, 부득이한 경우 영문으로 입력할 수 있다.
- 외국인 성명
  - 도로명 주소에 포함된 영문
  - 일반화된 명사(CEO, PD, UCC, IT, POP, CF, TV, PAPS, SNS, PPT 등)
  - 고유 명사
  - 외국 학교명
  - 도서명과 저자명

● 2020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등 83쪽, 중등 127~128쪽)

-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 ⑥ 학업성적관리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5.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방법 및 기재내용 등에 관한 사항

인적·학적사항  
(공통)

출결상황  
(공통)

수상경력  
(중·고등학교)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고등학교)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공통)

교과학습  
발달상황  
(공통)

자유학기  
활동상황  
(중학교)

독서활동상황  
(중·고등학교)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공통)

정정사항  
(공통)

기타사항 등  
(공통)



초

중

고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인해 창의적 체험활동 자율활동의 많은 시간을 일방향 원격수업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동아리활동 역시 일부를 일방향 원격수업으로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등교 기간에 단방향으로 진행한 자율활동과 동아리활동에 대해 교사의 관찰 하에 소감문을 작성하였습니다. 이때 작성한 소감문을 활용하여 특기사항을 기재해도 될까요?  
또한 학생회 학생들이 온라인상으로 캠페인 활동을 진행하고 이후 등교수업 시 지도교사의 지도 아래 소감문을 작성했다면 자율활동 특기사항에 기재 가능할까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등 등교수업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교육부 교수학습평가과-3936(20.6.3.)]에 따르면, 학교생활기록부에는 원격수업 및 등교수업 기간 중 교사가 직접 관찰·확인한 학생의 수행 과정과 결과를 종합적으로 기재해야 하며, 창의적 체험활동은 교사 관찰여부와 무관하게 정량적 기록이 가능한 부분은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 기재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학교생활기록부의 서술형 항목은 교사가 직접 관찰·평가한 내용을 근거로 입력하며,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실시한 교육활동 중에 교사 지도하에 학생이 직접 작성한 자료(동료평가서, 자기평가서, 수행평가 결과물, 소감문, 독후감)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격(일방향)으로 운영한 자율활동 등을 등교기간에 소감문 작성을 위한 별도의 정규시간을 계획하여 교사지도하에 작성하고 발표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다면 이 과정에서 교사가 직접 관찰·평가한 내용을 근거로 특기사항 기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입학식 및 시업식, 임원의 활동 기간 등 교사의 관찰여부와 무관하게 정량적인 기록이 가능한 부분은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 기재할 수 있지만, 교사의 직접 관찰이 불가능하다면 정성적 평가의 기록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학생회 캠페인의 경우 교사의 관찰·평가가 가능한 부분이라면 원격수업과 등교수업 기간 중 교사가 직접 관찰·확인한 내용에 한하여 정성적 기록이 가능함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 참고 or 관련 근거

### ○ 2020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등 27쪽, 중등 27쪽)

다. 학교생활기록부의 서술형 항목은 교사가 직접 관찰·평가한 내용을 근거로 입력하며,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실시한 교육활동 중 교사 지도하에 학생이 직접 작성한 자료\*는 활용할 수 있다.

-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실시한 교육활동 중에 교사 지도하에 학생이 직접 작성한 자료’로 학생부 기재 시 활용 가능한 자료는 아래 사례로 한정함
- ① 동료평가서, ② 자기평가서, ③ 수행평가 결과물, ④ 소감문, ⑤ 독후감

- 사용자는 학생부 내 서술형 항목 입력을 위해 학생·학부모 등에게 상기 ①~⑤의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 일체의 자료를 요구하거나 제공 받아서는 안 됨.

###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원격수업 및 등교수업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중등)(2학기 이후) 안내[교육부 교 수학습평가과-6534(2020. 8. 31.)호]

[학생부 기재]

#### ■ 기본 원칙

- (학생부 기재) 원격수업 및 등교수업 기간 중 교사가 직접 관찰·확인한 학생의 수행 과정과 결과를 종합적으로 기재
  - ※ 원격수업 기간 중 직접 관찰하지 못한 과제물 내용은 기재하지 않되, 등교수업 시 해당 과제물을 활용한 수업을 진행한 경우 등교수업에서 관찰한 내용은 기재 가능
- (기재 내실화) 내실 있는 학생부 기재를 위해 원격수업 및 등교수업 계획·운영 시 학생의 수행과정 및 결과를 관찰할 수 있는 방안 확보
  - ※ 예) 원격수업 시 관찰 가능 유형(Ⅰ·Ⅱ)을 포함하여 운영, 원격수업과 연계하여 등교수업 시 학생참여형 수업 실시 등
- (교과활동) 원격수업과 등교수업, 수행평가 등에서 교사가 직접 관찰·확인한 내용을 종합하여 기재
- (창의적 체험활동) 정량적 기록이 가능한 부분\*은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 기재(교사 관찰여부와 무관)
  - \* 예) ① 2020학년도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107쪽 참조, ② 원격수업에서 참여한 입학식 등 자율활동 시간과 등교수업에서 실시한 자율활동 시간을 누가하여 기록 등
  - ※ 교사의 관찰·평가를 통한 정성적 기록은 원격수업과 등교수업 기간 중 교사가 직접 관찰·확인한 내용에만 한하여 기재 가능

인적·학적사항  
(공통)

출결상황  
(공통)

수상경력  
(중·고등학교)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고등학교)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공통)

교과학습  
발달상황  
(공통)

자유학기  
활동상황  
(중학교)

독서활동상황  
(중·고등학교)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공통)

정정사항  
(공통)

기타사항 등  
(공통)

  
Q24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자율활동 영역에 학급의 1인 1역할을 정하고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본교 학급회 조직표에 있는 OO 부장 외에 학급별로 담임교사가 만든 다른 부장이라는 표현도 사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24

창의적 체험활동의 4개 영역별 활동내용, 평가방법 및 기준은 교육과정을 근거로 학교별로 정하기에 학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교, 학년, 학급 임원 외에도 학급 1인 1역할 등 학교교육계획에 의해 실시한 다양한 활동을 자율활동 특기사항에 입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율활동의 특기사항은 활동 과정에서 드러나는 개별적인 행동 특성, 참여도, 협력도, 활동실적 등을 평가하고 상담기록 등의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실제적인 역할과 활동 위주로 입력합니다.



참고 or 관련 근거

- 2020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등 66쪽, 중등 88쪽)  
제13조(창의적 체험활동상황) ① 창의적 체험활동의 4개 영역(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별 활동내용, 평가방법 및 기준은 교육과정을 근거로 학교별로 정한다.
- 2020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등 70쪽, 중등 93쪽)
  - ④ 자율활동
    - 가. 자율활동의 특기사항은 활동결과에 대한 평가보다는 활동과정에서 드러나는 개별적인 행동 특성, 참여도, 협력도, 활동실적 등을 평가하고 상담기록 등의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실제적인 역할과 활동 위주로 입력한다.
    - 나. 정규교육과정 또는 학교교육계획에 의해 실시한 학생 상담활동, 자치법정 등은 자율활동 특기사항에 입력한다.



인적·학적사항  
(공통)

## Q25

학생부를 점검하다 보니 전년도 봉사활동 내용에 'OO외국인센터 안내도우미'라고 주관기관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경우, 특정기관명이 입력되었다고 보고 모두 정정해야 할까요? 해당 봉사활동은 1365에서 나이스로 연계 전송되어 온 봉사활동입니다.

출결상황  
(공통)

## A25

구체적인 특정 기관명은 사교육 유발 요인이 큰 사항으로 봉사활동 실적의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을 제외하고는 학교생활기록부의 어떠한 항목에도 기재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봉사활동 영역의 '활동내용'란에는 간단한 문장으로 구체적인 봉사활동 내용 또는 제목을 입력하며, 구체적인 특정 기관명은 입력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전학년도의 입력 자료는 소속교에서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정해야 합니다. 또한, 외부활동의 자료를 학교생활기록부에 입력할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의 각종 유의 사항을 준수하여 입력하여야 합니다.

수상경력  
(중·고등학교)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고등학교)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공통)



### 참고 or 관련 근거

#### ● 2020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등 73쪽, 중등 97쪽)

##### ⑦ 봉사활동 실적

가. 봉사활동 실적에는 학교교육계획에 의해 실시한 봉사활동과 학생 개인계획에 의해 실시한 봉사활동의 구체적인 실적을 입력한다.

- 1) 학생 개인계획에 의해 실시한 봉사활동은 학교장이 승인한 경우만 입력한다.
- 2) 봉사활동 실적의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란의 '학교' 또는 '개인'의 구분은 봉사활동계획 주체에 따라 입력한다.
  - ※ 봉사활동 실적의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에는 구체적인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을 입력함.
- 3) '활동 내용'란에는 간단한 문장으로 구체적인 봉사활동 내용 또는 제목을 입력한다.
  - ※ 학생의 성장, 감상 등 학생의 특기사항을 드러낼 수 있는 정성적인 평가내용의 입력은 불가함.

교과학습  
발달상황  
(공통)

자유학기  
활동상황  
(중학교)

독서활동상황  
(중·고등학교)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공통)

정정사항  
(공통)

기타사항 등  
(공통)

 Q26

본교에서 자체적으로 진로계획을 세워 '교육부 꿈길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또는 OO시진로교육원(OO시교육청직속기관)이 주관하는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본교에서 참여학생을 모집하고 진행하였다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가 가능할까요?

 A26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영역별 체험활동 특기사항은 활동 장소가 국내일 경우로 한하여, 학교교육계획에 의해 학교가 주최하고 주관한 체험활동, 학교장이 승인하여 동일학교급 타학교에서 주최하고 주관한 체험활동, 학교장이 승인한 교육관련기관에서 주최하고 주관한 체험활동의 경우에 입력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2가지 경우 모두 학교생활기록부에 입력이 가능합니다. 즉, 학교교육계획에 의해 학교가 주최하고 주관한 진로체험활동을 교육부 운영 대국민 서비스 플랫폼 '꿈길'의 프로그램으로 운영한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진로활동 특기사항에 입력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OO시 진로교육원의 경우 OO시교육청 직속기관으로 교육관련기관에 해당하고 학교장이 승인한 교육관련기관 주최주관 활동이라면 창의적 체험활동 진로활동 특기사항에 기재 가능합니다. 다만,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진로체험지원전산망 '꿈길'은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 체험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결해주는 기능을 하고 있는 바, '꿈길'을 활용한 진로 체험 활동 모두를 진로활동 특기사항에 기재할 수 있는 것은 아님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참고 or 관련 근거

○ 2020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등 68~69쪽, 중등 91쪽)

나.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영역별 체험활동 특기사항은 활동 장소가 국내일 경우에 한하여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입력한다(봉사활동 제외).

- 1) 학교교육계획에 의해 학교가 주최하고 주관한 체험활동
- 2) 학교장이 승인하여 동일학교급 타학교에서 주최하고 주관한 체험활동
- 3) 학교장이 승인한 교육관련기관에서 주최하고 주관한 체험활동

※ 복수의 기관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주관하는 체험활동은 모든 기관이 위 1), 2), 3) 조건을 갖추었을 때만 기재 가능함.

※ 교육관련기관은 교육부 및 소속기관, 시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소속기관에 한함.

- 교육부 소속기관: 대한민국학술원, 국사편찬위원회, 국립국제교육원, 국립특수교육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중앙교육연수원(총 6개 기관)
- 시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소속기관 현황은 [참고자료 5]를 참조함.



인적·학적사항  
(공통)

## Q27

창의적 체험활동, 행동발달상황 활동날짜 입력문의입니다.  
 학급자치회 회장, 전교 학생자치회 회장 등 임원활동기간은 필수 입력이지만, 그 외의 경우에도 필수 입력인지, 날짜 입력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자율활동에 입력하는 내용 중 '민주시민교육(2020.00.00.)을 통해~'와 같이 활동명(날짜)로 입력해야만 하나요?

출결상황  
(공통)

수상경력  
(중·고등학교)

## A27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특기사항 입력 시 정량적인 기록이 가능한 부분은 횟수와 시간 등을 정량적으로 입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량적 기록이 불가능한 경우 정량적 기록을 하지 않아도 되며 모든 활동을 정량적 기록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치활동 관련 내용을 특기사항에 입력할 때에는 구체적인 임원의 종류를 알 수 있도록 전교, 학년, 학급 등을 입력하고, 재임기간을 ( )안에 병기해야 합니다. 즉 임원활동기간은 필수 입력이지만, 그 외의 학급에서의 활동 또는 행사 참여일에 대한 날짜입력에 대해서는 필수 입력은 아닙니다. 다만, 날짜의 입력을 통해 해당 행사의 행사일에 대한 현시적 특성을 높여줄 수 있음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고등학교)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공통)



### 참고 or 관련 근거

#### ○ 2020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등 69~70쪽, 중등 93~94쪽)

##### ③ 특기사항

가.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특기사항은 활동 내용(활동실적, 진보의 정도, 행동의 변화 등)을 종합하여 학생의 개별적 특성이 드러나도록 입력한다.

※ 개별적 특성이 드러나지 않는 활동실적(내용)의 단순한 나열식 입력은 지양함.

나. 특기사항에 정량적인 기록이 가능한 부분은 횟수와 시간 등을 정량적으로 입력한다.

〈예시〉 월 1회, 6회, 2020.03.02.~2020.07.08./5회, 4시간, 학급회·학생자치회 임원 활동기간 등

##### ④ 자율활동

라. 자치활동 관련 내용을 특기사항에 입력할 때에는 구체적인 임원의 종류를 알 수 있도록 '전교', '학년', '학급' 등을 입력하고, 재임기간을 ( )안에 병기한다.

〈예시〉 1학년인 경우: 1학기 전교 학생자치회 부회장(2020.03.02.~2020.08.16.)

〈예시〉 2학년인 경우: 1학기 전교 학생자치회 부회장(2020.03.01.~2020.08.16.)

교과학습  
발달상황  
(공통)

자유학기  
활동상황  
(중학교)

독서활동상황  
(중·고등학교)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공통)

정정사항  
(공통)

기타사항 등  
(공통)

  
**Q28**

위탁학생의 경우 위탁교에서 보내온 자료를 그대로 입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교에서 보내온 자료를 점검하다 보니, 자율활동 누가기록에 없는 활동이 특기사항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이 경우 누가기록에 없는 특기사항내용을 삭제해야 하나요?

  
**A28**

위탁교육기관, 병원학교·원격수업기관의 활동 내용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의 자료를 그대로 입력 하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을 준수하여 입력하셔야 합니다. 즉 기재금지 사항이 기재된 것이라면 위탁기관에 문의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위탁기관에서 보내온 자료를 그대로 입력하시기를 안내하여 드립니다.



**참고 or 관련 근거**

- 2020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등 69쪽, 중등 93쪽)
  - ㉓ 특기사항
    - 다. 창의적 체험활동 각 영역의 이수시간이 0시간인 학생에 대해서는 <예시>와 같이 그 사유를 특기사항에 입력한다.
    - <예시> 장기결석생인 경우: 장기결석으로 활동 내용이 없음. / 위탁학생의 경우: 위탁학생으로 활동 내용이 없음.
    - ※ 단, 위탁교육기관, 병원학교·원격수업기관의 활동 내용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의 자료를 그대로 입력함.
  
- 2020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등 19쪽, 중등 19쪽)
  - 8.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내 ‘기재방법’은 준수하되, ‘기재예시’는 참고자료이며 의미의 변동이 없는 범위에서 다르게 기재할 수 있음.
  
- 2020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일러두기
  - 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은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의 표준화를 통해 학교생활기록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시·도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 학교현장에서 임의로 변경하여 적용할 수 없습니다.

  
Q29

'창의적 체험활동의 미편성 영역은 미입력한다'라는 것의 의미를 예를 들어 설명해 주세요.

  
A29

'미편성'이란 학교교육과정 상 편성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동아리 활동을 교육과정상 편성하지 않았다면 동아리 활동에 지정되는 학생도 없으며, 동아리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기에 학생부에 동아리 관련 활동상황은 미입력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아리 활동이 교육과정상 편성되고 수강학생도 지정되었으나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등으로 운영하지 못했다면 학생부에는 관련 내용을 미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수시간을 '0'시간으로 하여 입력하고 특기사항도 '코로나로 인해 활동하지 못함' 등으로 입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학교교육과정 상 편성하지 않은 영역의 특기사항은 입력하지 않습니다. 다만, 진로활동 영역은 편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진로희망분야'와 각종 진로검사 및 진로상담 결과, 관심 분야 등 학생 진로 특성이 드러나는 사항을 담임교사가 입력해야 합니다.



참고 or 관련 근거

● 2020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등 69쪽, 중등 93쪽)

㉓ 특기사항

라. 학교교육과정 상 편성하지 않은 영역의 특기사항은 입력하지 않음. 단, 진로활동 영역은 편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진로희망분야와 각종 진로검사 및 진로상담 결과, 관심 분야 등 학생의 진로 특성이 드러나는 사항을 담임교사가 입력함.

※ 동일 학기에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진로활동 영역과 자유학기활동상황의 진로탐색활동이 모두 편성되지 않은 경우에도 이에 해당함.

인적·학적사항  
(공통)

출결상황  
(공통)

수상경력  
(중·고등학교)

자격증 및  
인증 취득사항  
(고등학교)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공통)

교과학습  
발달상황  
(공통)

자유학기  
활동상황  
(중학교)

독서활동상황  
(중·고등학교)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공통)

정정사항  
(공통)

기타사항 등  
(공통)

 Q30

자율동아리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해주기 위한 출석률 기준이 있나요?  
(자율동아리 활동에 한번만 참여해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해줄 수 있는 것인지 혹은 정해진 기준 이상을 참여해야 기재해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30

자율동아리 출결 기준은 자율동아리 운영계획을 세울 때 학교에서 결정하실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자율동아리 운영 계획에 출결기준을 마련해두시고, 정해진 기준 이상 출석하였을 때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or 관련 근거

○ 2020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등 71쪽, 중등 95쪽)

⑤ 동아리활동

마. 자율동아리는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학기 초에 구성할 수 있으며, 학기 중에 구성된 자율동아리활동은 입력하지 않는다.

바.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자율동아리 구성 절차는 다음과 같다.



※ 자율동아리 운영계획서는 활동계획, 동아리 구성 인원, 지도교사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음.

  
Q31

재학기간 중 봉사활동 시간을 몇 시간을 해야 하나요?

  
A31

각급 학교에서는 시도교육청의 봉사활동운영계획을 참고하여 학교 및 지역사회 실정에 맞는 봉사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합니다. 또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5조의2'에서는 봉사활동을 강요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통해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경험할 수 있도록 시도별로 권장 이수 시간을 다르게 운영하며, 지역에 따라 봉사활동관련 세부기준은 다르므로 각 시도교육청으로 문의하실 사항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참고 or 관련 근거

- **2020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89쪽, 초등 73쪽**

다. 각급 학교에서는 시도교육청의 봉사활동 운영 계획을 참고하여 학교·지역사회 실정에 맞는 봉사활동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 인정대상이 되는 봉사활동은 자원봉사활동의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 비정파성, 비종파성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의2(자원봉사활동의 강요 금지) 누구든지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원봉사활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학교·직장 등의 자원봉사활동 장려)

  - ① 학교는 학생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도·관리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 ② 직장은 직장인의 자원봉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 ③ 학교·직장 등의 장은 학생 및 직장인 등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하여 그 공헌을 인정하여 줄 수 있다.

인적·학적사항 (공통)

출결상황 (공통)

수상경력 (중·고등학교)

자격증 및 인증 취득사항 (고등학교)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공통)

교과학습 발달상황 (공통)

자유학기 활동상황 (중학교)

독서활동상황 (중·고등학교)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공통)

정정사항 (공통)

기타사항 등 (공통)

  
Q32

창의적 체험활동 중 진로활동 특기사항은 어떻게 기재하면 좋을까요? '진로활동과 관련된 사항', 진로지도와 관련된 상담 및 권고 내용'을 기록할 수 있다고 하는데, 기재 근거가 필요한 것인지, 그 예시는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A32

학교생활기록부의 서술형 항목(창의적 체험활동의 진로활동 특기사항 포함)은 교사가 상시 관찰·평가한 누가기록을 바탕으로 입력합니다.  
특히 창의적 체험활동 중 진로활동 특기사항은 진로 활동에 대한 학생의 실제적인 활동과 역할 위주로 기재하며, 교사의 상시 관찰·평가한 누가기록 자료와 더불어 학교교육계획에 의해 학교에서 주최하고 주관하여 실시한 진로활동의 내부결재 문서를 근거로 특기·진로희망과 관련된 학생의 자질, 학생이 수행한 노력과 활동 등을 기재합니다.  
다만, 학교생활기록부 서술형 항목의 구체적인 문구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내 '기재방법'을 준수하여 학교에서 판단할 사항임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 참고 or 관련 근거

###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348호)

제13조(창의적 체험활동상황)

- ② 제1항의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은 영역별 이수시간 및 특기사항(개별적 특성이 드러나는 사항 등)을 입력하고, 봉사활동은 실적을 입력한다.
- ⑤ 제2항에 따른 영역별 누가 기록은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 신뢰도, 타당도 등이 확보되도록 서식을 개발하여 활용하되, 학생의 구체적 활동 내용이 포함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여 관리한다.
- ⑥ 제2항의 '진로활동'의 특기사항에 진로희망분야와 각종 진로검사 및 진로상담 결과, 관심분야 및 진로 희망과 관련된 학생의 활동내용 등 학생의 진로 특성이 드러나는 사항을 담임교사가 입력한다.

### ○ 202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등 72~73쪽, 중등 97쪽)

가. 진로활동 영역의 '특기사항'란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참고하여 실제적인 활동과 역할 위주로 입력한다.

- 1) 특기·진로희망과 관련된 학생의 자질, 학생이 수행한 노력과 활동
- 2) 학생의 특기·진로를 돕기 위해 학교와 학생이 수행한 활동과 결과
- 3) 학생·학부모와 진로상담을 한 결과
- 4) 학생의 활동 참여도, 활동 의욕, 태도의 변화 등 진로활동과 관련된 사항
- 5) 학급담임교사, 상담교사, 교과담당교사, 진로전담교사의 상담 및 권고 내용

나. 학생의 학업진로, 직업진로에 대한 계획서, 진로와 관련된 각종 검사를 바탕으로 특기사항을 입력할 수 있다.

### ○ 202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등 97쪽, 중등 111쪽)

나. 진로활동 영역의 '특기사항'란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참고하여 실제적인 활동과 역할 위주로 입력한다.

- 1) 특기·진로희망과 관련된 학생의 자질, 학생이 수행한 노력과 활동
- 2) 학생의 특기·진로를 돕기 위해 학교와 학생이 수행한 활동과 결과
- 3) 학생·학부모와 진로상담을 한 결과
- 4) 학생의 활동 참여도, 활동 의욕, 태도의 변화 등 진로활동과 관련된 사항
- 5) 학급담임교사, 상담교사, 교과담당(전담)교사, 진로전담교사의 상담 및 권고 내용

다. 학생의 학업진로, 직업진로에 대한 계획서, 진로와 관련된 각종 검사를 바탕으로 특기사항을 입력할 수 있다.

인적·학적사항  
(공통)

출결상황  
(공통)

수상경력  
(중·고등학교)

자격증 및  
인증 취득사항  
(고등학교)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공통)

교과학습  
발달상황  
(공통)

자유학기  
활동상황  
(중학교)

독서활동상황  
(중·고등학교)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공통)

정정사항  
(공통)

기타사항 등  
(공통)



자율활동 시간에 학교폭력예방교육 관련 활동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자율활동란에 해당 교육 활동을 기재해야 하나, 진로가 해당 교육 활동과 밀접한 학생만 자율활동이 아닌 진로활동 영역에 기재해도 되나요?



학교생활기록부 영역별 내용은 해당 영역에만 입력합니다. 또한, 창의적 체험활동의 실적은 한 개 영역에 입력하고, 다른 영역에 중복하여 입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율활동으로 편성된 교육활동은 자율활동란에 입력하셔야 하며, 학생별로 다른 영역에 입력할 수 없습니다.



**참고 or 관련 근거**

- 2020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등 27쪽, 중등 27쪽)

마. 학교생활기록부 영역별 내용은 해당 영역에만 입력한다.

※ 입력 글자 수 초과를 이유로 특정 영역의 내용을 타 영역에 입력하지 않음.
- 2020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등 77쪽, 중등 101쪽)

**유의사항**

-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실적은 한 개 영역에 입력하고, 다른 영역에 중복하여 입력하지 않음.

**Q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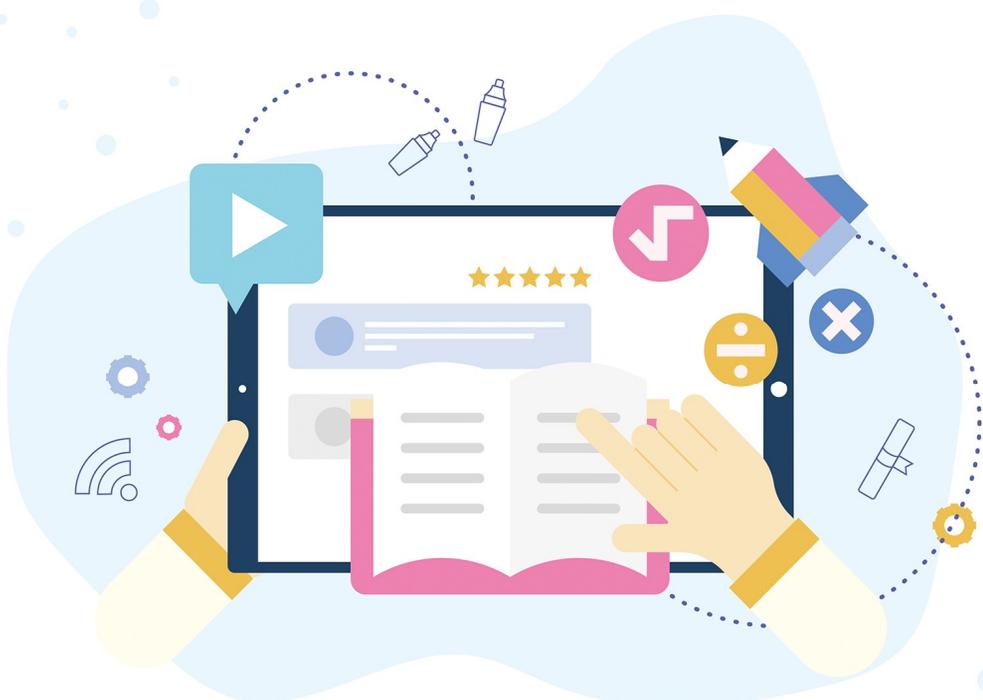
학교교육계획에 따른 교육활동으로 해외체험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이후 교내에서 해외체험활동 관련 발표회를 진행하였는데 이 경우, 해외체험활동 발표회 내용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없나요?

**A34**

어학연수, 봉사활동 등 해외 활동실적 및 관련 내용은 사교육 유발 요인이 큰 사항으로 해외체험활동 관련 후속 발표회 내용도 학교생활기록부의 어떠한 항목에도 기재할 수 없습니다.

**참고 or 관련 근거**

- 202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등 18쪽, 중등 18쪽)
- 3. 다음은 사교육 유발 요인이 큰 사항으로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을 포함하여 학교생활기록부의 어떠한 항목에도 기재할 수 없음.
  - 자. 어학연수, 봉사활동 등 해외 활동실적 및 관련 내용



인적·학적사항 (공통)

출결상황 (공통)

수상경력 (중·고등학교)

자격증 및 인증 취득사항 (고등학교)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공통)

교과학습 발달상황 (공통)

자유학기 활동상황 (중학교)

독서활동상황 (중·고등학교)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공통)

정정사항 (공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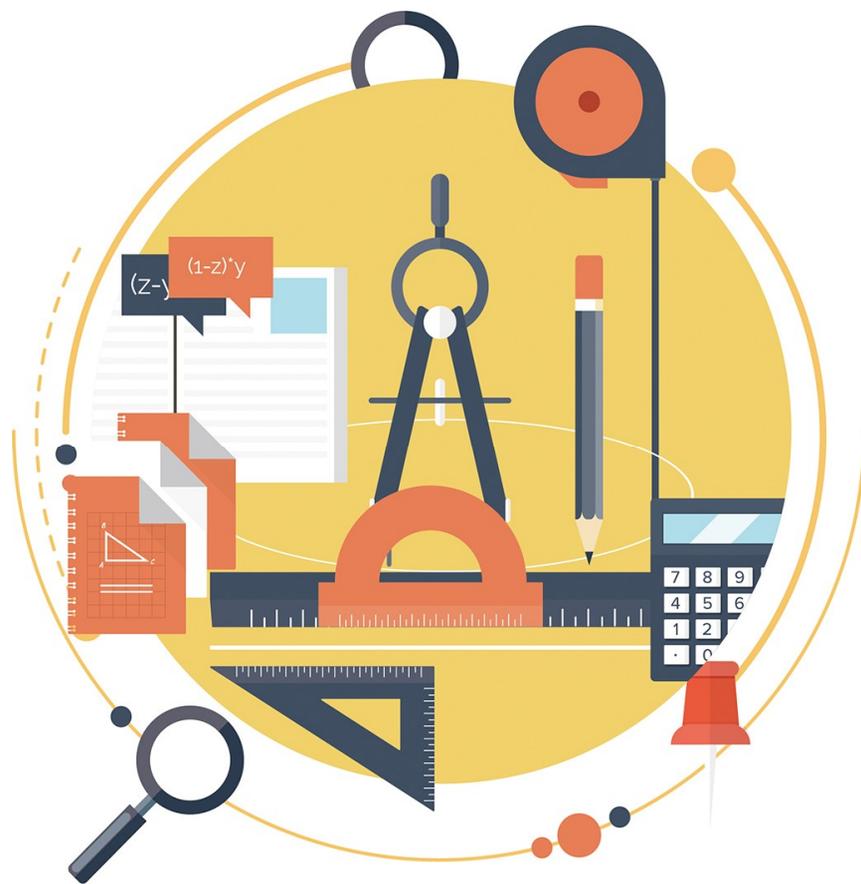
기타사항 등 (공통)

  
Q35

중3 자녀가 작년(중2) 7월 경에 실시한 봉사활동이 누락되었음을 나이스를 통해 확인하였는데, 당시 박물관 사이트를 통해 봉사활동을 신청하여 1365로 연계되도록 하였고, 출력물도 학교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하여 정정 입력이 가능할까요?

  
A35

개인계획에 의한 봉사활동의 승인 여부를 소속학교에 문의한 후 학생의 개인 봉사활동 확인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여 학생부 정정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or 관련 근거

### ○ 202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등 76쪽)

#### 08.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카. 학교의 학년도는 「초·중등교육법」 제24조에 따라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이므로 해당 기간의 실적은 해당 학년도의 '봉사활동실적'란에 입력하여야 한다.

타. 이전 학년도의 누락된 봉사활동 실적 입력을 위한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 1) 실적 연계 사이트 이용 시: 1365 자원봉사포털(나눔포털)에서 출력한 봉사활동 확인서
- 2) 실적 연계 사이트 미이용 시: 봉사활동 계획서와 봉사활동 확인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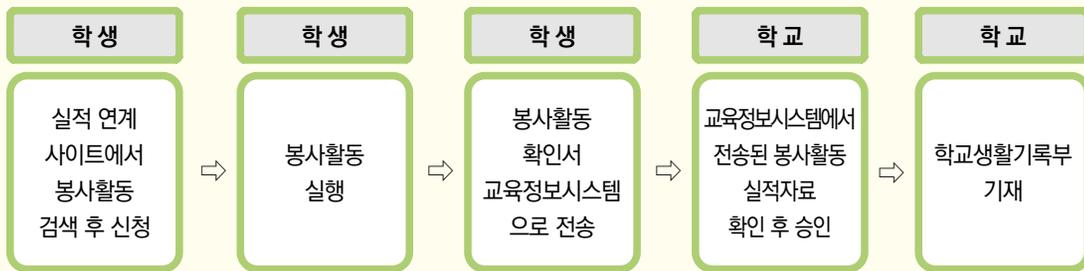
### ○ 202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등 99~100쪽)

#### 12.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 ⑦ 봉사활동 실적

차. 학생 개인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실적 입력은 실적 연계 사이트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기존 방식)와 실적 연계 사이트를 이용한 경우를 확인한 후, 다음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 2) 실적 연계 사이트를 이용하는 경우



※ 실적 연계 사이트를 활용(신청 → 실행 → 전송 → 반영을 통한 일련의 과정을 포함)하는 경우, 학생은 봉사활동 계획서 및 봉사활동 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할 필요가 없으나, 사전 담임교사와 상담을 통하여 인정 기관과 활동 내용을 확인하고 학교는 교육정보시스템에서 봉사활동 실적 전송 자료를 확인하여 학교생활기록부에 입력하는 등 개인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실적 등록 절차를 간소화 함.

※ 실적 연계 사이트에서 전송하여 반영된 봉사활동 실적은 [학생생활]-[창의적체험활동]-[봉사활동 누가기록조회]에서 {나눔포털조회}로 학급별 일괄 출력하여 확인할 수 있음.

카. 당해학년도(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 봉사활동 실적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며, 다음 학년도에서 누락된 사항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을 통해 입력한다.

※ '증빙자료'라 함은 봉사활동 계획서와 확인서 또는 1365 자원봉사포털(나눔포털)에서 출력한 봉사활동 확인서를 말함.

인적·학적사항  
(공통)

출결상황  
(공통)

수상경력  
(중·고등학교)

자격증 및  
인증 취득사항  
(고등학교)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공통)

교과학습  
발달상황  
(공통)

자유학기  
활동상황  
(중학교)

독서활동상황  
(중·고등학교)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공통)

정정사항  
(공통)

기타사항 등  
(공통)



전출 학생의 창의적 체험활동 특기사항을 입력하려다 보니 원격 수업(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으로 인하여 직접 관찰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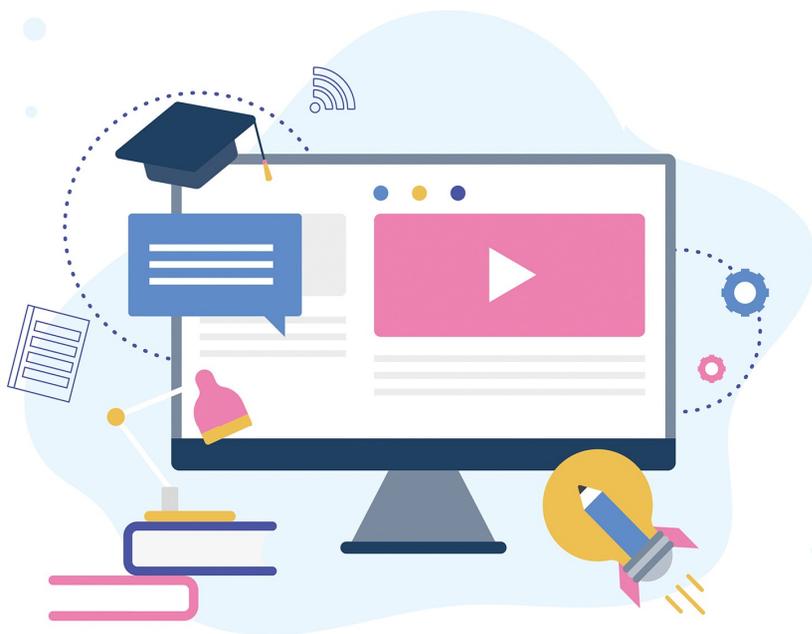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특기사항란에는 정량적 기록이 가능한 부분은 교사 관찰여부와 무관하게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 기재가 가능하므로, 직접 관찰할 수 없는 수업만 진행하였을 경우 정량적인 내용을 기재하여 공란이 없도록 전송하시기를 안내하여 드립니다.



참고 or 관련 근거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원격수업 및 등교수업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2학기 이후) 안내(교육부 교수학습 평가과-6534, 2020. 8. 31.)
  - (창의적 체험활동) 정량적 기록이 가능한 부분은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 기재(교사 관찰여부와 무관)
    - ※ 교사의 관찰·평가를 통한 정성적 기록은 원격수업과 등교수업 기간 중 교사가 직접 관찰·확인한 내용에 한하여 기재 가능



  
**Q37**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방학에 실시간 쌍방향 원격수업 방식으로 수학체험캠프를 진행하였는데,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과 창의적 체험활동의 자율활동 특기사항 중 어디에 써야 할까요?

출결상황  
(공통)

  
**A37**

학교교육계획에 의하여 방학기간 중 운영한 수학체험캠프는 교과 수업이 아닌 행사의 성격으로, 창의적 체험활동의 자율활동 영역에 입력이 가능하며 실시간 쌍방향으로 진행한 원격활동의 경우 직접 관찰·평가한 내용을 기록해 주시되, 기재예시를 참조하여 정량적으로도 기록이 가능함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또한 학교교육계획에 의거한 활동이지만 위의 사례처럼 행사 등의 성격으로 진행되지 않고 방과후 교육활동의 형식으로 운영하였다면 3학년에 한하여 교과담당 또는 담임교사가 강좌명(주요내용)과 이수시간만을 기재해야 하며 1, 2학년의 경우 기재가 불가능함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수상경력  
(중·고등학교)

자격증 및  
인증 취득사항  
(고등학교)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공통)



**참고 or 관련 근거**

● 202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등 68~69쪽, 중등 91쪽)

12.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①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나.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영역별 체험활동 특기사항은 활동 장소가 국내일 경우에 한하여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입력한다(봉사활동 제외).

- 1) 학교교육계획에 의해 학교가 주최하고 주관한 체험활동
- 2) 학교장이 승인하여 동일학교급 타학교에서 주최하고 주관한 체험활동
- 3) 학교장이 승인한 교육관련기관에서 주최하고 주관한 체험활동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원격수업 및 등교수업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2학기 이후) 안내(교육부 교수학습 평가과-6534, 2020. 8. 31.)

• (창의적 체험활동) 정량적 기록이 가능한 부분은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 기재(교사 관찰여부와 무관)

※ 교사의 관찰·평가를 통한 정성적 기록은 원격수업과 등교수업 기간 중 교사가 직접 관찰·확인한 내용에 한하여 기재 가능

● 202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등 146쪽)

**표준 가이드라인**

• 방과후학교 활동은 2020학년도 중·고등학교 3학년에 한하여 교과담당 또는 담임교사가 강좌명(주요내용)과 이수 시간만을 기재함.

교과학습  
발달상황  
(공통)

자유학기  
활동상황  
(중학교)

독서활동상황  
(중·고등학교)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공통)

정정사항  
(공통)

기타사항 등  
(공통)

  
Q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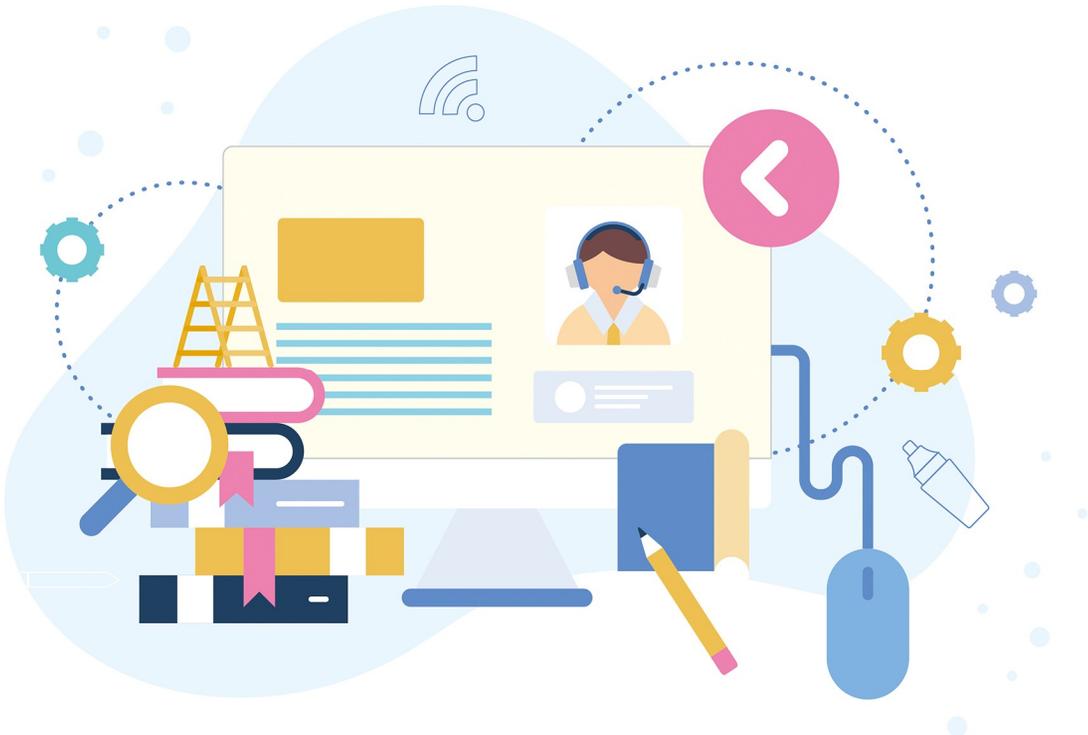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특기사항을 1학기 마감 시 반드시 입력해야 하는지 문의 (학년말에 한번만 종합적으로 기재해도 되는지 문의)

  
A38

창의적 체험활동 특기사항은 학기단위로 마감하지 않으며, 학교생활기록부는 학생의 성장과 학습 과정을 상시 관찰·평가한 누가기록 중심의 종합 기록이어야 하므로 학년말에 한 번만 종합적으로 기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참고 or 관련 근거

- 202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등 18쪽, 중등 18쪽)
  - 02.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시 유의사항
    - 1. 학교생활기록부는 학생의 성장과 학습 과정을 상시 관찰·평가한 누가기록 중심의 종합 기록이어야 함.



  
Q39

창의적 체험활동 동아리 활동으로 OST음악과 관련한 반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래나 영화 제목을 특기사항란에 입력할 수 있나요?

  
A39

영화제목이나 노래제목에 대한 사항은 입력 여부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기재가 가능함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참고 or 관련 근거

- 202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등 18쪽, 중등 18쪽)
- 02.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시 유의사항
- 3. 다음은 사교육 유발 요인이 큰 사항으로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란을 포함하여 학교생활기록부의 어떠한 항목에도 기재할 수 없음.
  - 가. 각종 공인어학시험 참여 사실과 그 성적 및 수상 실적
  - 나. 교과·비교과 관련 교외대회 참여 사실과 그 성적 및 수상 실적
  - 다. 교외 기관·단체(장)등에게 수상한 교외상(표창장, 감사장, 공로상 등도 기재 불가함)
  - 라. 교내·외 인증시험 참여 사실이나 그 성적
  - 마. 모의고사·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원점수, 석차, 석차등급, 백분위) 및 관련 교내 수상실적
  - 바. 논문을 학회지 등에 투고 또는 등재하거나 학회 등에서 발표한 사실
  - 사. 도서출간 사실
  - 아.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출원 또는 등록 사실
  - 자. 어학연수, 봉사활동 등 해외 활동실적 및 관련 내용
  - 차. 부모(친인척 포함)의 사회·경제적 지위(직종명, 직업명, 직장명, 직위명 등) 암시 내용
  - 카. 장학생·장학금 관련 내용
  - 타. 구체적인 특정 대학명, 기관명, 상호명, 강사명 등

인적·학적사항  
(공통)

출결상황  
(공통)

수상경력  
(중·고등학교)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고등학교)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공통)

교과학습  
발달상황  
(공통)

자유학기  
활동상황  
(중학교)

독서활동상황  
(중·고등학교)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공통)

정정사항  
(공통)

기타사항 등  
(공통)

  
Q40

전교 학생회 차장의 경우, 필수적으로 입력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전교부회장 활동사항이 누락된 경우 필수적으로 정정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A40

임원활동 기재 여부는 활동의 성실성 등 교육적 차원을 고려하여 학교에서 결정하실 사항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또한 정정여부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토대로 귀교의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할 사항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 참고 or 관련 근거

### ○ 202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등 70쪽)

다. 자치활동 관련 특기사항에 입력하는 임원의 활동기간은 1학년은 입학일부터 학년 말, 2~5학년은 3월 1일부터 학년 말, 6학년은 3월 1일부터 졸업일까지를 기준으로 입력한다.

※ 학기 단위로 임명하는 경우의 임원의 활동기간은 학기 시작일부터 학기 종료일까지로 입력함.

### ○ 202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등 94쪽)

12.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 ④ 자율활동

다. 자치활동 관련 특기사항에 입력하는 임원의 활동기간은 1학년은 입학일부터 학년 말, 2학년은 3월 1일부터 학년 말까지로 입력한다.

###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348호)

제19조(자료의 정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정정이 가능하며, 정정 시에는 반드시 정정내용에 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정의 사유, 정정내용 등에 대하여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친 후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별표 10의 1조)의 결재 절차에 따라 정정 사항의 발견 학년도 담임교사가 정정 처리해야 한다. 다만, 제7조의 인적·학적사항의 학생정보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 ○ 202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등 98쪽, 중등 174쪽)

19. 자료의 정정

#### 1. 제19조(자료의 정정)

가. 당해 학년도 이전의 학교생활기록부 입력 자료에 대한 정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학교생활기록부를 정정할 수 있다. 다만, 인적·학적사항의 '학생정보'(2020학년도 1·2학년)와 인적사항(2020학년도 3학년)의 정정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 없이 증빙자료만으로 학교생활기록부를 정정할 수 있다.

1) 객관적 증빙자료란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료를 말한다.

가) 해당 증빙 자료가 해당 학년도에 작성되었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

나) 해당 증빙 자료가 훈령과 지침(기재요령)에 명시된 항목별 입력 주체가 작성한 것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

인적·학적사항  
(공통)

출결상황  
(공통)

수상경력  
(중·고등학교)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고등학교)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공통)

교과학습  
발달상황  
(공통)

자유학기  
활동상황  
(중학교)

독서활동상황  
(중·고등학교)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공통)

정정사항  
(공통)

기타사항 등  
(공통)



진로활동 특기사항을 입력할 때 학생이 활동한 인터넷 사이트명이나 직업 흥미검사 명칭을 입력해도 될까요?(예: 커리어넷, 홀랜드 검사 등)



인터넷 사이트 명이나 직업 흥미검사 명칭이 상호명에 해당할 경우 입력 불가능함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참고 or 관련 근거

- 202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등 18쪽, 중등 18쪽)
  - 02.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시 유의사항
  - 3. 다음은 사교육 유발 요인이 큰 사항으로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란을 포함하여 학교생활기록부의 어떠한 항목에도 기재할 수 없음.
    - 타. 구체적인 특정 대학명, 기관명, 상호명, 강사명 등



인적·학적사항  
(공통)

**Q42**

학교교육계획서 창의적 체험활동(자율 또는 진로)으로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임(1,2학년 재학생 중 신청자에 한하여 주1회 2시간 정도)

- 1) 학교교육계획서로 승인된 내용이면 정규교육활동 시간 외(8~9교시)에 진행된 프로그램을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에 기재 가능한가요?
- 2) 기재 가능하다면 프로그램명과 이수시간만 기재 가능한가요? 아니면 특기사항 기재도 가능한가요?

출결상황  
(공통)

수상경력  
(중·고등학교)

**A42**

학교특색사업 등 학교교육계획에 의해 학교에서 주최하고 주관하여 실시한 프로그램의 경우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별 특기사항에 입력할 수 있으며, 정규교육과정 시수가 아닌 경우에는 이수시간을 입력하지 않음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고등학교)



**참고 or 관련 근거**

● 202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등 68~69쪽, 중등 91~ 92쪽)

나.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영역별 체험활동 특기사항은 활동 장소가 국내일 경우에 한하여 다음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 입력한다(봉사활동 제외).

- 1) 학교교육계획에 의해 학교가 주최하고 주관한 체험활동
- 2) 학교장이 승인하여 동일학교급 타학교에서 주최하고 주관한 체험활동
- 3) 학교장이 승인한 교육관련기관에서 주최하고 주관한 체험활동

※ 복수의 기관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주관하는 체험활동은 모든 기관이 위 1), 2), 3) 조건을 갖추었을 때만 기재 가능함.

※ 교육관련기관은 교육부 및 소속기관, 시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소속기관에 한함.

\* 교육부 소속기관: 대한민국학술원, 국사편찬위원회, 국립국제교육원, 국립특수교육원, 교원소속심사위원회, 중앙교육연수원(총 6개 기관)

\* 시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소속기관 현황은 [참고자료5]를 참조함.

라.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영역별 시수 인정과 특기사항에 입력할 수 있는 내용은 표와 같다.

영역	시수	특기사항에 입력할 수 있는 내용
자율활동	정규교육과정 시수 (행사활동은 별도 행사시수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교육계획(정규교육과정 포함)에 의해 학교에서 주최하고 주관하여 실시한 활동</li> <li>• 학교장이 승인하여 동일학교급 타학교에서 주최하고 주관한 국내 체험활동</li> <li>• 학교장이 승인한 교육관련기관에서 주최하고 주관하여 실시한 국내 체험활동</li> </ul> ※ 정규교육과정에 의해 해외에서 실시한 자율활동은 시수만 인정하며, 그 이외의 해외 창의적 체험활동은 시수와 특기사항을 모두 입력하지 않음.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공통)

교과학습  
발달상황  
(공통)

자유학기  
활동상황  
(중학교)

독서활동상황  
(중·고등학교)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공통)

정정사항  
(공통)

기타사항 등  
(공통)

  
Q43

사이버 진로교육센터에서 발행한 인증서를 바탕으로 관련 내용을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누가기록이나 진로활동의 특기사항에 입력할 수 있나요?

  
A43

교외에서 받아온 이수증의 내용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수증의 내용을 참고로 학생, 학부모와 진로상담을 한 결과나 이수증과 관련하여 학생이 수행한 노력 등은 진로활동 특기사항에 일부 입력할 수 있습니다.



참고 or 관련 근거

● 202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등 18쪽, 중등 18쪽)

02.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시 유의사항

2. 학교생활기록부에는 학교교육계획이나 학교교육과정에 의거하여 학교에서 실시한 각종 교육활동의 이수상황(활동내용에 따른 개별적 특성이 드러나는 사항 중심)을 기재하는 것이 원칙임.

- 학교교육계획 이외의 체험활동은 교육관련기관(교육부 및 소속기관, 시·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소속기관)에서 주최하고 주관한 행사, 학교스포츠클럽활동, 봉사활동 등만 학교장이 승인한 경우에 한해 기재 가능함.

● 202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등 72~73쪽, 중등 111쪽)

⑥ 진로활동

가. 진로활동 영역의 '특기사항' 란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참고하여 실제적인 활동과 역할 위주로 입력한다.

- 1) 특기·진로희망과 관련된 학생의 자질, 학생이 수행한 노력과 활동
- 2) 학생의 특기·진로를 돕기 위해 학교와 학생이 수행한 활동과 결과
- 3) 학생·학부모와 진로상담을 한 결과
- 4) 학생의 활동 참여도, 활동 의욕, 태도의 변화 등 진로활동과 관련된 사항
- 5) 학급담임교사, 상담교사, 교과담당(전담)교사, 진로전담교사의 상담 및 권고 내용

나. 학생의 학업진로, 직업진로에 대한 계획서, 진로와 관련된 각종 검사를 바탕으로 특기사항을 입력할 수 있다.



인적·학적사항  
(공통)

### Q44

자율활동으로 6, 7교시에 각기 다른 교육으로 자율활동이 1시간씩 2개 잡혀있었습니다. 학생이 조퇴로 앞에 6교시 1시간만 참여하고 7교시 1시간은 참여 못해 누가기록에는 6교시 누가기록만 해두었습니다. 그런데 누가기록을 보면 그 날짜가 빨간색으로 뜹니다. 이 경우에는 자료검증때 사유란에 '6교시는 참여하였으나 7교시는 조퇴로 인해 참여하지 않음' 이런 방식으로 입력만 하면 되나요?

출결상황  
(공통)

### A44

조퇴로 인하여 참여하지 못한 자율활동 영역의 이수시간은 제외해야 하며, 교육정보시스템으로 누가기록 시 발생하는 오류 사항은 나이스 지원센터에 문의하시길 안내드립니다.

수상경력  
(중·고등학교)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고등학교)



#### 참고 or 관련 근거

#### 202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등 93쪽)

##### 12.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 ② 시간

가. 창의적 체험활동의 영역별 이수시간은 정규교육과정 내에서 실시한 학년·학급단위의 활동시간을 기준으로, 본인이 실제로 참여하여 이수한 시간을 입력한다.

※ 정규교육과정 내에서 실시한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영역별 활동 내용은 누가 기록하여 관리함.

※ 어떠한 사유(경조사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출석인정·질병·미인정·기타결석, 조퇴 등을 구분하지 않음)로든 참여하지 않은 시간은 제외함. 단, 현장체험학습(수련활동 등) 기간 동안 미참여 학생을 대상으로 별도의 창의적 체험활동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 경우 해당 활동의 누가기록, 이수시간 및 특기사항을 입력할 수 있음.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공통)

교과학습  
발달상황  
(공통)

자유학기  
활동상황  
(중학교)

독서활동상황  
(중·고등학교)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공통)

정정사항  
(공통)

기타사항 등  
(공통)

  
Q45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청소를 하고 봉사활동 실적확인서를 가져온 경우 봉사활동 실적에 입력이 가능한가요?

  
A45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아파트 주민을 위한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단체)이기에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이 불가함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봉사활동에 관한 상세 사항은 소속 시도교육청 소관부서에 문의하시길 안내하여 드립니다.





## 참고 or 관련 근거

### ○ 202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등 89쪽)

#### 12.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 1. 제13조(창의적 체험활동상황)

다. 각급 학교에서는 시도교육청의 봉사활동 운영 계획을 참고하여 학교·지역사회 실정에 맞는 봉사활동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 인정대상이 되는 봉사활동은 자원봉사활동의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 비정파성, 비종파성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 202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등 74~75, 중등 113~114쪽)

아. 실적 연계 사이트를 통한 봉사활동 실적 반영 시 다음 내용을 반드시 제외한 후 반영한다.

- 1) 시도교육청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에 적용되지 않는 봉사활동 실적
- 2) 봉사활동실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사례와 영리기관에서 실시한 봉사활동 실적
- 3) 1일 8시간(수업시간과 봉사활동 시간 합산) 초과 시간
- 4) 허위 봉사활동 실적

※ 실적 연계 사이트는 1365 자원봉사포털(나눔포털), VMS, DOVOL을 통칭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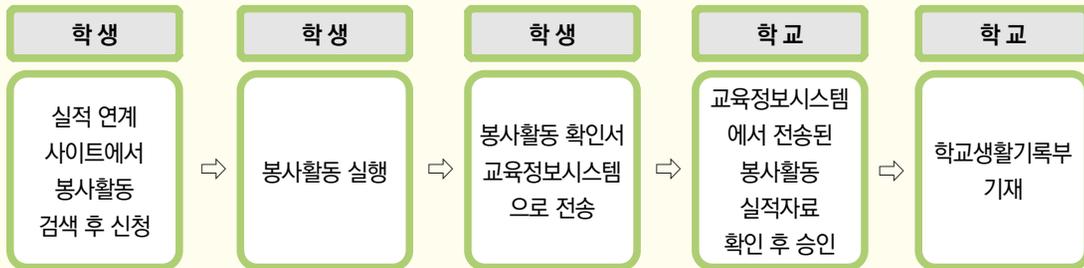
차. 학생 개인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실적 입력은 실적 연계 사이트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기존 방식)와 실적 연계 사이트를 이용한 경우를 확인한 후 다음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 1) 실적 연계 사이트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 사전 봉사활동 계획서를 학교장이 승인(허가)한 경우에만 봉사활동 실적으로 입력할 수 있음.

#### 2) 실적 연계 사이트를 이용하는 경우



※ 실적 연계 사이트를 활용(신청 → 실행 → 전송 → 반영을 통한 일련의 과정을 포함)하는 경우, 학생은 봉사활동 계획서 및 봉사활동 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할 필요가 없으나, 사전 담임교사와 상담을 통하여 인정 기관과 활동 내용을 확인하고 학교는 교육정보시스템에서 봉사활동 실적 전송 자료를 확인하여 학교생활기록부에 입력하는 등 개인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실적 등록 절차를 간소화 함.

※ 실적 연계 사이트에서 전송하여 반영된 봉사활동실적은 [학생생활]-[창의적체험활동]-[봉사활동 누가기록조회]에서 {나눔포털조회}로 학급별 일괄 출력하여 확인할 수 있음.

인적·학적사항  
(공통)

출결상황  
(공통)

수상경력  
(중·고등학교)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고등학교)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공통)

교과학습  
발달상황  
(공통)

자유학기  
활동상황  
(중학교)

독서활동상황  
(중·고등학교)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공통)

정정사항  
(공통)

기타사항 등  
(공통)

  
**Q46**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기관으로 위탁된 학생의 창의적 체험활동 특기사항은 어떻게 입력하나요?  
나이스 처리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A46**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기관에서 실시한 창의적 체험활동 누가기록 및 특기사항은 [학적]-[위탁·현장실습학생관리]-[위탁학생창의적 체험활동관리]에서 입력합니다.  
아울러, 위탁학생 교과·비교과 시스템 입력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소속 시도교육청 나이스 지원센터로 문의하시기를 안내하여 드립니다.



**참고 or 관련 근거**

● 202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등 137쪽, 중등 215쪽)

위탁학생, 병원학교·원격수업 등 학교 이외의 장소에서의 수강학생 처리

<b>학적사항</b>	• 재학생과 동일하게 관리함.
<b>출결상황</b>	• 소속교의 출결과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출결을 합산하여 처리함. • 평가기간 등 소속학교의 등교일은 소속교에서 출결처리 함.
<b>성적(지필평가/수행평가)</b>	• 소속교 평가에 응시함(소속교 성적산출에 포함). • 소속교 평가 미응시의 경우 질병결석으로 처리함.
<b>각종 비교과 영역</b>	• 병원학교, 원격수업기관의 자료를 그대로 인정함.
<b>교육정보시스템</b>	• 위탁학생으로 등록하여 처리함.

Q47

202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책자를 보면서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학교스포츠클럽 입력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1, 2, 3학년 모두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학교스포츠클럽을 했을 때 '클럽명(활동시간)' 입력하는 것은 동일하며, 1~2학년은 실제 활동한 시간과 상관없이 특기사항은 입력하지 않고 3학년은 17시간 이상 활동한 경우에만 특기사항란에 입력을 한다고 이해했는데 맞는 걸까요?

A47

3학년의 경우 학교스포츠클럽명 단위로 17시간 이상 활동한 학생에 특기사항을 입력합니다. 1~2학년의 경우 '창체 동아리 특기사항'이 아니라 나이스 [체육시스템]탭에서 누가기록하며, 3학년의 경우 [체육]탭에서 누가기록함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아울러 해당 내용은 [학생생활]-[학교스포츠클럽관리]-[학교스포츠클럽학생부자료기록]에서 {스포츠클럽정보가져오기}를 통하여 학교생활기록부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동아리활동'란에 입력함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참고 or 관련 근거

● 202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등 96, 110쪽)

12.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⑤ 동아리활동

(1~2학년)

- 가.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학교스포츠클럽에 가입하여 활동한 내용과 실제 활동한 시간은 교육정보시스템 [체육시스템]의 [학교스포츠클럽관리]에 누가기록하고, '동아리활동'란에 클럽명과 활동시간만 입력한다.
- 다.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학교스포츠클럽활동' 시간은 [학생생활]-[학교스포츠클럽관리]-[학교스포츠클럽학생부자료기록]에서 {스포츠클럽정보가져오기}를 통해 동아리활동 영역에 이수시간이 자동으로 합산되어 입력된다.

(3학년)

- 가.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학교스포츠클럽에 가입하여 활동한 내용과 실제 활동한 시간은 교육정보시스템의 [체육]-[학교스포츠클럽관리]에 누가기록하고, 누가기록에 대한 특기사항(클럽명, 활동시간, 팀에서의 역할, 포지션, 대회출전 경력 등)은 '동아리활동'란에 입력한다.
- 타.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학교스포츠클럽활동 이수시간은 학생이 실제 활동한 시간을 입력하고, 학교스포츠클럽명 단위로 17시간 이상 활동한 학생은 특기사항을 입력하되, 17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클럽명(활동시간)'만 입력한다.
- 파.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학교스포츠클럽활동' 시간은 [학생생활]-[학교스포츠클럽관리]-[학교스포츠클럽학생부자료기록]에서 {스포츠클럽정보가져오기}를 통해 동아리활동 영역에 이수시간이 자동으로 합산되어 입력된다.

인적·학적사항  
(공통)

출결상황  
(공통)

수상경력  
(중·고등학교)

자격증 및  
인증 취득사항  
(고등학교)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공통)

교과학습  
발달상황  
(공통)

자유학기  
활동상황  
(중학교)

독서활동상황  
(중·고등학교)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공통)

정정사항  
(공통)

기타사항 등  
(공통)

  
Q48

학년 초 정규 창의적 체험활동 동아리활동 계획에 의해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주제 선정하여 탐구 및 보고서를 작성하는 활동을 하였을 경우 ‘~에 관한 자율탐구활동을 수행한 후 탐구 보고서를 작성 하였음’과 같이 기재 문구에 ‘보고서’ 또는 ‘탐구 보고서’라는 용어를 사용해도 되나요?

  
A48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 가능한 ‘자율탐구활동’의 기준은 정규교육과정 이수과정에서 사교육 개입 없이 학교 내에서 학생주도로 수행한 자율탐구활동이고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주제 선정부터 보고서 작성까지 전 과정을 수행한 경우의 활동을 말합니다. 이 모든 조건을 만족할 경우 창의적 체험활동의 관련 영역 특기사항에 기재 가능합니다. 이때, 탐구활동과 발표 및 보고서 작성이라는 객관적 사실만 기재하기보다는 활동 전반에서 관찰하고 평가한 학생의 활동 태도 및 노력, 성장과정을 담아낼 수 있도록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보고서’라는 용어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참고 or 관련 근거

- 202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등 90쪽)
  - 학생의 영역별 활동에 대해 교사가 상시 관찰 및 평가한 누가기록을 바탕으로 구체적 활동 사실과 학생의 활동 태도 및 노력에 의한 행동 변화와 성장 등을 기재함
    - \* 자율탐구활동: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주제 선정부터 보고서 작성까지 전 과정을 수행하는 일련의 활동임.
    - ※ 정규교육과정 이수과정에서 사교육 개입 없이 학교 내에서 학생주도로 수행한 자율탐구활동에 한하여 기재할 수 있음.
  - 창의적 체험활동 중에 자율탐구활동을 기재할 경우 학교에서는 정규교육과정 중에 이루어진 활동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증빙자료는 학교교육계획서를 포함한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각종 문서 또는 학생활동 산출물 등을 말함)

  
**Q49**

자율탐구활동 관련 내용은 창의적 체험활동의 자율활동 특기사항에 기재하나요?

  
**A49**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자율탐구활동은 학교 실정에 따른 운영 목적 등에 따라 자율활동/동아리활동 /진로활동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학교교육계획서 또는 자율탐구활동 관련 내부결재 문서를 근거로 창의적 체험활동 해당 영역의 특기 사항에 자율탐구활동 관련 내용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참고 or 관련 근거**

● 202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등 90쪽)

창의적 체험활동상황(1·2학년)

**표준 가이드라인**

-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에 자율탐구활동\* 중 소논문 실적(연구 주제 및 참여인원, 소요 시간)은 기재할 수 없음.  
\* 자율탐구활동: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주제 선정부터 보고서 작성까지 전 과정을 수행하는 일련의 활동임.  
※ 정규교육과정 이수과정에서 사교육 개입 없이 학교 내에서 학생주도로 수행한 자율탐구활동에 한하여 기재할 수 있음.
- 창의적 체험활동 중에 자율탐구활동을 기재할 경우 학교에서는 정규교육과정 중에 이루어진 활동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증빙자료는 학교교육계획서를 포함한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각종 문서 또는 학생활동 산출물 등을 말함)

● 202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등 104쪽)

창의적 체험활동상황(3학년)

**표준 가이드라인**

- 자율탐구활동 중 소논문 실적은 정규교육과정 이수 과정에서 사교육 개입 없이 학교 내에서 학생 주도로 수행된 연구 주제 및 참여인원, 소요 시간만을 기재함.
- 창의적 체험활동 중에 자율탐구활동을 기재할 경우 학교에서는 정규교육과정 중에 이루어진 활동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증빙자료는 학교교육계획서를 포함한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각종 문서 또는 학생활동 산출물 등을 말함)

인적·학적사항  
(공통)

출결상황  
(공통)

수상경력  
(중·고등학교)

자격증 및  
인증 취득사항  
(고등학교)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공통)

교과학습  
발달상황  
(공통)

자유학기  
활동상황  
(중학교)

독서활동상황  
(중·고등학교)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공통)

정정사항  
(공통)

기타사항 등  
(공통)

  
Q50

진로활동 특기사항에 학생과 상담하면서 진로를 구체화하게 된 계기를 기입하려는 상황입니다. 학생은 동아리에서 하면서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활동들을 하면서 꿈이 구체화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는 동아리 활동에 쓸 항목을 타 항목에 입력한 것이 아니라, 진로에 대한 상담 내용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진로활동 특기사항에 기입한다고 해서, 해당 내용을 타 영역에 입력한 것은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궁금한 점은 자율동아리는 2020학년도 1, 2학년은 동아리 활동을 적지 않고 동아리 명과 소개만 적고 있습니다. 만약 학생이 실시한 활동이 자율동아리 활동이었을 시 이러한 내용이 진로활동 특기사항에 기입될 수 있나요?

  
A50

자율동아리와 정규교육과정 내 동아리활동의 구체적인 활동 내용은 진로활동 특기사항에 기재할 수 없음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다만, 학급담임교사, 상담교사, 교과담당교사, 진로전담교사의 상담 및 권고내용은 기재 가능한 사항이므로 정규교육과정 내 동아리활동을 통해 꿈이 구체화된 과정을 상담을 통해 확인한 경우 구체적인 활동 내용이 아닌 진로탐색과정 등은 기재 가능함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참고 or 관련 근거

- 202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등 27쪽)

마. 학교생활기록부 영역별 내용은 해당 영역에만 입력한다.

※ 입력 글자 수 초과를 이유로 특정 영역의 내용을 타 영역에 입력하지 않음.
- 202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등 101쪽)

\*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실적은 한 개 영역에 입력하고, 다른 영역에 중복하여 입력하지 않음.
- 202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등 97쪽)

나. 진로활동 영역의 '특기사항'란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참고하여 실재적인 활동과 역할 위주로 입력한다.

  - 1) 특기·진로희망과 관련된 학생의 자질, 학생이 수행한 노력과 활동
  - 2) 학생의 특기·진로를 돕기 위해 학교와 학생이 수행한 활동과 절차
  - 3) 학생·학부모와 진로상담을 한 결과
  - 4) 학생의 활동 참여도, 활동 의욕, 태도의 변화 등 진로활동과 관련된 사항
  - 5) 학급담임교사, 상담교사, 교과담당교사, 진로전담교사의 상담 및 권고 내용

Q51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인 자율활동과 동아리활동의 특기사항은 통합하여 종합적으로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동아리활동부서별 입력 부분에서 특기사항을 입력하면 학생부에 동아리명과 함께 별도로 동아리활동 특기사항이 입력됩니다. 학생부에 통합하여 하나로 입력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A51

초등학교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2개 영역의 특기사항은 통합하여 종합적으로 입력합니다. 또한, 영역별로 학급담임교사와 창의적 체험활동 담당교사가 분담하여 평가하고, 평소의 활동상황을 누가 기록한 자료를 토대로 활동실적, 진보의 정도, 행동의 변화, 특기사항 등을 종합하여 '특기사항'란에 문장으로 입력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동아리활동 영역의 특기사항은 지도교사가 교육 정보시스템의 [학생생활]-[창의적체험활동]-[동아리활동부서별 기록]의 동아리활동 학교생활기록부 반영기록에서 입력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창의적 체험활동은 학급담임교사가 자율활동과 동아리활동의 특기사항을 통합하여 종합적으로 입력합니다.

아울러, 학생부 통합 입력방법 등 나이스 시스템 상 처리 방법은 나이스 지원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or 관련 근거

○ 202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등 67쪽)

나. 자율활동·동아리활동·안전한 생활의 특기사항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활동내용이 우수한 사항(참여도, 활동의욕, 진보의 정도, 태도 변화 등)을 중심으로 개별적인 특성이 드러나도록 구체적인 문장으로 통합하여 입력한다. 다만, 진로활동 영역은 별도로 구분하여 입력한다.

인적·학적사항 (공통)

출결상황 (공통)

수상경력 (중·고등학교)

자격증 및 인증 취득사항 (고등학교)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공통)

교과학습 발달상황 (공통)

자유학기 활동상황 (중학교)

독서활동상황 (중·고등학교)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공통)

정정사항 (공통)

기타사항 등 (공통)



안전한 생활의 내용을 창의적 체험활동 서술형에 입력하는 것은 기재요령에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누가기록은 하는 것이 필수인지요? 필수라면 자율활동 누가기록에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 348호)에 따르면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영역별 활동 내용은 누가하여 기록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누가기록 방법은 시도교육청 지침에 따르되, 훈령 제13조(창의적 체험활동상황) 2항에서 5항에 의하여 교육정보시스템을 활용하는 경우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누가기록만 해당합니다. 또한 자율동아리 입력 주체는 학급담임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안전한 생활(1~2학년)은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근거로 특기사항을 입력하되, 누가기록은 입력하지 않음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참고 or 관련 근거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348호)

제13조(창의적 체험활동상황)

- ② 제1항의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은 영역별 이수시간 및 특기사항(개별적 특성이 드러나는 사항 등)을 입력하고, 봉사활동은 실적을 입력한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는 창의적 체험활동의 이수시간을 입력하지 않으며, '자율활동', '동아리 활동' 2개영역의 특기사항은 통합하여 종합적으로 입력하되, '진로활동' 영역은 별도로 구분하여 기록한다. 또한, 안전한 생활(1~2학년)은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근거로 특기사항을 입력한다.
- ④ 제2항의 봉사활동 영역의 실적은 학교계획에 의한 봉사활동과 학생 개인계획에 따른 봉사활동의 구체적인 내용을 별도의 '봉사활동실적'란에 연간 실시한 봉사활동의 일자 또는 기간,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 활동 내용, 시간을 실시일자 순으로 모두 입력한다.
- ⑤ 제2항에 따른 영역별 누가 기록은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 신뢰도, 타당도 등이 확보되도록 서식을 개발하여 활용하되, 학생의 구체적 활동 내용이 포함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여 관리한다.

  
**Q53**

2015, 2016학년도 1~2학년은 동아리 부서를 조직하지 않고 학급에서 창의적 체험활동의 일환으로 동아리 시수를 편성, 운영하여 시수나 동아리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데 해당 사항을 전부 정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53**

먼저 해당학년도의 기재요령을 살펴보겠습니다.

- 2015학년도: 입력할 때 동아리활동명을 ( )안에 입력하도록 한다.  
※ 학교교육과정편성·운영에 따라 학교·학년 단위로 복수 동아리활동 부서를 운영할 수 있음.
- 2016학년도: 동아리활동은 운영하나 부서 형태로 운영하지 않는 경우 동아리활동 부서명은 입력하지 않을 수 있음.

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16년도에는 부서별로 운영하지 않을 경우 동아리활동 부서명을 기록하지 않아도 되지만 2015년도에는 기록해야 하므로 해당학년도 동아리운영계획 내부결재 등 객관적인 정정근거자료를 바탕으로 정정해야 합니다.

 **참고 or 관련 근거**

- **2015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등 46쪽)**  
동아리활동 영역은 자기 평가, 학생상호 평가, 교사 관찰, 포트폴리오 등의 방법으로 평가하여 참여도, 협력도, 열성도, 특별한 활동실적 등을 구체적으로 입력한다. 입력할 때 동아리활동명을 ( )안에 입력하도록 한다.
- **2016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등 44쪽)**  
※ 동아리활동은 운영하나 부서 형태로 운영하지 않는 경우 동아리활동 부서명은 입력하지 않을 수 있음.

인적·학적사항  
(공통)

출결상황  
(공통)

수상경력  
(중·고등학교)

자격증 및  
인증 취득사항  
(고등학교)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공통)

교과학습  
발달상황  
(공통)

자유학기  
활동상황  
(중학교)

독서활동상황  
(중·고등학교)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공통)

정정사항  
(공통)

기타사항 등  
(공통)

  
**Q54**

**〈사례1〉**

초등학교 1학년의 입학초기 적응활동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나요?

**〈사례2〉**

올해(2020학년도)부터 초등학교 1학년의 ‘입학초기 적응활동’을 창의적 체험활동의 자율활동에 입력하지 않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입학초기 적응활동’을 입력하지 않는 것이 맞다면 자율 활동 영역에 어떤 내용을 입력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54**

2020학년도 기재요령 주요 개정사항 안내에 따르면 2020학년도부터는 “입학초기 적응활동” 관련 내용은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입학초기 적응활동과 관련된 활동 내용의 기재 여부는 담임교사가 판단하며, 입력 시 학생 개별적 특성이 드러나도록 입력하면 됩니다.

또한, 자율활동 특기사항에는 활동결과에 대한 평가보다는 활동과정에서 드러나는 개별적인 행동 특성, 참여도, 협력도, 활동실적 등을 평가하고 상담기록 등의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실제적인 역할과 활동 위주로 입력합니다.



**참고 or 관련 근거**

● 202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등 161쪽)

	2017학년도	2018학년도	2019학년도	2020학년도
<b>자율활동 (입학초기 적응활동)</b>	• 기재요령 ☞ 적응활동 중 1학년 3월 초에 실시하는 입학초기 적응활동을 하였을 경우, 입학초기 적응활동(○○시간)으로 입력한다.	전년도와 동일	• 문구(항목) 수정(기재요령) ☞ 적응활동 중 1학년 3월 초에 실시하는 입학초기 적응활동을 하였을 경우, 입학초기 적응활동으로 입력한다.	• 문구(항목) 삭제(기재요령) ☞ 해당 내용 삭제

● 202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등 70쪽)

가. 자율활동의 특기사항은 활동결과에 대한 평가보다는 활동과정에서 드러나는 개별적인 행동특성, 참여도, 협력도, 활동실적 등을 평가하고 상담기록 등의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실제적인 역할과 활동 위주로 입력한다.

  
**Q55**

1학년 교육과정 중 동아리 활동을 창의적 체험활동 내에서는 편제 운영하지 않고 있고 자유학기내에 진로활동탐색, 주제선택, 예술활동, 동아리활동에 동아리 활동을 편제하여 운영합니다. 창의적 체험 활동 내의 동아리활동에 특기사항을 입력해야 하는지요?

  
**A55**

창의적 체험활동 중 동아리 활동을 학교교육과정상 편성하지 않은 경우 동아리활동의 특기사항을 입력하지 않습니다.

 **참고 or 관련 근거**

● 202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등 93쪽)

12.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③ 특기사항

라. 학교교육과정 상 편성하지 않은 영역의 특기사항은 입력하지 않음. 단, 진로활동 영역은 편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진로희망분야와 각종 진로검사 및 진로상담 결과, 관심 분야 등 학생의 진로 특성이 드러나는 사항을 담임교사가 입력함.

인적·학적사항  
(공통)

출결상황  
(공통)

수상경력  
(중·고등학교)

자격증 및  
인증 취득사항  
(고등학교)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공통)

교과학습  
발달상황  
(공통)

자유학기  
활동상황  
(중학교)

독서활동상황  
(중·고등학교)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공통)

정정사항  
(공통)

기타사항 등  
(공통)

  
Q56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자율동아리활동은 창의적 체험활동에 입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아리활동이 자유학기에만 편성되어 있는 경우에도 자율동아리를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에 입력 하나요? 나이스 입력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56

자유학기의 동아리활동은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자유학기활동으로 편성한 동아리활동에 한하여 입력해야 하며,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자율동아리활동을 포함하여 자유학기활동 이외에 운영하는 동아리활동은 [창의적체험활동상황-동아리활동] 영역에 입력해야 함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자율 동아리 활동 부서만들기 및 부서배정 등 나이스 관련 사항은 나이스 지원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or 관련 근거

● 202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등 95쪽)

- 12.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 ⑤ 동아리활동

기재 방법

- 동아리활동의 유형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교육정보시스템의 [학생생활]-[창의적체험활동]-[동아리활동부서만들기]의 '동아리활동 부서만 등록' 항목에서 '동아리부서구분'을 설정함.

마. 자율동아리는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학기 초에 구성할 수 있으며, 학기 중에 구성된 자율동아리활동은 입력하지 않는다.

바.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자율동아리 구성 절차는 다음과 같다.



  
Q57

학교생활기록부에 본교 명칭이 포함된 교내 축제명을 기재해도 될까요?

  
A57

고등학교의 경우,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고교정보 블라인드 정책으로 학교명 및 교내 축제명을 학교생활기록부 어떠한 항목에도 기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경우에는 별도의 규제 사항이 없으므로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명과 학교명이 포함된 축제명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참고 or 관련 근거

● 202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등 19쪽)

02.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시 유의사항

- 4.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에는 학생이 재학(또는 졸업 예정)한 고등학교를 알 수 있는 내용을 '학적사항', 수상경력의 '수여기관', 봉사활동 실적의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을 제외한 어떠한 항목에도 기재할 수 없음. ('20학년도부터 전 학년 대상 적용)

● 고교 정보 블라인드 처리를 위한 학생부 정정 협조 요청[교육부 교수학습평가과-4875(2020. 7. 1.)]

-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19.11.28.)에 따라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내 고교 정보(학교명(타 학교명 포함), 재단명, 학교명의 일부를 활용한 별칭, 교내 축제명) 입력 불가

● 고교 정보 블라인드 처리를 위한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세부사항 안내[교육부 교수학습평가과-5131(2020. 7. 13.)]

- 기재 내용으로 학교를 추측할 수 있는 내용 일체 정정 처리  
※ 학교명(타 학교명 포함), 재단명, 학교 별칭(학교명·상징물·건물명 등을 활용하여 대내외에 알려진 학교의 별칭 일체), 교내 축제명

인적·학적사항  
(공통)

출결상황  
(공통)

수상경력  
(중·고등학교)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고등학교)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공통)

교과학습  
발달상황  
(공통)

자유학기  
활동상황  
(중학교)

독서활동상황  
(중·고등학교)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공통)

정정사항  
(공통)

기타사항 등  
(공통)

  
Q58

4교시 수업 이후 조퇴한 학생이 당일 헌혈(4시간)을 했다고 기재된 것과 휴업일인 토요일에 이웃 돕기활동에 대한 봉사활동(5시간)후, 헌혈(4시간) 실적이 기재되었을 때, 모두 일일 최대 봉사 인정 시간인 8시간을 초과하였으므로 정정해야 하나요?

  
A58

헌혈의 경우는 1일 최대 봉사활동 인정 시간인 8시간에 제한받지 않으므로 정정하지 않습니다.



참고 or 관련 근거

● 202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등 98쪽)

마. 봉사활동 시간 인정은 1일 8시간 이내로 인정한다.

※ 1일 8시간 이내로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평일 수업시간이 7교시인 경우 1시간 6교시인 경우 2시간 4교시인 경우 4시간, 휴업일(토요일·공휴일·방학·재량휴업일)인 경우 8시간 이내로 인정함.

※ 교외체험학습 기간 등 학교장 출석 인정 결석 기간의 봉사활동은 당일 수업시수와 봉사활동 시간을 합하여 8시간 이내로 함.

〈예시〉 교외체험학습일에 봉사활동 8시간을 한 경우 봉사활동 당일 학교 수업이 7시간이면 봉사활동은 1시간만 인정함.

※ 다만 헌혈은 1일 최대 봉사활동 인정 가능 시간(8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회당 4시간으로 연3회 범위 내에서 실적으로 인정함.

  
Q59

봉사활동 실적 연계 사이트인 VMS를 통하여 헌혈 봉사활동을 실시하였다면 봉사활동 계획서와 학부모 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하나요?

인적·학적사항  
(공통)

출결상황  
(공통)

  
A59

1365, VMS, DOVOL 등의 실적 연계 사이트를 활용한 개인 봉사활동 실적의 경우 봉사활동 계획서는 학교에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헌혈의 경우 실적 연계 사이트 활용 여부와 관계없이 학부모 동의서 및 개인 봉사활동 계획서 제출 여부를 시도교육청 봉사활동 지침을 통해 확인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수상경력  
(중·고등학교)

자격증 및  
인증 취득사항  
(고등학교)



참고 or 관련 근거

● 202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등 99쪽)

※ 실적 연계 사이트를 활용(신청→실행→전송→반영을 통한 일련의 과정을 포함)하는 경우, 학생은 봉사활동 계획서 및 봉사활동 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할 필요가 없으나. 사전 담임교사와 상담을 통하여 인정 기관과 활동 내용을 확인하고 학교의 교육정보시스템에서 봉사활동 실적 전송 자료를 확인하여 학교생활기록부에 입력하는 등 개인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실적 등록 절차를 간소화 함.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공통)

교과학습  
발달상황  
(공통)

자유학기  
활동상황  
(중학교)

독서활동상황  
(중·고등학교)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공통)

정정사항  
(공통)

기타사항 등  
(공통)



Q60

〈사례1〉

“물리·생명과학 등의 주제로 대학교재 또는 논문 등을 읽는 스터디”를 목적으로 고등학교에서 동아리 개설이 가능한가요?

〈사례2〉

진로활동의 일환으로 논문을 선정하여 읽고 요약 및 조사하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진로활동 특기 사항에 ‘논문’이라는 단어를 언급하거나 논문의 제목 또는 논문의 내용을 기재할 수 있나요?

A60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르면 학교는 국가교육과정 및 시도교육과정에 따라 학교교육과정을 편성하여야 하며, 편성된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대학 교재 또는 논문을 탐구하는 동아리 활동 및 논문을 활용한 교육 활동은 편성된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으므로 학교생활기록부에 논문과 관련된 내용은 기재할 수 없습니다.



참고 or 관련 근거

○ 202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등 18쪽)

- 3. 다음은 사교육 유발 요인이 큰 사항으로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을 포함하여 학교생활기록부의 어떠한 항목에도 기재할 수 없음.
  - 바. 논문을 학회지 등에 투고 또는 등재하거나 학회 등에서 발표한 사실

○ 202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등 88쪽)

제13조(창의적 체험활동상황) ① 창의적 체험활동의 4개 영역(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별 활동 내용, 평가방법 및 기준은 교육과정을 근거로 학교별로 정한다.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2020.10.20.)

제1조(목적) 이 법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공교육을 담당하는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관련기관의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교육기본법」에서 정한 교육 목적을 달성하고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8조(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 등) ① 학교는 국가교육과정 및 시·도교육과정에 따라 학교교육과정을 편성하여야 하며, 편성된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방과후학교 과정도 또한 같다.

# 교과학습 발달상황 FAQ



교과 시간에 교과 관련 독서 활동을 하고, 그 내용을 해당 교과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 기재하고자 합니다. 단순 독후활동 이외의 교육활동을 전개한 경우 도서명을 포함하여 그 내용을 다른 영역에 입력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단순 독후활동 이외의 교육활동'이란 무엇을 의미하며, 어떠한 활동을 전개해야 관련 교과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 기재할 수 있는 것인가요?



단순 독후활동이란, 도서를 읽고 독후감을 쓰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아울러, 교과수업시간에 교과 성취기준에 따라 담당교사의 지도하에, 도서를 활용하여 단순 독후활동(감상문 작성) 외 교육활동을 전개하였다면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 도서명을 포함하여 교육활동 내용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 참고 or 관련 근거

### 202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등 163쪽)

**유의사항**

- 독서활동상황은 독서기록장, 독서 포트폴리오,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의 증빙자료를 근거로 입력함.
- 전체 학년 동안 동일한 책을 '독서활동상황'란에 중복하여 입력하지 않도록 함.
- 단순 독후활동(감상문 작성 등) 외 교육활동을 전개하였다면, 도서명을 포함하여 그 내용을 다른 영역(교과세특, 창의적 체험활동, 자유학기 등)에 입력 할 수 있음.

### 202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등 148쪽)

- 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은 학생참여형 수업 및 수업과 연계된 수행평가 등에서 관찰한 내용을 입력한다.
- ※ 과목별 특기사항은 교과담당교사가 교육정보시스템의 [성적]-[성적처리]-[과목별세부능력및특기사항]에서 학기별로 입력할 수 있으며, 동일 과목에 대해 1학기 및 2학기에 내용을 각각 입력하는 경우 교육정보시스템에 '(1학기)', '(2학기)'와 같이 '(학기명)'이 자동으로 입력됨(2학기는 다음 줄에 표기됨.)
  - ※ 교육정보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과목별로 한 줄씩 띄어 등록됨.
  - ※ 지필평가와 수행평가 결과를 토대로 과목별 성취기준에 따른 성취수준의 특성 및 참여도·태도 등 특기할 만한 사항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입력함.

인적·학적사항  
(공통)

출결상황  
(공통)

수상경력  
(중·고등학교)

자격증 및  
인증 취득사항  
(고등학교)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공통)

교과학습  
발달상황  
(공통)

자유학기  
활동상황  
(중학교)

독서활동상황  
(중·고등학교)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공통)

정정사항  
(공통)

기타사항 등  
(공통)

Q2

〈사례1〉

국어, 수학 수업을 특수학급에서 수강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교과평가에 어떻게 기재해야 할까요?

〈사례2〉

일반고등학교입니다. 특수학생의 경우 정규 수업시간에 도움반(특수학급)에서 수업을 듣고 있어서, 1년 동안 한 시간도 일반 교과시간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기초·탐구 교과(군)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적어야 할까요?

〈사례3〉

특수학교 대상자인 학생이 정규 수업시간에 도움반(특수학급)에서 수업을 실시하여 담당교사의 수업에 1시간도 참여하지 않은 경우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A2

특수교육 및 특수학급 학생의 평가결과 처리방법에 관한 모든 사항은 소속 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에 따라 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장애학생의 평가조정 규정을 정하여 시행해야 합니다.

또한,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 시에도 소속 학교의 특수학급 교육과정 및 개별화교육계획을 참고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특수학급 교과 평가 방법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속 시도교육청 소관 부서(특수교육 담당 등)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통합학급 학생의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개별화교육계획에 따라 특수교사가 직접 관찰·평가한 내용을 교과 담당교사가 전달받아 입력할 수 있으며, 통합학급 학생이라는 표현보다는 순회교육으로 변경하여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or 관련 근거

###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0조)

특수교육기관의 장 및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일반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범위 안에서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의 장애종별과 정도, 연령, 현재 및 미래의 교육요구 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의 내용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 202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등 81쪽, 중등 154쪽)

(초등) 5. 기타

마. 시·도교육청에서는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장애학생의 평가 조정 규정을 마련하여 장애학생이 장애 유형과 정도에 맞는 적절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각급 학교에서는 시·도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의거하여 학교별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장애학생의 평가조정 규정을 정하여 시행한다.

(중등) 4. 기타

사. 특수교육 교육과정의 전문교과Ⅱ

1) 2015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의 '전문교과Ⅱ'는 전문교과Ⅱ의 성적처리 유형 및 평가 방법 등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348호)

제4조(처리요령)

② 사용자는 직접 관찰·평가한 내용을 근거로 자료를 입력해야 한다.

### ○ 2020 특수교육 운영계획(교육부, 20.01.30.)

각급 학교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정당한 교육편의 제공 및 평가조정 지원 강화, 대안평가 방안 마련으로 2020학년도 학업성적관리지침에 따라 학교별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장애학생의 학업성취 평가방법 및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방법 등을 명시한다.

### ○ 2020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서술형 항목 기재 방안(교육부 교수학습평가과-9690(2020.12.23.))

위탁, 장기결석 등으로 특정 교과 또는 창체 영역의 편성시간 전체를 참여하지 않은 경우 각 항목의 기재 방법을 준수하되, 특수교육대상자를 암시하는 '개별화교육'은 '순회교육'으로 변경하여 입력한다.

인적·학적사항  
(공통)

출결상황  
(공통)

수상경력  
(중·고등학교)

자격증 및  
인증 취득사항  
(고등학교)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공통)

교과학습  
발달상황  
(공통)

자유학기  
활동상황  
(중학교)

독서활동상황  
(중·고등학교)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공통)

정정사항  
(공통)

기타사항 등  
(공통)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 시, '내신 성적'이라는 표현 가능한가요?



'내신 성적'이라는 표현은 별도 규제 사항이 없으므로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교과학습 발달상황에 표기된 성적을 '교과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 중복으로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예를 들어, 수학 내신 성적이 1등급이며~), 학생의 성취수준의 특성, 참여도 등의 표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참고 or 관련 근거

○ 202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등 18쪽, 중등 18쪽)

- 3. 다음은 사교육 유발 요인이 큰 사항으로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을 포함하여 학교생활기록부의 어떠한 항목에도 기재할 수 없음.
  - 가. 각종 공인어학시험 참여 사실과 그 성적 및 수상 실적
  - 나. 교과비교과 관련 교외대회 참여 사실과 그 성적 및 수상 실적
  - 라. 교내·외 인증시험 참여 사실이나 그 성적
  - 마. 모의고사·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원점수, 석차, 석차등급, 백분위) 및 관련 교내 수상실적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 시, 구체적인 수치 또는 특수문자를 입력할 수 있을까요?  
(예) 체육 교과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 시 “자유투 성공률이 90% 이상으로~”



학교생활기록부 서술형 항목 입력 시 특수문자 입력은 지양하는 바, '%'를 '퍼센트' 등으로 바꾸어 한글로 입력할 것을 권장합니다.  
아울러, 정규 수업시간 중 학생참여형 수업 및 수업과 연계된 수행평가 등을 통해 교사가 관찰한 내용 이라면 학생의 성취기준 또는 학습목표 도달도를 구체적 수치로 평가하여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기재 가능합니다.



참고 or 관련 근거

- 202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등 29쪽, 중등 29쪽)

  - 학교생활기록부 서술형 항목 입력 시 특수문자, 문단구분 기호(번호) 입력은 지양함.
- 202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등 87쪽)

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능력과 태도를 입력한다.
- 202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등 148쪽)

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은 학생참여형 수업 및 수업과 연계된 수행평가 등에서 관찰한 내용을 입력한다.  
※ 지필평가와 수행평가 결과를 토대로 과목별 성취기준에 따른 성취수준의 특성 및 참여도, 태도 등 특기할만한 사항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입력함.

인적·학적사항  
(공통)

출결사항  
(공통)

수상경력  
(중·고등학교)

자격증 및  
인증 취득사항  
(고등학교)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공통)

교과학습  
발달상황  
(공통)

자유학기  
활동상황  
(중학교)

독서활동상황  
(중·고등학교)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공통)

정정사항  
(공통)

기타사항 등  
(공통)



2가지 문의드립니다.

- 1)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기재할 수 있을까요?
- 2) 과제형 수업을 진행하였을 때, 과제 결과물을 평가에는 반영하지 않으나, 수행한 내용 등 교사가 관찰한 바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기재해도 될까요?



- 1)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는 정규 수업시간 중 교과 담당교사가 직접 관찰·평가한 내용을 기재합니다. 학생참여형 수업 및 수업과 연계된 수행평가 등에서 관찰한 내용, 지필평가와 수행평가 결과를 토대로 과목별 성취기준에 따른 성취수준의 특성, 참여도·태도 등 특기할 만한 사항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 2) 2020학년도부터 과제형 수행평가가 전면 금지되었으므로 과제 결과물을 평가에 반영할 수 없으며, 수행평가가 아닌 경우에도 학생의 과제 수행 과정을 교사가 직접 관찰·평가할 수 없는 바, 과제 결과물 관련 내용은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 기재할 수 없습니다.



참고 or 관련 근거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348호)

제4조(처리요령)

- ② 사용자는 직접 관찰·평가한 내용을 근거로 자료를 입력해야 한다.

제15조(교과학습발달상황)

- ⑥ 중·고등학교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는 과목별 성취기준에 따른 성취수준의 특성 및 학습 활동 참여도 등을 문장으로 입력한다.

● 202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등 80쪽, 중등 119쪽)

- 4) 정규교육과정 외에 학생이 수행한 결과물에 대해 점수를 부여하는 과제형 수행평가는 실시하지 않는다.

● 202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등 87쪽, 중등 148쪽)

(초등) 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능력과 태도를 입력한다.

(중등) 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은 학생참여형 수업 및 수업과 연계된 수행평가 등에서 관찰한 내용을 입력한다.

※ 지필평가와 수행평가 결과를 토대로 과목별 성취기준에 따른 성취수준의 특성 및 참여도·태도 등 특기할 만한 사항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입력함.



교과 수업시간에 랜드마크(예시) 파리의 에펠탑)를 조사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활동을 하였을 경우, 랜드마크의 구체적인 명칭을 입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랜드마크의 구체적인 명칭은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 금지 사항에 해당하는 특정 대학명, 상호명, 기관명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력 불가하나, 그 외 일반적인 지역 대표 지형이나 시설물의 명칭은 별도 규제사항이 없으므로 기재 가능합니다.



참고 or 관련 근거

○ 202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등 18쪽, 중등 18쪽)

- 02.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시 유의사항
- 3. 다음은 사교육 유발 요인이 큰 사항으로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란을 포함하여 학교생활기록부의 어떠한 항목에도 기재할 수 없음.
  - 가. 각종 공인어학시험 참여 사실과 그 성적 및 수상 실적
  - 나. 교과·비교과 관련 교외대회 참여 사실과 그 성적 및 수상 실적
  - 다. 교외 기관·단체(장)등에게 수상한 교외상(표창장, 감사장, 공로상 등도 기재 불가함)
  - 라. 교내·외 인증시험 참여 사실이나 그 성적
  - 마. 모의고사·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원점수, 석차, 석차등급, 백분위) 및 관련 교내 수상실적
  - 바. 논문을 학회지 등에 투고 또는 등재하거나 학회 등에서 발표한 사실
  - 사. 도서출간 사실
  - 아.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출원 또는 등록 사실
  - 자. 어학연수, 봉사활동 등 해외 활동실적 및 관련 내용
  - 차. 부모(친인척 포함)의 사회·경제적 지위(직종명, 직업명, 직장명, 직위명 등) 암시 내용
  - 카. 장학생·장학금 관련 내용
  - 타. 구체적인 특정 대학명, 기관명, 상호명, 강사명 등

인적·학적사항  
(공통)

출결상황  
(공통)

수상경력  
(중·고등학교)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고등학교)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공통)

교과학습  
발달상황  
(공통)

자유학기  
활동상황  
(중학교)

독서활동상황  
(중·고등학교)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공통)

정정사항  
(공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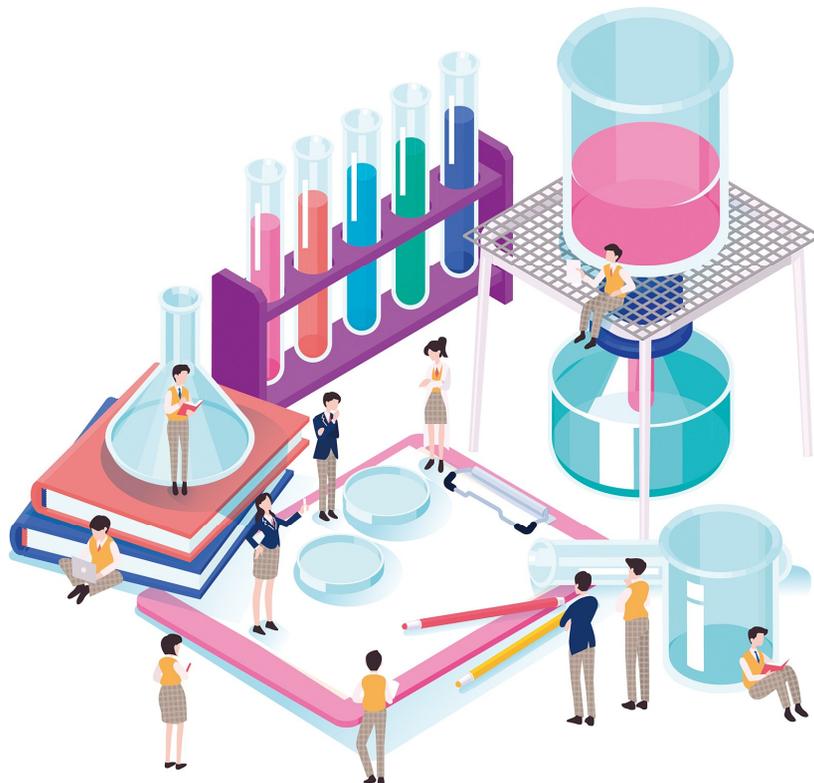
기타사항 등  
(공통)



7월에 유예처리 예정인 학생이 현재까지 장기결석으로 등교수업 및 원격수업을 단 1회도 참여하지 않았을 경우 특기사항에 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사유를 입력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입력해야 할까요?



유예처리 이전, 장기결석으로 교과 수업에 1차시도 참여하지 못한 해당 학생의 경우에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입력해야 하는 서술형 항목에 '장기결석으로 활동 내용이 없음' 등으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 참고 or 관련 근거

### ● 202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등 69쪽, 중등 93쪽)

다. 창의적 체험활동 각 영역의 이수시간이 0시간인 학생에 대해서는 <예시>와 같이 그 사유를 특기사항에 입력한다.

<예시> 재택학생의 경우: 개별화교육에 따라 활동 내용이 없음. / 장기결석생인 경우: 장기결석으로 활동 내용이 없음. / 위탁학생의 경우: 위탁학생으로 활동 내용이 없음.

### ● 202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등 89, 93쪽)

12.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해설]

1. 제13조(창의적 체험활동상황)

나. 자율·동아리·진로활동의 이수시간은 영역별로 입력하고 특기사항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영역별로 활동 내용이 우수한 사항(참여도, 활동의욕, 진보의 정도, 태도 변화 등)을 중심으로 개별적인 특성이 드러나도록 실제적인 역할과 활동위주로 입력한다.

※ 학업중단자(유예·면제·자퇴·퇴학·제적)의 경우 학업중단일을 기준으로 자율·동아리·진로활동의 누가기록과 이수시간, 특기사항을 입력함.

[기재요령]

③ 특기사항

다. 창의적 체험활동 각 영역의 이수시간이 0시간인 학생에 대해서는 <예시>와 같이 그 사유를 특기사항에 입력한다.

<예시> 장기결석생인 경우: 장기결석으로 활동 내용이 없음. / 위탁학생의 경우: 위탁학생으로 활동 내용이 없음.

### ● 202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등 132~133쪽)

13. 교과학습발달상황

라) 자유학기 교과학습발달상황

(2) 자유학기에 이수한 모든 과목(교양 과목 포함)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입력한다.

(다) 자유학기 교과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의 경우 그 사유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입력한다.

### ● 202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등 157~158쪽)

14. 자유학기활동상황

[해설]

1. 제15조의 2(자유학기활동상황)

마. 자유학기활동 이수시간은 활동 내용별로 입력하고 영역별 특기사항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입력한다.

※ 학업중단자(유예·면제)의 경우 학업중단일을 기준으로 자유학기활동의 이수시간과 특기사항을 입력함.

[기재요령]

③ 특기사항

나. 자유학기활동상황 각 영역의 이수시간이 0시간인 학생에 대해서는 <예시>와 같이 그 사유를 특기사항에 입력한다.

인적·학적사항  
(공통)

출결상황  
(공통)

수상경력  
(중·고등학교)

자격증 및  
인증 취득사항  
(고등학교)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공통)

교과학습  
발달상황  
(공통)

자유학기  
활동상황  
(중학교)

독서활동상황  
(중·고등학교)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공통)

정정사항  
(공통)

기타사항 등  
(공통)



원격 수업 기간 동안 학생이 출연한 동영상 과제물을 제출받았습니다. 과제물의 내용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입력할 수 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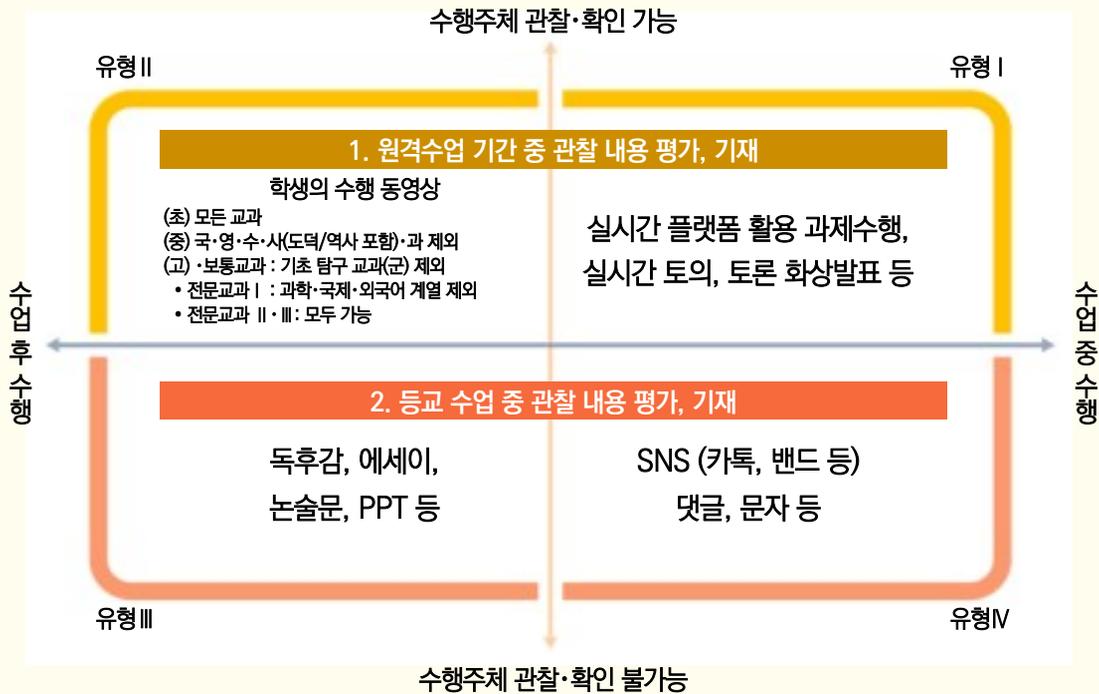
2020학년도의 경우 해당 교과가 예체능이라면 수행 동영상에서 학생이 직접 수행했는지 교사가 관찰·확인한 내용은 해당 영역의 특기사항에 기재 가능하며, 그 외 과목은 불가합니다. 다만, 예체능 이외의 교과라도 등교수업에서 해당 과제물을 연계한 수업을 진행한 경우에는 교사가 직접 관찰·평가한 등교수업 내용을 기재 할 수 있습니다.



참고 or 관련 근거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원격수업 및 등교수업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2학기 이후) 안내(교육부 교수학습 평가과-6534, 2020. 8. 31.)

〈학생평가, 학생부 기재 개념도〉



- (유형 I) 수업 중 관찰·확인 가능형
  - 교사가 실시간 쌍방향 화상 수업을 통해 직접 관찰·확인한 학생의 수행 과정 및 결과를 평가하거나 학생부에 기재 가능

• (유형 II) 수업 후 관찰·확인 가능형

- 원격수업 후 학생이 제출한 과제를 통해 교사가 직접 관찰·확인한 학생의 수행 결과 평가하거나 학생부 기재 가능

**【원격수업 기간 중 수행평가, 기록 가능 유형(II유형(동영상 제출)) 교과(목)]**

- (1학기) 예체능 과목만 가능
- (2학기) (초) 모든 교과 가능  
(중) 국·영·수·사(도덕/역사)·과를 제외한 모든 과목 가능  
(고) <보통교과> 기초·탐구 교과영역을 제외한 체육·예술, 생활·교양 교과영역 모든 과목 가능  
<전문교과 I > 과학·국제·외국어 계열을 제외한 체육·예술 계열 모든 과목 가능  
※ 보통교과 진로선택 과목으로 편성된 경우도 동일  
<전문교과 II·III > 모든 과목 가능

• (유형 III) 수업 후 관찰·확인 불가형

- 원격수업 시 학생이 제출한 과제의 수행 주제 및 과정을 교사가 직접 관찰할 수 없는 경우 평가 및 학생부 기재 불가
- 단, 등교수업(불가 시 실시간 쌍방향 화상 원격수업)시 해당 과제물과 연계한 수업활동을 전개한 경우 교사가 직접 관찰·확인한 내용은 평가하거나 학생부 기재 가능

• (유형 IV) 수업 중 관찰·확인 불가형

- 원격수업 시 학생이 실시간 작성한 자료\*의 수행 주제 및 과정을 교사가 직접 관찰할 수 없는 경우 평가 및 학생부 기재 불가
- 단, 등교수업(불가 시 실시간 쌍방향 화상 원격수업)시 해당 자료 및 교사 피드백과 연계한 수업활동을 전개한 경우 교사가 직접 관찰·확인한 내용은 평가하거나 학생부 기재 가능

인적·학적사항  
(공통)

출결상황  
(공통)

수상경력  
(중·고등학교)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고등학교)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공통)

교과학습  
발달상황  
(공통)

자유학기  
활동상황  
(중학교)

독서활동상황  
(중·고등학교)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공통)

정정사항  
(공통)

기타사항 등  
(공통)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기관에 위탁된 학생의 과목별 세부능력 특기사항 입력 내용과, 교육정보시스템 입력 절차가 궁금합니다.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기관으로 위탁된 학생의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학적]-[위탁·현장 실습학생관리]-[위탁학생세부능력및특기사항등록]에서 입력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위탁학생 교과·비교과 시스템 입력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소속 시도교육청 나이스 지원센터로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 참고 or 관련 근거

#### ○ 202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등 139쪽)

파) 위탁학생 성적처리 방식

(1) 위탁학생이 위탁교(기관)에서 성적을 취득한 경우, 위탁교(기관)의 성적을 인정하고, 재적교 성적산출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 때, 위탁교(기관)에서 보내온 성적은 동일 (유사)과목으로 인정하여 입력한다. 다만, 성적(성취도, 원점수, 과목평균, 표준편차, 석차등급 등)이 산출되지 않은 과목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문장으로 이수 내용만을 입력한다.

(가) 위탁학생이 학기말 성적 처리 이전 복교하는 경우, 재적교 성적산출에 포함하며, 자체 평가 실시 및 성적 처리가 불가한 위탁교(기관)에 위탁된 학생은 재적교 평가에 응시한다(미응시 시 처리 방법은 [참고자료 기] '위탁학생, 병원학교·원격수업 등 학교 이외의 장소에서의 수강학생 처리' 참조).

#### ○ 202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등 137쪽, 중등 215쪽)

건강장애학생 및 병원학교, 원격수업 위탁학생 성적 처리

- 소속교 평가에 응시함(소속교 산출에 포함)
- 소속교 평가 미응시의 경우 질병결석으로 처리함



인적·학적사항  
(공통)

### Q10

위탁교에서 보내온 위탁학생의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자격증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위탁교에서 보내온 내용을 그대로 입력해야 할까요?

출결상황  
(공통)

### A10

고등학교의 경우, 재학 중 취득한 기술 관련 자격증에 한해 입력이 가능하지만 자격증의 명칭 및 취득 사실은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란에만 입력하고, 학교생활 기록부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하지 않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맞지 않은 내용은 위탁기관에 기재금지사항을 수정한 자료를 재요청하여 입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수상경력  
(중·고등학교)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고등학교)



#### 참고 or 관련 근거

#### 202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등 85쪽)

##### 유의사항

- 초·중학교는 2010학년도, 고등학교는 2011학년도 이후 교내·외 인증은 학교생활기록부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하지 않음.
- 고등학교의 경우, 재학 중 취득한 기술 관련 자격증에 한해 입력이 가능하며, 기술 관련 민간자격 국가 공인 현황은 매년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 과정을 거침([참고자료 2참조]).
- 고등학교의 경우 자격증의 명칭 및 취득 사실은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란에만 입력하고, 학교생활기록부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하지 않음.
- 2020학년도 1~2학년의 경우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은 대입전형자료로 제공하지 않음.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공통)

교과학습  
발달상황  
(공통)

자유학기  
활동상황  
(중학교)

독서활동상황  
(중·고등학교)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공통)

정정사항  
(공통)

기타사항 등  
(공통)

  
Q11

모둠활동 위주의 활동수업을 하는 수업입니다.  
 활동에 따라 수업시간에 모둠별로 등수를 정하는 활동이 있습니다.  
 이 경우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모둠활동 1위를 함' 또는 'OO수행평가에서 1등을 함'이라고 입력  
 해도 될까요?

  
A11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는 학생참여형 수업 및 수업과 연계된 수행평가 등에서 관찰한 내용을  
 입력하며, 교내상은 학교생활기록부 수상경력에만 입력하며, 수상경력 이외의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  
 하지 않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행평가의 모둠활동 중 학생의 평가결과 등을 교과세특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위의 표기는 수상실적을 기재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바, 해당 표현은 가급적 기재를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or 관련 근거

● 2020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등 74쪽)

1. 제9조(수상경력)

다. 교내상은 학교생활기록부 수상경력에만 입력하며, 수상경력 이외의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하지 않는다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특기사항,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및 '특기사항', 자유학기  
 활동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

● 2020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등 76쪽)

② 등급(위)

가. 등위는 등급에 대한 등위를 나타내는 것으로 대회 결과 확정된 등위를 입력한다.  
 나. '등급(위)'란에 상의 등급과 등위를 병기하되, 상장에 명시된 내용을 그대로 입력한다.

● 2020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등 148쪽)

②, ③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은 학생참여형 수업 및 수업과 연계된 수행평가 등에서 관찰한 내용을 입력한다.

  
Q12

학교생활기록부는 부득이한 경우 영문으로 기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영어 교과와 단원명, 교육활동 주제, 내용 등은 영문으로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기재할 수 있나요?

  
A12

기재요령에 명시된 6가지에 해당할 경우 기재 가능하나, 영어교과라 하더라도 한글 기재가 원칙입니다. 따라서 단원명, 교육활동 주제, 내용 등은 한글로 기재하시기를 바랍니다.



참고 or 관련 근거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348호)

- 제4조(처리요령) ① 학교생활기록의 자료 입력 및 정정 업무는 당해 업무를 담당하는 사용자가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사용자는 직접 관찰·평가한 내용을 근거로 자료를 입력해야 한다.
  - ③ 문자는 한글로(부득이한 경우 영문으로),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입력한다.
  - ④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에 필요한 보조부는 각 학교의 실정에 맞게 계획을 수립하여 전산입력·관리하되,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의 누가기록 방법은 시도교육감이 정한다.
  - ⑤ 학생이 전·편입학, 재취학 할 경우 원적교의 장은 재학 당시까지의 상황을 입력한 학교생활기록부 전산 자료를 전·편입학, 재취학하는 학교로 이송한다.

● 202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등 27쪽, 중등 28쪽)

- 바. 학교생활기록부의 문자는 한글로 입력하되, 부득이한 경우 영문으로 입력할 수 있다.
- 외국인 성명
  - 도로명 주소에 포함된 영문
  - 일반화된 명사(CEO, PD, UCC, IT, POP, CF, TV, PAPS, SNS, PPT 등)
  - 고유 명사
  - 외국 학교명
  - 도서명과 저자명

인적·학적사항  
(공통)

출결상황  
(공통)

수상경력  
(중·고등학교)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고등학교)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공통)

교과학습  
발달상황  
(공통)

자유학기  
활동상황  
(중학교)

독서활동상황  
(중·고등학교)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공통)

정정사항  
(공통)

기타사항 등  
(공통)

**Q13**

체육·예술 과목이 아닌 교과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또는 과제 수행 중심 수업 중에 과제물을 제출 받은 경우,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해당 과제물에 대한 내용을 기재할 수 없나요? 그러면 원격수업 이후 등교수업에서 해당 과제물을 활용한 수업을 하고 피드백이 이루어진다면 기재가 가능할까요?

**A13**

내실 있는 학생부 기재를 위해 원격수업 및 등교수업 계획·운영 시에는 학생의 수행과정 및 결과를 관찰할 수 있는 방안을 확보하여 교사가 직접 관찰·확인한 학생의 수행 과정과 결과를 종합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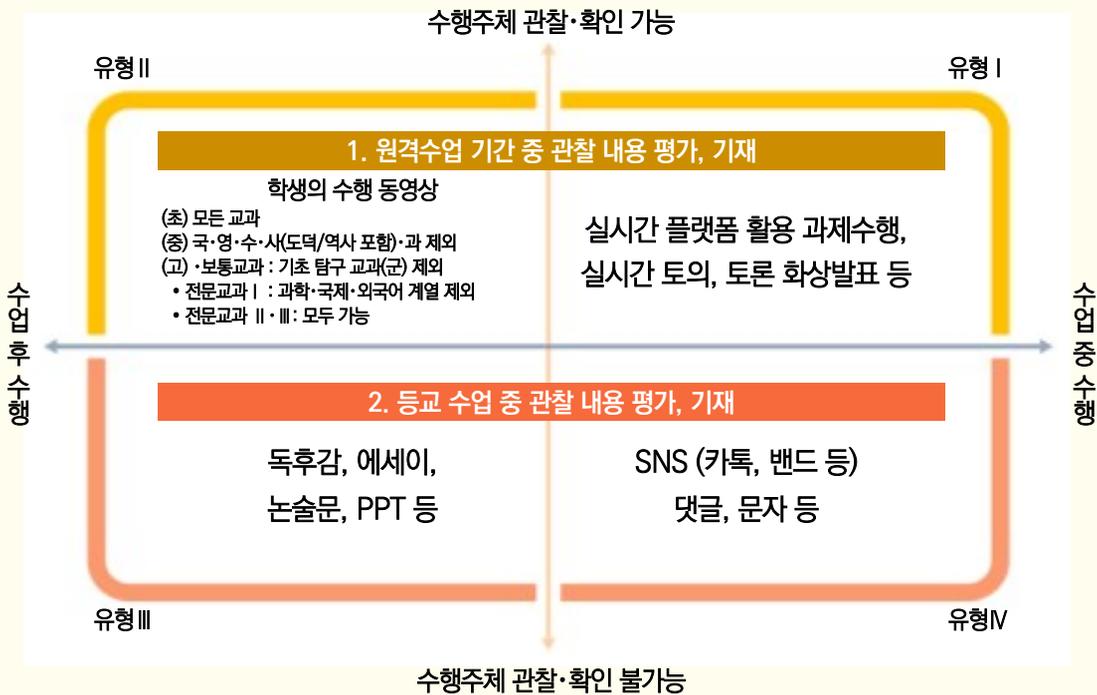
아울러, 교사가 직접 관찰하지 못한 과제 내용은 기재할 수 없으므로, 콘텐츠 제공형 및 과제제시형의 원격수업에서 학생이 제출한 과제의 수행 주체 및 과정을 교사가 직접 관찰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평가 및 학생부 기재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등교수업 시 해당 과제물을 활용한 수업을 진행한 경우 등교 수업에서 교사가 직접 관찰한 내용에 한하여 기재 가능합니다.



**참고 or 관련 근거**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원격수업 및 등교수업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2020학년도 2학기 이후)(교육부, 20.08.31.)

**〈학생평가, 학생부 기재 개념도〉**





## 참고 or 관련 근거

- (유형 I) 수업 중 관찰·확인 가능형
  - 교사가 실시간 쌍방향 화상 수업을 통해 직접 관찰·확인한 학생의 수행 과정 및 결과를 평가하거나 학생부에 기재 가능
- (유형 II) 수업 후 관찰·확인 가능형
  - 원격수업 후 학생이 제출한 과제를 통해 교사가 직접 관찰·확인한 학생의 수행 결과 평가하거나 학생부 기재 가능

### 【원격수업 기간 중 수행평가, 기록 가능 유형(II유형(동영상 제출)) 교과(목)]

- (1학기) 예체능 과목만 가능
- (2학기) (중) 국·영·수·사(도덕/역사)·과를 제외한 모든 과목 가능
  - (고) <보통교과> 기초·탐구 교과영역을 제외한 체육·예술, 생활·교양 교과영역 모든 과목 가능
  - <전문교과 I> 과학·국제·외국어 계열을 제외한 체육·예술 계열 모든 과목 가능
    - ※ 보통교과 진로선택 과목으로 편성된 경우도 동일
  - <전문교과 II·III> 모든 과목 가능

- (유형 III) 수업 후 관찰·확인 불가형
  - 원격수업 시 학생이 제출한 과제\*의 수행 주체 및 과정을 교사가 직접 관찰할 수 없는 경우 평가 및 학생부 기재 불가
    - \* 에세이, 독후감, PPT, UCC 등
  - 단, 등교수업(불가 시 실시간 쌍방향 화상 원격수업)시 해당 과제물과 연계한 수업활동을 전개한 경우 교사가 직접 관찰·확인한 내용은 평가하거나 학생부 기재 가능

- (예시 1) 등교수업에서 '비평의 기법'에 대해 지도하고, 원격수업 중 작성한 독후감을 수정·작성 및 발표하게 하여 교사가 관찰·확인한 이해도, 태도 등을 평가하거나 학생부에 기재
- (예시 2) 원격수업 중 작성한 실험 계획서를 바탕으로 등교수업에서 실험을 실시하고, 실험 중 교사가 관찰·확인한 학생의 이해도 등을 평가하거나 학생부에 기재

- (유형 IV) 수업 중 관찰·확인 불가형
  - 원격수업 시 학생이 실시간 작성한 자료\*의 수행 주체 및 과정을 교사가 직접 관찰할 수 없는 경우 평가 및 학생부 기재 불가
    - \* 실시간 채팅, 문자메시지, 댓글, SNS 메시지 등
  - 단, 등교수업(불가 시 실시간 쌍방향 화상 원격수업)시 해당 자료 및 교사 피드백과 연계한 수업활동을 전개한 경우 교사가 직접 관찰·확인한 내용은 평가하거나 학생부 기재 가능

- (예시 1) 원격수업 시 채팅 등으로 토론한 내용을 바탕으로 등교수업에서 3:3 토론을 진행하고, 토론 활동에서 관찰한 학생의 논지, 태도 등을 평가하거나 학생부에 기재
- (예시 2) 원격수업 시 댓글을 활용하여 창작한 모둠별 단편극을 바탕으로 등교수업에서 실시한 모둠별 단편소설 창작 활동에서 교사가 관찰한 창의성, 협동성 등을 평가하거나 학생부에 기재

인적·학적사항  
(공통)

출결상황  
(공통)

수상경력  
(중·고등학교)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고등학교)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공통)

교과학습  
발달상황  
(공통)

자유학기  
활동상황  
(중학교)

독서활동상황  
(중·고등학교)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공통)

정정사항  
(공통)

기타사항 등  
(공통)

  
Q14

2020학년도 3학년의 경우, 자율탐구활동으로 작성한 소논문은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관련 활동을 기재할 수 있을까요?  
또한, 연구보고서와 소논문 활동의 기재 방법 차이가 궁금합니다.

  
A14

‘연구보고서’와 ‘소논문’의 성격은 동일한 맥락으로 볼 수 있으나, 활동 영역 및 기재되는 내용에 차이가 있습니다.  
‘소논문’은 창의적 체험활동 자율탐구활동의 일환으로 수행해야 하며, 해당 실적은 2020학년도 3학년의 경우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이 아니라 창의적 체험활동의 영역별 특기사항에 ‘연구 주제 및 참여인원, 소요 시간’만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연구보고서’ 활동은 정규교육과정의 교과 성취기준에 따른 수업 중 심화 연구과제로 관련 활동을 수행하며, 수업 중 연구 보고서 작성이 가능한 과목은 수학과제 탐구, 사회문제 탐구, 융합 과학 탐구, 과학과제 연구, 사회과제 연구교과로 제한되며, 해당 교과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는 연구 보고서명을 제외한 연구 보고서 활동의 특기사항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참고 or 관련 근거

- 202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등 104쪽)  
창의적 체험활동상황(3학년)

**표준 가이드라인**

- 자율탐구활동 중 소논문 실적은 정규교육과정 이수 과정에서 사교육 개입 없이 학교 내에서 학생 주도로 수행된 연구 주제 및 참여인원, 소요 시간만을 기재함.

- 202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등 146쪽)  
교과학습발달상황

**표준 가이드라인**

- 정규교육과정의 교과 성취기준에 따라 수업 중 연구 보고서 작성이 가능한 과목\*은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과목 및 학생에 대하여 연구 보고서명을 제외하고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기재할 수 있음.  
\* 연구 보고서 작성 가능 과목(2015 개정 교육과정): 수학과제 탐구, 사회문제 탐구, 융합과학 탐구, 과학과제 연구, 사회과제 연구

  
Q15

교과 수업 활동의 일환으로 '○○공모전'을 실시했습니다. 교내 대회는 아닌데, 해당 내용을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기재할 수 있을까요?

  
A15

정규 수업시간에 진행한 공모전 형식의 교육활동인 '○○공모전'이 시상계획이 있는 대회가 아닌 경우, 과목별 성취기준에 따른 성취수준의 특성 및 참여도, 태도 등 특기할 만한 사항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모전'은 대회 참가활동으로 오인될 수 있는 바, 해당 단어 보다는 학생 활동에 대한 특기할 만한 사항을 중심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or 관련 근거

- 202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등 74쪽)

다. 교내상은 학교생활기록부 수상경력에만 입력하며, 수상경력 이외의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하지 않는다.

※ 시상계획이 있는 각종 교내 대회와 행사의 준비과정 및 참가 사실은 학교생활기록부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하지 않음.

※ '대회'라는 용어는 수상경력을 제외한 학교생활기록부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하지 않음.
- 202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등 148쪽)

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은 학생참여형 수업 및 수업과 연계된 수행평가 등에서 관찰한 내용을 입력한다.

인적·학적사항  
(공통)

출결상황  
(공통)

수상경력  
(중·고등학교)

자격증 및  
인증 취득사항  
(고등학교)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공통)

교과학습  
발달상황  
(공통)

자유학기  
활동상황  
(중학교)

독서활동상황  
(중·고등학교)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공통)

정정사항  
(공통)

기타사항 등  
(공통)

  
Q16

정규수업 시간 이외의 시간에 학교장 승인하에 수학 정규 동아리에서 전교생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체험활동을 계획하여 진행한 경우, 활동 내용을 관련 교과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 기재 가능 할까요?

  
A16

정규 교과 수업시간이 아닌 시간에 진행된 활동은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 입력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활동 내용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내부결재 문서를 근거로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별 특기사항에 입력할 수 있습니다.



참고 or 관련 근거

● 202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등 92쪽)

라.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영역별 시수 인정과 특기사항에 입력할 수 있는 내용은 표와 같다.

영역	시수	특기사항에 입력할 수 있는 내용
자율활동	정규교육과정 시수 (행사활동은 별도 행사시수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교육계획(정규교육과정 포함)에 의해 학교에서 주최하고 주관하여 실시한 활동</li> <li>• 학교장이 승인하여 동일학교급 타학교에서 주최하고 주관한 국내 체험 활동</li> <li>• 학교장이 승인한 교육관련기관에서 주최하고 주관하여 실시한 국내 체험 활동</li> </ul> <p>※ 정규교육과정에 의해 해외에서 실시한 자율활동은 시수만 인정하며, 그 이외의 해외 창의적 체험활동은 시수와 특기사항을 모두 입력하지 않음.</p>

● 202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등 148쪽)

- 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은 학생참여형 수업 및 수업과 연계된 수행평가 등에서 관찰한 내용을 입력한다.
  - ※ 과목별 특기사항은 교과담당교사가 교육정보시스템의 [성적]-[성적처리]-[과목별세부능력및특기사항]에서 학기별로 입력할 수 있으며, 동일 과목에 대해 1학기 및 2학기에 내용을 각각 입력하는 경우 교육정보시스템에 '(1학기)', '(2학기)'와 같이 '(학기명)'이 자동으로 입력됨(2학기는 다음 줄에 표기됨.)
  - ※ 교육정보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과목별로 한 줄씩 띄어 등록됨.
  - ※ 지필평가와 수행평가 결과를 토대로 과목별 성취기준에 따른 성취수준의 특성 및 참여도·태도 등 특기할 만한 사항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입력함.

Q17

〈사례1〉

위탁학생의 경우 재적교의 수강학생을 편성하여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입력해야 하나요?

〈사례2〉

위탁학생이 위탁교에서 학기말 성적처리를 완료 후 위탁기간이 종료되어 재적교로 복귀하였습니다. 재적교는 수업일수가 10일 남았습니다. 교과에 해당 학생을 수강학생으로 등록하고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입력해야 하나요?

A17

202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따라 위탁학생이 위탁교(기관)에서 성적을 취득한 경우라면 위탁교(기관)의 성적을 인정하고,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도 위탁교의 내용만 입력합니다. 이러한 경우, 재적교의 성적 처리 시 해당 학생을 평가인원에서 제외하며,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위탁교의 내용을 입력합니다.

더불어 위탁학생이 위탁교(기관)에서 2학기 성적처리를 완료하고 복귀하였으나 재적교와 학사일정이 다른 경우 재적교에 편성된 과목에는 수강학생으로 등록하지 않고(평가 인원 미포함) 출결만 등록하시면 됩니다.



참고 or 관련 근거

● 202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등 139쪽)

파) 위탁학생 성적처리 방식

(1) 위탁학생이 위탁교(기관)에서 성적을 취득한 경우 위탁교(기관)의 성적을 인정하고, 재적교 성적산출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 때, 위탁교(기관)에서 보내온 성적은 동일 유사 과목으로 인정하여 입력한다. 다만, 성적(성취도, 원점수, 과목평균, 표준편차, 석차등급 등)이 산출되지 않은 과목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문장으로 이수 내용만을 입력한다.

(가) 위탁학생이 학기말 성적 처리 이전 복교하는 경우, 재적교 성적산출에 포함하며, 자체평가 실시 및 성적 처리가 불가능한 위탁교(기관)에 위탁된 학생은 재적교 평가에 응시한다. (응시 시 처리 방법은 [참고자료 기] '위탁학생·병원학교·원격수업 등 학교 이외의 장소에서의 수강학생 처리' 참조)

인적·학적사항  
(공통)

출결상황  
(공통)

수상경력  
(중·고등학교)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고등학교)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공통)

교과학습  
발달상황  
(공통)

자유학기  
활동상황  
(중학교)

독서활동상황  
(중·고등학교)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공통)

정정사항  
(공통)

기타사항 등  
(공통)



교과학습발달상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전 영역을 종합적으로 기술한다는 의미가 과목의 각 영역별로 모두 기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특기할만한 사항이 있는 영역만 기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학생들의 교과 특성은 교사가 교과학습 평가에서 수시·상시로 기록한 내용을 중심으로 교과의 전 영역을 종합적으로 기술할 수 있도록 하며, 교과학습의 평가 계획(평가 영역, 요소, 방법, 횟수, 세부기준 및 결과의 활용 등)은 각 교과의 교육과정 및 학교, 교과의 특성을 감안하여 학년(교과) 협의회에서 수립하고 이를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과학습발달상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영역별 필수 기재 여부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하실 사항입니다.



참고 or 관련 근거

● 202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등 82쪽)

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서는 학생들의 특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학생들의 교과 특성은 교사가 교과학습 평가에서 수시·상시로 기록한 내용을 중심으로 교과의 전 영역을 종합적으로 기술할 수 있도록 한다.

● 202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등 84쪽)

1) 평가 계획 수립

가) 교과학습의 평가를 위하여 학기(학년) 평가 계획을 학년별·교과별(필요시 학급별)로 수립하되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한다.

- (1) 평가의 목적, 평가의 방향과 방침, 평가 유의사항 등
- (2) 평가의 영역, 요소, 방법, 시기 등
- (3) 평가의 세부기준(채점기준), 결시자와 학적 변동자 처리 기준 등

  
**Q19**

중학교 자유학기에 이수한 과목에 대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유학기에 해당하지 않는 중학교 2~3학년 학생들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입력하지 않아도 될까요?

  
**A19**

자유학기에 해당 되지 않는 중학교 2~3학년 학생의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정해진 입력 대상 범위의 학생들에 대하여 입력합니다.

 **참고 or 관련 근거**

● **202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등 148~149쪽)**

14. 자유학기체험활동상황

②, ③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은 학생참여형 수업 및 수업과 연계된 수행평가 등에서 관찰한 내용을 입력한다.

나. 중학교의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의 입력대상 범위는 교육적인 차원을 고려하여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정한다.

※ 중학교 자유학기에 이수한 과목에 대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입력하되, 과목명 뒤에 '(자유학기)'가 자동으로 표기됨.

인적·학적사항  
(공통)

출결상황  
(공통)

수상경력  
(중·고등학교)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고등학교)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공통)

**교과학습  
발달상황  
(공통)**

자유학기  
활동상황  
(중학교)

독서활동상황  
(중·고등학교)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공통)

정정사항  
(공통)

기타사항 등  
(공통)



자유학기제 이수한 모든 과목은 모든 학생 대상으로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기재해야 하는데, 미이수한 학생은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기재하지 않아도 될까요?



자유학기 교과목의 이수시간이 0시간인 학생에 대해서는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 기재요령 <예시>를 참고로, 의미변동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학생의 상황에 맞게 사유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or 관련 근거

○ 202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등 132~133쪽)

13. 교과학습발달상황

라) 자유학기 교과학습발달상황

(2) 자유학기에 이수한 모든 과목(교양 과목 포함)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입력한다.

(다) 자유학기 교과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의 경우 그 사유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입력한다.

<예시> 재택학생의 경우: 개별화교육에 따라 특이사항 없음.

<예시> 장기결석생인 경우: 장기결석으로 특이사항 없음.

<예시> 위탁학생의 경우: 위탁학생으로 특이사항 없음.

<예시> 원격수업 수강생의 경우: 원격수업 수강생으로 특이사항 없음.

  
Q21

1학년 자유학기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평가항목을 모두 기재해야 하나요? 아니면 특기할 만한 내용이 있는 항목만 기재해도 되나요?

  
A21

모든 평가항목을 기재해야 하는 규정은 없으며,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는 각 과목별 성취 기준에 따른 성취수준의 특성, 학습활동 참여도 및 태도, 활동 내역 등을 입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참고 or 관련 근거

○ 202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등 132~133쪽)

- 13. 교과학습발달상황
  - 라) 자유학기 교과학습발달상황
    - (2) 자유학기에 이수한 모든 과목(교양 과목 포함)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입력한다.
      - (가) 체육·예술(음악/미술) 교과(군)의 과목을 제외한 모든 과목은 각 과목별 성취기준에 따른 성취수준의 특성, 학습활동 참여도 및 태도, 활동 내역 등을 문장으로 입력한다.
      - (나) 체육·예술(음악/미술) 교과(군)의 과목은 각 과목별 성취기준에 따른 성취수준의 특성, 실기능력, 교과적성, 학습활동 참여도 및 태도 등을 문장으로 입력한다.

인적·학적사항  
(공통)

출결상황  
(공통)

수상경력  
(중·고등학교)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고등학교)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공통)

교과학습  
발달상황  
(공통)

자유학기  
활동상황  
(중학교)

독서활동상황  
(중·고등학교)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공통)

정정사항  
(공통)

기타사항 등  
(공통)



영재교육 이수내용 입력 시 중학교 급은 <@>를 앞뒤로 입력하도록 되어 있는데, 고등학교 입시 원서에 반영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입력하는 것인가요?  
'<@>' 없이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기록한 경우에는 정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식별자는 학교생활기록부의 출력 옵션에서 '영재기록사항제외(고입용)' 체크를 통해 해당 내용이 출력되지 않도록 하는 기능으로,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영재교육 이수 내용 입력 시에는 반드시 '<@>' 식별자를 함께 입력해야 합니다. 아울러, 영재교육 이수 내용의 '<@>' 식별자 입력 누락에 대한 정정 여부는 귀교의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할 사항입니다.



참고 or 관련 근거

● 202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등 151~152쪽)

14. 자유학기체험활동상황

④ 기타

다. 영재교육 이수내용 입력 방식

• 중학교의 경우 [성적]-[성적처리]-[개인별세부능력및특기사항] 또는 [과목별 세부능력및특기사항]에서 '<@>' 식별자를 전과 후로 입력하고 특기사항을 등록한 후 [학생부]-[학교생활기록부]-[개인별조회]의 출력 옵션에서 '영재기록사항제외(고입용)'을 체크하여 조회하면 해당 내용이 출력되지 않음.  
<예시> <@>영재교육원에서 1학년 과정 정보 영역(120시간) 120시간을 이수함.<@>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348호)

제19조(자료의 정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정정이 가능하며, 정정 시에는 반드시 정정 내용에 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정의 사유, 정정내용 등에 대하여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친 후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별표 10의 1조)의 결재 절차에 따라 정정 사항의 발견 학년도 담임교사가 정정 처리해야 한다.

  
Q23

기초·탐구교과(군)를 포함한 모든 교과와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학년당 1학기 또는 2학기에 한 번만 입력할 수 있을 까요?

  
A23

교과학습발달상황은 특정 학기에만 개설된 과목의 경우 해당 학기에 입력하며, 학년도를 기준(1,2학기 모두)으로 개설된 과목은 '학기별로 입력' 또는 '학년 말에 일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후 1학기과 2학기에 내용을 각각 입력하는 경우 (1학기), (2학기)와 같이 (학기명)이 자동 입력됩니다.



참고 or 관련 근거

● 202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처리요령(중등 148~149쪽)

- 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은 학생참여형 수업 및 수업과 연계된 수행평가 등에서 관찰한 내용을 입력한다.
  - ※ 과목별 특기사항은 교과담당교사가 교육정보시스템의 [성적]-[성적처리]-[과목별세부능력및특기사항]에서 학기별로 입력할 수 있으며, 동일 과목에 대해 1학기과 2학기에 내용을 각각 입력하는 경우 교육정보시스템에 '(1학기)', '(2학기)'와 같이 '(학기명)'이 자동으로 입력됨(2학기는 다음 줄에 표기됨.)
  - ※ 교육정보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과목별로 한 줄씩 띄어 등록됨.
  - ※ 지필평가와 수행평가 결과를 토대로 과목별 성취기준에 따른 성취수준의 특성 및 참여도·태도 등 특기할 만한 사항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입력함.
- 나. 중학교의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의 입력대상 범위는 교육적인 차원을 고려하여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정한다.
  - ※ 중학교 자유학기에 이수한 과목에 대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입력하되, 과목명 뒤에 '(자유학기)'가 자동으로 표기됨.
- 다. 고등학교의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기초교과(군)'과 '탐구교과(군)'의 과목은 모든 학생에 대해 입력하고 그 외의 과목은 교육적인 차원을 고려하여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입력 대상 범위를 정한다.
  - ※ 단, 과목 이수시간이 0시간인 학생에 대해서는 입력하지 않을 수 있음. 위탁교육기관, 병원·학교·원격수업기관의 활동 내용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의 자료를 그대로 입력함.

인적·학적사항  
(공통)

출결상황  
(공통)

수상경력  
(중·고등학교)

자격증 및  
인증 취득사항  
(고등학교)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공통)

교과학습  
발달상황  
(공통)

자유학기  
활동상황  
(중학교)

독서활동상황  
(중·고등학교)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공통)

정정사항  
(공통)

기타사항 등  
(공통)

Q24

올해부터 기초·탐구교과(군)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기재해야 하는데 등교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어떻게 기재하나요? 또한 '잦은 결석으로 관찰이 어려운 학생, 수업 태도가 불성실한 학생, 수업 시간 중 특기할 만한 활동을 하지 않은 학생 등'의 경우에도 관찰한 내용을 솔직하게 기재(객관적이지만 부정적인 표현 등)할 경우 문제가 되는지요?

A24

고등학교의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기초교과(군)'과 '탐구 교과(군)'의 과목은 모든 학생에 대해 입력하며, 그 외 교과는 교육적 차원을 고려하여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입력 대상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등교수업 및 관찰 가능 원격수업에 1차시 이상 참여한 경우, 해당 내용을 근거로 관찰·평가 내용을 기재해야 하며, 관찰 가능한 수업에 모두 불참한 학생의 경우에는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해당 학생의 상황에 따라 그 사유를 기재해야 합니다.

2020학년도부터 기초교과와 탐구교과로 편성된 과목의 경우, 여러 가지 사유로 관찰내용이 부족하거나 수업 활동 및 평가 과정에서 두드러지는 점이 없는 학생의 경우에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모두 입력해야 합니다. 아울러,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학생참여형 수업 및 수업과 연계된 수행평가 등에서 관찰한 내용, 지필평가와 수행평가 결과를 토대로 과목별 성취기준에 따른 성취수준의 특성 및 참여도·태도 등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 참고 or 관련 근거

### ○ 2020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등 149쪽)

다. 고등학교의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기초교과(군)'와 '탐구교과(군)'의 과목은 모든 학생에 대해 입력하고 그 외의 과목은 교육적인 차원을 고려하여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입력 대상 범위를 정한다.

※ 단, 과목 이수시간이 0시간인 학생에 대해서는 입력하지 않을 수 있음. 위탁교육기관, 병원학교·원격수업 기관의 활동 내용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의 자료를 그대로 입력함.

### ○ 2020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서술형 항목 기재 방안 안내[교육부 교수학습평가과-9690(2020. 12. 23.)]

〈상황별 기재 방안〉

• (관찰 내용 확보) 등교수업 및 관찰 가능 원격수업에 참여(1차시 이상)한 경우, 해당 내용을 근거로 관찰 내용 기재

• (관찰 내용 미 확보) 등교수업 및 원격 수업 중 실시간 쌍방향 수업 등 관찰 가능한 수업에 모두 불참한 학생 (고위험군 학생 및 가정학습 신청자 등 장기 미등교 학생)의 경우, 그 사유를 특기사항(세부능력 및 특기 사항)에 기재

⇒ (기재 내용) 코로나19로 원격수업에 참여함. 출석인정 결석(학생별 결석 종류 기재)으로 인한 등교수업 미 참여로 특이사항 없음.

※ 창·체의 경우, 원격수업으로 실시한 정량적 기록 병기 가능

• (전체 미 참여) 위탁, 장기결석 등으로 특정 교과 또는 창체 영역의 편성시간 전체를 참여하지 않은 경우 각 항목의 기재 방법 준수

※ 단, 특수교육대상자를 암시하는 '개별화교육'은 '순회교육'으로 변경하여 입력

- 각 과목\* 또는 영역\*\*의 이수시간이 0시간인 학생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특기사항에 기재, 위탁교육 기관의 활동내용이 있는 경우 해당 교육기관 전송자료 입력(입력 시 학생부 기재 유의사항 준수)

\* 중학교(자유학기제 이수 과목), 고등학교 기초·탐구 교과(군) 해당

\*\* 창체 전 영역(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포함), 자유학기활동 전 영역

※ 기재요령 참고 자료: 교과(149쪽), 창체(93쪽), 자유학기(158쪽)

인적·학적사항  
(공통)

출결상황  
(공통)

수상경력  
(중·고등학교)

자격증 및  
인증 취득사항  
(고등학교)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공통)

교과학습  
발달상황  
(공통)

자유학기  
활동상황  
(중학교)

독서활동상황  
(중·고등학교)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공통)

정정사항  
(공통)

기타사항 등  
(공통)

  
Q25

특성화 고등학교의 도제학급입니다. 일주일에 며칠씩 기업에 나가서 활동을 하는데요. 기업 현장학습 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의 어떤 항목에 어떤 형식으로 기재할 수 있을까요?

  
A25

도제학급의 현장실습이 교과 활동으로 수행된 경우, '현장실습 유형·실습기간 등'을 학교장 또는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기재(예시)를 참고하여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 참고 or 관련 근거

### ○ 202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등 140~141쪽)

#### 거) 현장실습생 성적처리 방식

- (1) 특성화고등학교·특수목적고등학교(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현장실습생에 대해서는 이수여부, 현장실습대상기관, 실습기간을 해당 학교장 또는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방법으로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입력한다.
- (다)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등 비교과 영역의 입력은 재적학교 및 현장실습 대상 기관의 자료를 근거로 학급담임교사가 작성한다.
- (라) 현장실습을 전문교과에 포함하여 운영할 경우, 당해 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에 구체적인 평가 방법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 원점수/과목평균(표준편차), 성취도(수강자수)를 산출하여 입력하되, 교과 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 현장실습유형, 직무분야(17개 교과군 중에서 입력), 기간, 내용을 다음 예시와 같이 입력한다.

과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과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현장실습유형: 현장체험학습(산업체 견학)	현장실습 직무분야: 기계	현장실습유형: 도제교육(미용)	현장실습 직무분야: 디자인·문화 콘텐츠
실습기간: 2020.00.00.~2020.00.00.	실습내용: 자동차 조립 과정 견학	실습기간: 2020.00.00.~2020.00.00.	실습내용: 헤어디자인 L3
과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과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현장실습유형: 산업체 현장실습	현장실습 직무분야: 재료	현장실습유형: 기타(글로벌 현장 학습)	현장실습 직무분야: 디자인·문화 콘텐츠
실습기간: 2020.00.00.~2020.00.00.	실습내용: 공작기계용 부품 가공	실습기간: 2020.00.00.~2020.00.00.	실습내용: 웹 페이지 제작 및 유지

- (마) 단일과목(예: 현장실습)으로 개설하였을 경우 이수단위(학점)와 함께 원점수(필요시 과목평균, 표준편차) 등을 입력하거나 이수여부만을 입력하고,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 현장실습유형, 직무분야(17개 교과군 중에서 입력), 기간, 내용 등을 입력한다.
- (바) 현장실습을 교과목에 포함하지 않고 창의적 체험활동 등으로 운영하는 경우 해당 활동의 평가, 기록 방법에 따르고,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년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 서술식으로 입력한다.

인적·학적사항  
(공통)

출결상황  
(공통)

수상경력  
(중·고등학교)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고등학교)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공통)

교과학습  
발달상황  
(공통)

자유학기  
활동상황  
(중학교)

독서활동상황  
(중·고등학교)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공통)

정정사항  
(공통)

기타사항 등  
(공통)

  
Q26

〈사례1〉

수업량 유연화에 따른 학교 자율적 교육활동은 어느 영역에 기재하나요?

〈사례2〉

수업량 유연화에 따른 학교 자율적 교육활동으로 철학이나 심리학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한 경우, 학교생활기록부의 '개인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기재할 수 있을까요?

  
A26

수업량 유연화에 따른 학교 자율적 교육활동은 각 과목의 교육과정 및 학교 교과의 특성을 감안하여 학년 초 교과(학년) 협의회에서 계획을 수립하여,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후,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정규교육과정 내 수업시간에 운영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수업량 유연화에 따른 자율적 교육활동 관련 내용은 해당 과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입력하고, 특정 과목으로 한정하기 어려운 경우 '개인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입력합니다.



참고 or 관련 근거

● 초·중등교육과정 총론(교육부고시 제2019-211호),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교육부 학교 혁신정책과-6170]

수업량 유연화를 통해 기존 교과(군) 1단위 17회 수업을 16회 교과수업과 1회 자율적 교육활동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 202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등 150쪽)

자. 수업량 유연화에 따른 학교 자율적 교육활동 내용 입력 방식

- 1) 「초·중등교육과정 총론(교육부고시 제2019-211호)」, 「고교 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교육부 학교혁신정책과-6170, '19.11.25.)에 따라 '수업량 유연화에 따른 학교 자율적 교육활동' 관련 내용을 해당 과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또는 '개인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입력할 수 있다.

※ 입력여부는 교육적 유의미성 등을 고려하여 학교에서 판단하고, 관련 과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및 '개인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등에 중복기재가 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가) 학교 자율적 교육활동이 교과와 연계되는 경우에는 해당과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입력할 수 있다.

나) 학교 자율적 교육활동이 특정 과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으로 한정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개인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입력할 수 있다.

  
**Q27**

정규 수업시간에 '모의고사 비문 설명하기' 수업을 진행한 경우, 해당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모의고사'라는 단어를 포함하여 활동 내용을 기재할 수 있나요?

출결사항  
(공통)

  
**A27**

모의고사·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원점수, 석차, 석차등급, 백분위) 및 관련 교내 수상실적은 학교 생활기록부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할 수 없으나, 모의고사의 지문 또는 문제를 바탕으로 한 교육 활동에 대한 별도 규제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학교생활기록부에는 학교교육계획이나 학교교육과정에 의거하여 학교에서 실시한 각종 교육 활동에 따른 개별적 특성이 드러나는 사항을 기재해야 하며,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는 학생 참여형 수업 및 수업과 연계된 수행평가 등에서 관찰한 내용을 입력하는 바, 과목별 성취기준에 따른 성취수준의 특성 및 참여도, 태도 등 특기할만한 사항을 위주로 입력할 것을 권장합니다.

수상경력  
(중·고등학교)

자격증 및  
인증 취득사항  
(고등학교)

창의적  
체험활동사항  
(공통)



**참고 or 관련 근거**

○ 202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등 18쪽)

2. 학교생활기록부에는 학교교육계획이나 학교교육과정에 의거하여 학교에서 실시한 각종 교육활동의 이수상황 (활동 내용에 따른 개별적 특성이 드러나는 사항 중심)을 기재하는 것이 원칙임.
3. 다음은 사교육 유발 요인이 큰 사항으로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을 포함하여 학교생활기록부의 어떠한 항목에도 기재할 수 없음.
  - 마. 모의고사·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원점수, 석차, 석차등급, 백분위) 및 관련 교내 수상실적

○ 202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등 148쪽)

- 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은 학생참여형 수업 및 수업과 연계된 수행평가 등에서 관찰한 내용을 입력한다.
- ※ 지필평가와 수행평가 결과를 토대로 과목별 성취기준에 따른 성취수준의 특성 및 참여도, 태도 등 특기할만한 사항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입력함.

교과학습  
발달사항  
(공통)

자유학기  
활동사항  
(중학교)

독서활동사항  
(중·고등학교)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공통)

정정사항  
(공통)

기타사항 등  
(공통)

# 자유학기 활동상황(중학교)



1학년 진로활동은 [창의적 체험활동-진로활동]영역에 편성하지 않고 [자유학기]-[진로탐색활동] 영역이 아닌, [자유학기-예술체육활동]에 편성되어 있는 경우 진로활동 내용을 어느 영역에 기재해야 하는지요?



창의적 체험활동 진로활동과 자유학기 진로탐색활동이 모두 편성되지 않은 경우라면 진로희망분야와 각종 진로검사 및 진로상담 결과, 관심 분야 등 학생의 진로 특성이 드러나는 사항을 담임교사가 창의적 체험활동 진로활동 영역에 특기사항에 입력해야 합니다.



## 참고 or 관련 근거

### 202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등 93쪽)

#### 12.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 ③ 특기사항

라. 학교교육과정 상 편성하지 않은 영역의 특기사항은 입력하지 않음. 단, 진로활동 영역은 편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진로희망분야와 각종 진로검사 및 진로상담 결과, 관심 분야 등 학생의 진로 특성이 드러나는 사항을 담임교사가 입력함.

※ 두 학기 모두 '창의적 체험활동'의 '진로활동'이 편성되지 않았으나, '자유학기활동상황에 '진로탐색 활동'이 편성된 경우에는 '자유학기활동상황'란에 입력함

### 교육부 교수학습평가과-5382(20. 7. 22.) 「202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일부 수정 알림」

- (진로활동 기재) 동일 학년도 내 자유학기에 '진로탐색활동'이 편성되었으나, 창의적 체험활동(이하 창·체) 중 '진로활동'이 편성되지 않은 경우\* 진로희망분야 및 진로 특성 사항\*\*은 자유학기에 기재

\* 예시)

영역	1학기	2학기	기재 사항
창·체 '진로활동'	×	×	'공란'
자유학기 '진로탐색활동'	○	○	진로희망분야, 진로특성사항 기재

\*\* 각종 진로검사 및 진로상담 결과, 관심 분야 등



자유학기 활동상황 특기사항 기재 시, 정량적 기재와 정성적 기재를 병기할 수 있는지 여부 문의 드립니다.



자유학기 활동상황의 특기사항은 담당교사의 수시관찰에 의한 활동 내용, 참여도, 흥미도 등을 종합 평가하여 학생의 활동 과정 및 참여도 태도, 활동 후 성장 정도 등 학생의 개별적 특성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도록 기재해야 합니다.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으로 운영한 비교과적 특성을 가진 프로그램의 경우, 창의적 체험활동 특기사항 입력 방법에 따라, 필요 시 정량적(횟수, 시간 등) 기재를 포함하여 입력할 수 있으며, 교과활동 성격의 자유학기 활동은 관찰한 내용을 근거로 정성적 기재를 해야 합니다.



참고 or 관련 근거

202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등 158쪽)

14. 자유학기체험활동상황

③ 특기사항

가. 자유학기활동상황의 영역별 특기사항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활동 내용, 참여도, 흥미도 등을 종합 평가하여 학생의 활동 과정 및 참여 태도, 활동 후 성장 정도 등 학생의 개별적 특성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도록 입력한다.

인적·학적사항  
(공통)

출결상황  
(공통)

수상경력  
(중·고등학교)

자격증 및  
인증 취득사항  
(고등학교)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공통)

교과학습  
발달상황  
(공통)

자유학기  
활동상황  
(중학교)

독서활동상황  
(중·고등학교)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공통)

정정사항  
(공통)

기타사항 등  
(공통)



자유학년제 1학년 전출생의 '자유학기활동상황'란에 원격수업 내용을 입력할 때 직접 관찰한 사실이 없다면 '이수시간'만 기재하고 '특기사항' 미기재 가능한가요?



원격수업을 통한 자유학기 활동 시에는 담당 교사가 관찰·확인이 가능한 경우 '특기사항'란에 활동 내용 및 참여도·흥미도 등을 중심으로 기재할 수 있으며, 활동에 대한 관찰·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원격 수업으로 인해 관찰 내용 없음' 등으로 기재하여 전입교로 송부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or 관련 근거

● 202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등 157~158쪽)

14. 자유학기활동상황

[해설]

1. 제15조의 2(자유학기활동상황)

마. 자유학기활동 이수시간은 활동 내용별로 입력하고 영역별 특기사항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입력한다.

※ 학업중단자(유예·면제)의 경우 학업중단일을 기준으로 자유학기활동의 이수시간과 특기사항을 입력함.

[기재요령]

③ 특기사항

나. 자유학기활동상황 각 영역의 이수시간이 0시간인 학생에 대해서는 <예시>와 같이 그 사유를 특기사항에 입력한다.

<예시> 재택학생의 경우: 개별화교육에 따라 활동내용이 없음. / 장기결석생인 경우: 장기결석으로 활동 내용이 없음. / 위탁학생의 경우: 위탁학생으로 활동 내용이 없음.

※ 단, 위탁교육기관, 병원학교·원격수업기관의 활동 내용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의 자료를 그대로 입력함.

  
Q4

중3 연계자유학기활동의 특기사항 입력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본교는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학교스포츠클럽활동과 연계자유학기의 예술·체육활동을 동일한 반 (학생)을 대상으로 동일한 강사(농구/배구)가 6~7교시로 연속적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기사항 입력 범위는 '창의적 체험활동 학교스포츠클럽활동 특기사항'은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입력 하고, '연계자유학기의 예술·체육활동 특기사항'은 전체 학생의 3분의 1을 대상으로 '특기사항'을 입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결정된 바에 따라 입력할 경우,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의 동아리활동 특기사항과 자유학기 활동상황의 예술·체육활동 특기사항을 중복 입력하게되는 학생이 있는데, 이 경우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특기사항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기재하되, 연계자유학기활동상황(예술·체육)의 특기사항은 입력을 생략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인적·학적사항 (공통)

출결상황 (공통)

수상경력 (중·고등학교)

자격증 및 인증 취득사항 (고등학교)

  
A4

연계자유학기활동은 특기사항의 입력범위 대상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특기 사항을 입력해야 합니다. 아울러, 학교스포츠클럽활동 및 연계자유학기활동을 시간 상 연속적으로 운영하더라도 해당 활동 시간에 관찰된 내용은 각 영역의 특기사항에 입력해야 합니다.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공통)

교과학습 발달상황 (공통)



참고 or 관련 근거

○ 202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등 156쪽)

14. 자유학기활동상황

1. 제15조의 2(자유학기활동상황)

가. 자유학기를 일반학기로 연계 운영하는 학교에서는 중점 연계형 자유학기활동을 이수한 모든 학생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력한다.

※ 교과시간을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한 경우 동 교과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예술·체육은 '특기사항'란)에 해당 프로그램명, 교사가 관찰한 활동내용, 참여도, 흥미도 등을 문장으로 입력함.

- 프로그램명이 자동으로 입력되지 않으므로 프로그램명을 괄호와 함께 직접 입력하여야 함.

<예시> 주제선택 중점연계 활동의 경우: (수학사 탐구) 수학 관련 동영상 시청하며 내용 정리를 잘 하는 학생으로 ~

※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한 경우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영역별 '특기 사항'란에 해당 프로그램명, 교사가 관찰한 활동내용, 참여도, 흥미도 등을 문장으로 입력함.

- 프로그램명이 자동으로 입력되지 않으므로 프로그램명을 괄호와 함께 직접 입력하여야 함.

- 그 외 사항은 정규시간에 운영되는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각 영역별 기재요령에 따름.

자유학기 활동상황 (중학교)

독서활동상황 (중·고등학교)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공통)

정정사항 (공통)

기타사항 등 (공통)



1학기 후반 자유학기제 주제선택 1기 활동은 종료되었으며, 자유학기제 2기 활동의 예술체육활동 및 진로탐색활동이 운영되고 있는데 진로탐색활동 종료 후 재취학한 학생의 '주제선택 1기 및 진로탐색활동'에 배정과 특기사항은 어떻게 기재하면 될까요?



재취학 학생은 재취학일을 기준으로 소속 학교에 편성된 자유학기활동 영역을 등록하고 프로그램을 배정하여 '특기사항'란에 미이수 사유를 입력해야 합니다. 기재요령 <예시>를 참고하여 '2020.00.00. 재취학으로 자유학기 활동내용이 없음' 등으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참고 or 관련 근거

○ 202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등 159~160쪽)

14. 자유학기체험활동상황

⑧ 기타

가. 자유학기 전출·입 시 처리요령은 다음과 같다.

- 1) 전출 시 자유학기활동에 전출일까지의 활동 내용(이수시간과 특기사항)을 입력하여 전송한다.
- 2) 자유학기의 자유학기활동상황은 다음과 같이 입력한다.

기재 방법

- [전출교-자유학기 미시행, 전입교-자유학기 시행]
  - ① 전입교에서는 전입일 이후 학생이 이수한 자유학기활동 내용(이수시간과 특기사항)을 입력한다.
  - ② 전입교의 자유학기활동이 모두 종료된 이후 전입 온 학생은 '특기사항'란에 미이수 사유를 입력한다.
    - ※ 해당학생에 대해 자유학기활동 영역을 등록하고 활동내용(프로그램)을 배정하여 입력함.
    - <예시> 2020.12.16. 전입학으로 인해 자유학기 활동내용이 없음.



중학교 자유학기 진로탐색활동에서 '여행작가 소개에 대한 발표활동'을 진행하였는데, 발표한 여행작가의 활동 중 코타키나발루, 베트남 등 '외국 국가명 및 지명 및 국내 여행지'를 해당 자유학기 특기사항에 기재할 수 있을까요?



지명, 관광지, 단순 국가명에 대한 관련 별도 규제사항은 없으므로 기재 가능합니다. 다만, 해외 활동 실적을 기재하기 위한 국가명 기재는 학생부 어떠한 항목에도 기재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여행작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 보다는 해당 자유학기 활동 중에 드러난 해당 학생의 참여도, 활동 후 성장 정도 등을 위주로 개별적 특성이 드러나도록 기재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참고 or 관련 근거

○ 202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등 157~158쪽)

14. 자유학기체험활동상황

① 자유학기활동상황

가. 자유학기활동상황의 영역별 활동 내용의 특기사항 입력 범위는 다음과 같다.

- 1) 학교교육계획에 의해 학교가 주최하고 주관하여 국내에서 실시한 자유학기 활동을 입력한다.
- 2) 자유학기활동의 경우 학교교육계획에 의해 정규교육과정 내에서 이루어진 체험활동의 내용을 입력할 수 있다.

※ 단, 체험활동을 한 구체적인 특정 대학명, 기관명\*, 상호명, 강사명\*\*은 입력하지 않음.

- \*기관명
  - 교육관련기관(교육부 및 소속기관\*, 시도교육청 및 직속기관·교육지원청 및 소속기관\*\*에 한함)의 경우 기관명을 입력할 수 있음.
  - \* 교육부 소속기관: 대한민국학술원, 국사편찬위원회, 국립국제교육원, 국립특수교육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중앙교육연수원(총 6개 기관)
  - \*\*시도교육청 및 직속기관·교육지원청 및 소속기관: [참고자료 5] 참조
- \*\*강사명
  - 특정 강사명은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 모두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참여한 강의(또는 교육활동)의 강사를 말함.

인적·학적사항  
(공통)

출결상황  
(공통)

수상경력  
(중·고등학교)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고등학교)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공통)

교과학습  
발달상황  
(공통)

자유학기  
활동상황  
(중학교)

독서활동상황  
(중·고등학교)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공통)

정정사항  
(공통)

기타사항 등  
(공통)

# 독서활동상황 FAQ



Q1

독서활동상황에서 학생이 '2020년 □□ 수상작품집'에서 A작가의 작품 「□□□」만 읽었으나, 이 작품은 단독 단행본으로 출판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경우처럼 학생이 전체 작품을 읽은 것은 아니고 그 속에 포함된 단편 소설만을 읽었을 경우, 도서명이 아닌 '작품명(저자)' 형식으로 기재하여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A1

ISBN에 등재되지 않은 '작품명(저자)'는 '독서활동상황' 영역에 기재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ISBN에 등재된 도서 전체를 읽고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기재 가능하며, 도서명 또는 도서 내 '작품명'을 입력할 수 없습니다.



## 참고 or 관련 근거

### ○ 202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등 162쪽)

#### 표준 가이드라인

- 독서 과정의 관찰·확인이 어려운 독서 성향 등은 기재하지 않고, 읽은 책의 제목과 저자만 기재하여 독서 활동 기록의 신뢰도를 제고함.
  - ※ ISBN에 등재된 도서에 한해 가능함.
  - ※ 정기간행물 즉 ISSN에 등재된 도서는 기재할 수 없음.



학생이 영어 원서로 된 <장발장>을 읽고 증빙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에는 부득이한 경우에만 영문으로 입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처럼 학생이 영어 원서를 읽고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영어 원서명(저자명)으로 입력할 수 있을까요?



해당 도서가 ISBN에 등재된 도서이며,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학생이 읽은 원서의 제목과 저자를 영문으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참고 or 관련 근거

●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348호)

- 제4조(처리요령) ① 학교생활기록의 자료 입력 및 정정 업무는 당해 업무를 담당하는 사용자가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사용자는 직접 관찰·평가한 내용을 근거로 자료를 입력해야 한다.
  - ③ 문자는 한글로(부득이한 경우 영문으로),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입력한다.
  - ④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에 필요한 보조부는 각 학교의 실정에 맞게 계획을 수립하여 전산입력·관리하되,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의 누가기록 방법은 시도교육감이 정한다.
  - ⑤ 학생이 전·편입학, 재취학 할 경우 원적교의 장은 재학 당시까지의 상황을 입력한 학교생활기록부 전산 자료를 전·편입학, 재취학하는 학교로 이송한다.

● 202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등 27쪽, 중등 28쪽)

바. 학교생활기록부의 문자는 한글로 입력하되, 부득이한 경우 영문으로 입력할 수 있다.

- 외국인 성명
- 도로명 주소에 포함된 영문
- 일반화된 명사( CEO, PD, UCC, IT, POP, CF, TV, PAPS, SNS, PPT 등)
- 고유 명사
- 외국 학교명
- 도서명과 저자명

● 202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등 162쪽)

- 독서 과정의 관찰·확인이 어려운 독서 성향 등은 기재하지 않고, 읽은 책의 제목과 저자만 기재하여 독서 활동 기록의 신뢰도를 제고함.
- ※ ISBN에 등재된 도서에 한해 가능함.
- ※ 정기간행물 즉 ISSN에 등재된 도서는 기재할 수 없음.

인적·학적사항 (공통)

출결상황 (공통)

수상경력 (중·고등학교)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고등학교)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공통)

교과학습 발달상황 (공통)

자유학기 활동상황 (중학교)

독서활동상황 (중·고등학교)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공통)

정정사항 (공통)

기타사항 등 (공통)



전자도서관 책(전자책 또는 오디오북)을 듣고 독후감을 작성하여 제출했을 경우, '독서활동상황'에 기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전자책'과 '오디오북'이 ISBN에 등재되어 있고, 학생이 관련 증빙자료(독서기록장 등)를 제출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교과 담당교사 또는 담임교사가 독서활동에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독서활동상황'란에 기재 가능합니다.



참고 or 관련 근거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348호)**

- 제15조의3(독서활동상황) ① 중·고등학교의 개인별·교과별 독서활동상황은 독서활동에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학기말에 입력한다.
- ② '독서활동상황'란에 학생이 읽은 책의 제목과 저자를 교과 담당교사 또는 담임교사가 입력한다.

● **202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등 162쪽)**

- 독서 과정의 관찰·확인이 어려운 독서 성향 등은 기재하지 않고, 읽은 책의 제목과 저자만 기재하여 독서 활동 기록의 신뢰도를 제고함.
- ※ ISBN에 등재된 도서에 한해 가능함.
- ※ 정기간행물 즉 ISSN에 등재된 도서는 기재할 수 없음.



독서활동상황에 기록한 책을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중복하여 기재가 가능할까요?



학교생활기록부에서 동일한 책을 중복 기재할 수 없는 영역은 '독서활동상황' 영역에 해당됩니다. 단순 독후활동(감상문 작성 등) 외 교육활동을 전개하였다면 도서명을 포함하여 그 내용을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창의적 체험활동, 자유학기활동상황 등의 영역에 입력할 수 있습니다.



참고 or 관련 근거

- 202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등 163쪽)

유의사항

- 독서활동상황은 독서기록장, 독서 포트폴리오, 독서교육종합시스템의 증빙자료를 근거로 입력함.
- 전체 학년 동안 동일한 책을 '독서활동상황'란에 중복하여 입력하지 않도록 함.
- 단순 독후활동(감상문 작성 등) 외 교육활동을 전개하였다면, 도서명을 포함하여 그 내용을 다른 영역(교과세특, 창의적 체험활동, 자유학기 등)에 입력 할 수 있음.

인적·학적사항  
(공통)

출결상황  
(공통)

수상경력  
(중·고등학교)

자격증 및  
인증 취득사항  
(고등학교)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공통)

교과학습  
발달상황  
(공통)

자유학기  
활동상황  
(중학교)

독서활동상황  
(중·고등학교)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공통)

정정사항  
(공통)

기타사항 등  
(공통)



도서명은 동일하나, 부제목과 저자명이 다른 두 권의 책을 학생이 모두 읽었다고 합니다. 학생이 제출한 증빙자료를 근거로 부제목은 입력하지 않고, 도서명만 입력할 경우 동일 제목으로 서로 다른 저자명이 기재되는 상황이 됩니다. 이러한 경우, 도서명을 어떻게 입력하면 좋을까요?



독서활동상황에 '도서명'은 '부제목'이 아닌 '도서명'을 입력해야 합니다. '도서명 및 저자명'은 ISBN 검색 및 책 표지 등을 활용하여 입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참고 or 관련 근거

202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등 162쪽)

15. 독서활동상황

표준 가이드라인

- 독서 과정의 관찰·확인이 어려운 독서 성향 등은 기재하지 않고, 읽은 책의 제목과 저자만 기재하여 독서활동 기록의 신뢰도를 제고함.  
 ※ ISBN에 등재된 도서에 한해 가능함.  
 ※ 정기간행물 즉 ISSN에 등재된 도서는 기재할 수 없음.

2 독서활동상황

가. '독서활동상황'란에는 독서활동에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읽은 책을 '도서명(저자)' 형식으로만 입력한다.



독서활동상황에 '시리즈 도서'는 어떻게 기재해야 할까요?



ISBN에 등재된 시리즈 도서일 경우에는 증빙자료(독서기록장, 독서포트폴리오 등)를 근거로, '도서명(저자명) 1~00권' 또는 '도서명1(저자명), 도서명2(저자명)...'등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단, 정기간행물 즉 ISSN에 등재된 도서는 기재할 수 없습니다.



참고 or 관련 근거

202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등 162쪽)

15. 독서활동상황

표준 가이드라인

- 독서 과정의 관찰·확인이 어려운 독서 성향 등은 기재하지 않고, 읽은 책의 제목과 저자만 기재하여 독서활동 기록의 신뢰도를 제고함.  
 ※ ISBN에 등재된 도서에 한해 가능함.  
 ※ 정기간행물 즉 ISSN에 등재된 도서는 기재할 수 없음.

2 독서활동상황

가. '독서활동상황'란에는 독서활동에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읽은 책을 '도서명(저자)' 형식으로만 입력한다.



유의사항

2021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학교 119~120쪽, 고등학교 129~130쪽)

표준 가이드라인

- 독서 과정의 관찰·확인이 어려운 독서 성향 등은 기재하지 않고, 읽은 책의 제목과 저자만 기재하여 독서활동 기록의 신뢰도를 제고함.  
 ※ ISBN에 등재된 도서에 한해 가능함.(정기간행물은 입력 불가).  
 ※ 정기간행물 즉 ISSN에 등재된 도서는 기재할 수 없음.

2 독서활동상황

가. '독서활동상황'란에는 독서활동에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읽은 책을 '도서명(저자)' 형식으로만 입력한다.

인적·학적사항 (공통)

출결상황 (공통)

수상경력 (중·고등학교)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고등학교)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공통)

교과학습 발달상황 (공통)

자유학기 활동상황 (중학교)

독서활동상황 (중·고등학교)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공통)

정정사항 (공통)

기타사항 등 (공통)

#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FAQ



학생들 간의 자발적인 멘토-멘티 활동을 '행동 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기재할 수 있을까요? 방황하는 친구가 마음을 잡을 수 있도록 학업도 도와주고, 자격증 취득 및 취업까지 조언하는 등 멘토 역할을 하는 학생을 칭찬해주고 싶어서입니다.



교사가 직접 관찰하고 평가한 내용을 근거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은 학생을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일종의 추천서 또는 지도 자료가 되도록 작성해야 하므로, 학생의 멘토 활동에 대해 수시로 관찰한 누가기록을 바탕으로 종합의견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자격증 취득에 대한 내용은 기재하실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or 관련 근거

### ○ 202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등 89쪽, 중등 164쪽)

#### 1. 제16조(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는 행동발달상황을 포함한 각 항목에 기록된 자료를 종합하여 학생을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학급담임교사가 문장으로 입력하여 학생에 대한 일종의 추천서 또는 지도 자료가 되도록 작성한다.

### ○ 202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등 27쪽, 중등 27쪽)

다. 학교생활기록부의 서술형 항목은 교사가 직접·관찰 평가한 내용을 근거로 입력하며,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실시한 교육활동 중 교사 지도하에 학생이 직접 작성한 자료\*는 활용할 수 있다.

### ○ 202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등 85쪽)

#### 📢 유의사항

- 초·중학교는 2010학년도, 고등학교는 2011학년도 이후 교내·외 인증은 학교생활기록부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하지 않음.
- 고등학교의 경우, 재학 중 취득한 기술 관련 자격증에 한해 입력이 가능하며, 기술 관련 민간자격 국가 공인 현황은 매년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 과정을 거침([참고자료 2참조]).
- 고등학교의 경우 자격증의 명칭 및 취득 사실은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란에만 입력하고, 학교생활기록부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하지 않음.
- 2020학년도 1~2학년의 경우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은 대입전형자료로 제공하지 않음.



누가기록 없이 '행동 특성 및 종합의견'을 기재해도 되나요?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은 행동발달상황을 포함한 각 항목에 기록된 자료를 종합하여 학생을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입력하며, 교사가 수시로 관찰하고 평가한 누가기록을 바탕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소속 시도교육감이 정한 누가기록 방법에 따라 학생의 수시로 관찰한 행동특성을 반드시 누가기록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종합의견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or 관련 근거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348호)

제16조(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①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수시로 관찰하여 누가 기록된 행동특성을 바탕으로 총체적으로 학생을 이해할 수 있는 종합의견을 담임교사가 문장으로 입력한다.

● 202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등 89쪽, 중등 164쪽)

나. 장점과 단점은 누가 기록된 사실에 근거하여 입력하되, 단점을 입력하는 경우에는 변화 가능성을 함께 입력한다.

● 202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등 91쪽, 중등 166쪽)

표준 가이드라인

- 학생의 학습, 행동 및 인성 등 학교생활에 대한 상시 관찰·평가한 누가기록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의 구체적인 변화와 성장 등을 종합적으로 기재함.

유의사항

- 행동특성과 관련된 내용은 시도교육감이 정한 방법에 따라 누가 기록하여 관리함.

인적·학적사항 (공통)

출결상황 (공통)

수상경력 (중·고등학교)

자격증 및 인증 취득사항 (고등학교)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공통)

교과학습 발달상황 (공통)

자유학기 활동상황 (중학교)

독서활동상황 (중·고등학교)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공통)

정정사항 (공통)

기타사항 등 (공통)



자율활동이 아닌 '행동 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학급 임원(반장, 부반장) 재임기간과 활동 사항 등을 포함하여 기재 가능한지요?



자치활동(임원활동)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임원 종류('전교', '학년', '학급')와 재임 기간, 관련 특기 사항은 자율활동 특기사항에 기재하며, 창의적 체험활동은 다른 영역에 중복하여 입력하지 않습니다. 또한,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는 각 항목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여 학생을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임원 활동에 대한 사항이 학생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자율활동 특기사항에 기재된 내용과 중복되지 않은 내용으로 기재하도록 합니다.



참고 or 관련 근거

○ 202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등 70쪽, 중등 94쪽)

④ 자율활동

다. 자치활동 관련 특기사항에 입력하는 임원의 활동기간은 1학년은 입학일부터 학년말, 2학년은 3월 1일부터 학년 말까지로 입력한다.

라. 자치활동 관련 내용을 특기사항에 입력할 때에는 구체적인 임원의 종류를 알 수 있도록 '전교', '학년', '학급' 등을 입력하고 재임기간을 ( )안에 병기한다.

○ 202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등 89쪽, 중등 164쪽)

제16조(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는 행동발달상황을 포함한 각 항목에 기록된 자료를 종합하여 학생을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학급담임교사가 문장으로 입력하여 학생에 대한 일종의 추천서 또는 지도 자료가 되도록 작성한다.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2-1 학생들과 잘 지내며~’와 같이 구체적인 학급명을 포함하여 기재해도 될까요?



학급명은 기재에 대한 별도의 규제 사항이 없으므로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 입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특정 학급명을 언급하기보다는 ‘학급’ 등으로 일반화하여 학생의 학습, 행동 및 인성 등 학생의 행동특성을 바탕으로 총체적으로 학생을 이해할 수 있는 종합의견을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 or 관련 근거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348호)

제16조(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①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수시로 관찰하여 누가 기록된 행동특성을 바탕으로 총체적으로 학생을 이해할 수 있는 종합의견을 담임교사가 문장으로 입력한다.

● 202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등 91쪽, 중등 166쪽)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표준 가이드라인

- 학생의 학습, 행동, 인성 등 학교생활에 대한 상시 관찰·평가한 누가기록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의 구체적인 변화와 성장 등을 종합적으로 기재함.

인적·학적사항  
(공통)

출결상황  
(공통)

수상경력  
(중·고등학교)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고등학교)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공통)

교과학습  
발달상황  
(공통)

자유학기  
활동상황  
(중학교)

독서활동상황  
(중·고등학교)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공통)

정정사항  
(공통)

기타사항 등  
(공통)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학생들이 등교하기 전 온라인 수업 또는 온라인 조·총례시의 행동 특성을 기록해도 되는 건가요? 혹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도 등교 후 직접 관찰한 내용만 적어야 하는 건가요?



1, 2단계의 경우 실시간 온라인으로 진행한 진로상담 결과 및 교사의 관찰, 평가, 상담 내용 기재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3단계의 경우 유선을 포함한 대면·비대면 관찰·평가 내용이 기재 가능하며, 필요 시 정량기록을 포함하여 기재할 수 있습니다.



**참고 or 관련 근거**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원격수업 및 등교수업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2학기 이후) 안내(교육부 교수학습 평가과-6534, 2020. 8. 31.)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학교급별 평가·기록 기준 〉

구분		초	중	고
행·특	1·2 단계	기재 대상	모든 학생	
		기재내용	교사의 관찰·평가 내용, 상담 내용 ※ 실시간 온라인(유선 포함)으로 진행한 진로상담 결과 포함 가능	
	3단계	기재 대상	모든 학생	
		기재내용	대면·비대면(유선 포함) 관찰·평가 내용 (필요 시 정량기록 포함 가능)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학생의 성명을 포함하여 기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학생의 성명 기재에 대한 별도 규제사항은 없으나, 학생지도 및 상급 학교의 학생선발에 활용되는 학교생활기록부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생 성명의 기재는 가급적 지양 하시기를 바랍니다.



참고 or 관련 근거

● 202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등 23쪽, 중등 23쪽)

1. 제1조(목적)

가. 학교생활기록은 「초·중등교육법」제25조에 따라 학교의 장이 학생의 학업성취도 및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 평가하여 학생지도 및 상급학교의 학생선발에 활용할 수는 학생의 인적사항, 학적사항, 출결상황,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교과학습발달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그 밖에 교육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교육부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교육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348호)

제16조(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①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수시로 관찰하여 누가 기록된 행동특성을 바탕으로 총체적으로 학생을 이해할 수 있는 종합의견을 담임교사가 문장으로 입력한다.

인적·학적사항 (공통)

출결상황 (공통)

수상경력 (중·고등학교)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고등학교)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공통)

교과학습 발달상황 (공통)

자유학기 활동상황 (중학교)

독서활동상황 (중·고등학교)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공통)

정정사항 (공통)

기타사항 등 (공통)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실시한 야간자율학습 관련 내용을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기재할 수 있나요?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는, 교사가 수시로 관찰하여 누가기록된 행동특성을 바탕으로 총체적으로 학생을 이해할 수 있는 일종의 추천서 또는 지도자료가 되도록 종합의견을 기재할 수 있으므로, 교사가 수시로 관찰하여 누가기록한 야간 자율학습 내용은 기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야간자율학습 관련하여 교사가 상시 관찰·평가하여 누가기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기재할 수 없습니다.



참고 or 관련 근거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348호)

제4조(처리요령)

② 사용자는 직접 관찰·평가한 내용을 근거로 자료를 입력해야 한다.

제16조(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①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수시로 관찰하여 누가 기록된 행동특성을 바탕으로 총체적으로 학생을 이해할 수 있는 종합의견을 담임교사가 문장으로 입력한다.

● 202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등 27쪽, 중등 27쪽)

다. 학교생활기록부의 서술형 항목은 교사가 직접 관찰·평가한 내용을 근거로 입력하며,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실시한 교육활동 중 교사 지도하에 학생이 직접 작성한 자료\*는 활용할 수 있다.

•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실시한 교육활동 중에 교사 지도하에 학생이 직접 작성한 자료'로 학생부 기재 시 활용 가능한 자료는 아래 사례로 한정함  
 ① 동료평가서, ② 자기평가서, ③ 수행평가 결과물, ④ 소감문, ⑤ 독후감

- 사용자는 학생부 내 서술형 항목 입력을 위해 학생·학부모 등에게 상기 ①~⑤의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 일체의 자료를 요구하거나 제공 받아서는 안 됨.

# 정정사항 FAQ



답임정보 누락하여 정정할 경우, 어느 항목을 선택해서 정정해야 하나요?



이전 학년도 답임정보 누락으로 정정대장 작성 시 정정항목은 '학년이력'을 선택합니다. 아울러 해당 문의는 나이스 지원센터로 문의하실 사항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 참고 or 관련 근거

### 2020년 나이스 사용자 설명서

당해연도 자료는 [나이스-학적-기본학적관리-기본신상관리-학년반이력]에서 관리하며, 이전학년도 자료는 정정대장 항목 중 '학년이력'에서 선택하여 정정합니다.



인적·학적사항  
(공통)

출결상황  
(공통)

수상경력  
(중·고등학교)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고등학교)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공통)

교과학습  
발달상황  
(공통)

자유학기  
활동상황  
(중학교)

독서활동상황  
(중·고등학교)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공통)

정정사항  
(공통)

기타사항 등  
(공통)



중학교 검정고시를 통해 2018년 5월 1일에 1학년에 입학한 현재 고3 재학생입니다. 5월에 입학 하였으나 고1 창의적 체험활동 자율활동란에 입학 전에 해당하는 4월 내용만 기재가 되어있는 상태 입니다. 만약 삭제를 해야 한다면 해당란이 공란이 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별 이수시간은 학생이 실제로 참여하여 이수한 시간을 입력하며 창의적 체험 활동 각 영역은 시수가 0시간인 경우에도 특기사항을 입력해야 합니다. 해당 학생이 입학하기 전인 2018년 4월에 실시한 자율활동은 정정을 통해 삭제해야 하며, 입학일부터 학년말까지 자율활동 참여여부(출결현황)를 확인하여 실제 이수한 시간이 있다면 이수시간을 정정해야 합니다. 확인결과 학생의 이수시간이 0시간인 경우,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이수시간 정정과 더불어 자율 활동 특기사항은 '(자율활동 미참여 사유)~로 인해 활동 내용이 없음'으로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출결상황 확인을 통해 학생의 자율활동 참여가 확인된 경우,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이수 시간 정정과 함께 자율활동 특기사항에는 정량적 내용을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 참고 or 관련 근거

### ○ 2018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등 69쪽, 중등 93쪽)

#### ㉠ 시간

- 창의적 체험활동의 영역별 이수시간은 정규교육과정 내에서 실시한 학년·학급단위의 활동 시간을 기준으로 본인이 실제로 참여하여 이수한 시간을 입력한다.

#### ㉡ 특기사항

- 가.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의 특기사항은 활동 내용(활동실적 진보의 정도 행동의 변화 등)을 종합하여 학생의 개별적 특성이 드러나도록 입력한다. 단, 봉사활동은 개인 계획에 의해 실시한 내용도 포함하여 입력한다.  
※ 활동실적(내용)의 단순한 나열식 입력은 지양함.

### ○ 202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등 98쪽, 중등 174쪽)

- 가. 당해 학년도 이전의 학교생활기록부 입력 자료에 대한 정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학교생활기록부를 정정할 수 있다.

#### 1) 객관적 증빙자료란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료를 말한다.

- 가) 해당 증빙자료가 해당 학년도에 작성되었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해당 증빙자료가 훈령과 지침 기재요령에 명시된 항목별 입력 주체가 작성한 것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

### ○ 202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등 93쪽)

#### ㉠ 시간

- 가. 창의적 체험활동의 영역별 이수시간은 정규교육과정 내에서 실시한 학년·학급단위의 활동 시간을 기준으로, 본인이 실제로 참여하여 이수한 시간을 입력한다.

※ 정규교육과정 내에서 실시한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영역별 활동 내용은 누가 기록하여 관리함.

※ 어떠한 사유(경조사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출석인정·질병·미인정·기타결석·조퇴 등을 구분하지 않음)로든 참여하지 않은 시간은 제외함. 단, 현장체험학습(수련활동 등) 기간 동안 미참여 학생을 대상으로 별도의 창의적 체험활동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 경우 해당 활동의 누가기록, 이수시간 및 특기사항을 입력할 수 있음.

※ 이전 학년도의 출석인정 결석으로 인하여 참여하지 않은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영역별 이수시간 확인은 교육정보시스템의 [학적]-[출결현황및통계]-[결석자및개인별출결현황]에서 기간 설정 후 '성명으로 조회'로 조회하여 해당 학생의 성명을 클릭하여 확인할 수 있음.

#### ㉡ 특기사항

- 가.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특기사항은 활동 내용(활동실적, 진보의 정도, 행동의 변화 등)을 종합하여 학생의 개별적 특성이 드러나도록 입력한다.

※ 개별적 특성이 드러나지 않는 활동실적(내용)의 단순한 나열식 입력은 지양함.

- 나. 특기사항에 정량적인 기록이 가능한 부분은 횟수와 시간 등을 정량적으로 입력한다.

<예시> 월 1회, 6회, 2020.03.02.-2020.07.08./5회, 4시간, 학급회·학생자치회 임원 활동기간 등

- 다. 창의적 체험활동 각 영역의 이수시간이 0시간인 학생에 대해서는 <예시>와 같이 그 사유를 특기사항에 입력한다.

<예시> 장기결석생인 경우: 장기결석으로 활동 내용이 없음. / 위탁학생의 경우: 위탁학생으로 활동 내용이 없음.

※ 단 위탁교육기관, 병원학교·원격수업기관의 활동 내용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의 자료를 그대로 입력함.

인적·학적사항  
(공통)

출결상황  
(공통)

수상경력  
(중·고등학교)

자격증 및  
인증 취득사항  
(고등학교)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공통)

교과학습  
발달상황  
(공통)

자유학기  
활동상황  
(중학교)

독서활동상황  
(중·고등학교)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공통)

정정사항  
(공통)

기타사항 등  
(공통)



수상기록에 있는 내용이 자율 특기사항에 활동으로 기재된 경우 삭제해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삭제 근거가 되는 증빙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기재요령을 근거로 정정할 수 있나요?



학교생활기록부의 정정은 귀교의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증빙자료의 객관성 여부 등을 포함한 정정 심의를 하여 결정할 사항임(증빙자료를 지정해 드릴 수 없음)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더불어 기재요령에는 3회 이상의 대조·확인 작업을 거쳐 오류가 없도록 하고 정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기재요령은 객관적 증빙자료의 2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자료가 아니므로 단독으로는 객관적 증빙자료가 될 수 없음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참고 or 관련 근거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348호)(초등 96쪽, 중등 172쪽)

제19조(자료의 정정) ① 학교의 학년도는 「초·중등교육법」제24조에 따라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하며, 매 학년이 종료된 이후에는 당해 학년도 이전의 학교생활기록부 입력 자료에 대한 정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정정이 가능하며, 정정 시에는 반드시 정정 내용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정정의 사유, 정정내용 등에 대하여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친 후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별표10의 1조)의 결재 절차에 따라 정정 사항의 발견 학년도 담임교사가 정정 처리해야 한다. 다만, 제7조의 인적·학적사항의 학생정보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인적·학적사항  
(공통)



Q4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 예전 학년 기록 중에 출석에 결석이나 지각, 조퇴가 하나도 없는데 개근이 안 적혀 있습니다.

결석, 지각, 조퇴 등이 하나도 없으니 특별한 근거자료 없이도 개근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도 증빙자료를 따로 받아야 하나요?

출결상황  
(공통)



A4

이전학년도 출결상황 특기사항 정정은 해당학년도 출석부 등 객관적 증빙자료 요건에 부합하는 모든 문서를 첨부한 후 소속교의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증빙자료의 객관성과 정정 여부 등을 심의합니다.

수상경력  
(중·고등학교)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고등학교)



참고 or 관련 근거

○ 202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등 98쪽, 중등 174쪽)

■ 해설

1. 제19조(자료의 정정)

가. 당해 학년도 이전의 학교생활기록부 입력 자료에 대한 정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객관적인 증빙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학교생활기록부를 정정할 수 있다. 다만, 인적·학적사항의 '학생정보'(2020학년도 1, 2학년)와 인적사항(2020학년도 3~6학년)의 정정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 없이 증빙자료만으로 학교생활기록부를 정정할 수 있다.

1) 객관적 증빙자료란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료를 말한다.

가) 해당 증빙 자료가 해당 학년도에 작성되었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

나) 해당 증빙 자료가 훈령과 지침(기재요령)에 명시된 항목별 입력 주체가 작성한 것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공통)

교과학습  
발달상황  
(공통)

자유학기  
활동상황  
(중학교)

독서활동상황  
(중·고등학교)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공통)

정정사항  
(공통)

기타사항 등  
(공통)



졸업년도 1980년인 졸업생의 수기 학생부 정정을 하고자 합니다.

- 1) 생년월일 정정을 하고자 하는데, 학생정보 정정에 해당되어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없이 정정해도 되나요?
- 2) 수기 장부 정정은 어떻게 결재 받나요?
- 3) 수기 장부 정정 시 받는 학교장 날인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 1) 졸업생 학생정보(생년월일 포함) 정정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없이 정정대상 작성이 가능합니다.
- 2)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상은 정정대상 작성 양식(202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중등 176~177쪽 참조)에 따라 별도로 작성하여 내부결재로 4단 결재를 받은 후, 학년도 말에 교육정보시스템의 정정대상과 합철하여 보관합니다.
- 3) 전산으로 관리되지 않은 졸업생의 수기 학교생활기록부의 정정은 학교생활기록부 원본에 두 줄을 긋고 정정하여 학교장의 날인(도장)을 받습니다.



참고 or 관련 근거

○ 202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등 96~97쪽, 중등 172~173쪽)

13. 자료의 정정

제19조(자료의 정정)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정정이 가능하며, 정정 시에는 반드시 정정 내용에 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정의 사유, 정정내용 등에 대하여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친 후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상(별표 10의 1조)의 결재 절차에 따라 정정 사항의 발견 학년도 담임교사가 정정 처리해야 한다. 다만, 제7조의 인적·학적사항의 학생정보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별표 10(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상)

- 마. 졸업생으로서 전산 입력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정정사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친 이후 (제7조의 학생정보란 정정은 제외) 학교생활기록부 출력물에 두 줄을 긋고 정정하여 학교장 날인을 받는다. 관련 서류는 학교생활기록부 출력물 뒤에 첨부하고, 기 제작된 전산매체에 정정내용을 구별할 수 있는 설명서를 첨부해 라벨을 붙여 정정된 내용을 추후에도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Q6

면제 처리 학생 정정 가능 여부 및 전출생 정정 처리 방법 문의  
 1) 면제 처리된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 정정이 가능한가요?  
 2) 전출생의 학교생활기록부는 어떻게 정정 하나요?

A6

1) 유예·면제 등 재학 중이 아닌 학생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도 객관적인 증빙이 있는 경우 정정할 수 있습니다. 면제 처리된 학생의 정정을 요구하는 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현재 관리, 보관하고 있는 학교생활기록부를 학교장이 별표 10의 1 서식에 의거하여 정정하여야 하며, 그 근거가 되는 증빙자료를 첨부합니다.  
 2) 전출생의 이전 학년도 자료의 정정은 전출교에서 자료를 받아 전입교에서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정합니다.

참고 or 관련 근거

● 202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등 99쪽, 중등 175쪽)  
 1. 제19조(자료의 정정)  
 바. 유예·면제·유학 등 재학 중이 아닌 학생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도 객관적인 증빙이 있는 경우는 정정할 수 있다.  
 ※ 현재 학년도 수정은 학적반영을 취소하여 수정하고, 이전 학년도 정정은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을 이용하여 정정함.

● 202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등 29쪽, 중등 29쪽)  
 4. 처리요령

**유의사항**

- 이전학년도 자료의 정정은 전출교에서 자료를 받아 전입교에서 처리함.  
 ※ 전출교는 학교생활기록부의 내용을 대조·확인 작업을 철저히 하여 오류가 없도록 확인하고 자료를 전송할 책임이 있음.

인적·학적사항 (공통)  
 출결상황 (공통)  
 수상경력 (중·고등학교)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고등학교)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공통)  
 교과학습 발달상황 (공통)  
 자유학기 활동상황 (중학교)  
 독서활동상황 (중·고등학교)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공통)  
 정정사항 (공통)  
 기타사항 등 (공통)



전출생의 이전학년도 동아리 특기사항이 누락되어 자료를 요청받았는데, 해당 학년도 누가기록이라도 찾아서 보내면 정정할 수 있을까요?



정정은 원칙적으로 금지이나 객관적 증빙자료가 있을 경우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정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아리활동 특기사항은 서술형 항목으로서 누가기록을 근거로 문장을 서술하는 것은 신중을 기하실 사항이며, 누가기록은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에 필요한 보조부이므로 단독으로는 객관적 증빙자료가 될 수 없습니다.



참고 or 관련 근거

○ 202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등 98쪽, 중등 174쪽)

■ 해설

1. 제19조(자료의 정정)

가. 당해 학년도 이전의 학교생활기록부 입력 자료에 대한 정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학교생활기록부를 정정할 수 있다. 다만, 인적·학적사항의 ‘학생정보’(2020학년도 1, 2학년)와 인적사항(2020학년도 3~6학년)의 정정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 없이 증빙자료만으로 학교생활기록부를 정정할 수 있다.

1) 객관적 증빙자료란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료를 말한다.

가) 해당 증빙 자료가 해당 학년도에 작성되었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

나) 해당 증빙 자료가 훈령과 지침(기재요령)에 명시된 항목별 입력 주체가 작성한 것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

○ 202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등 26쪽, 중등 26쪽)

■ 훈령 제4조(처리요령)

④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에 필요한 보조부는 각 학교의 실정에 맞게 계획을 수립하여 전산입력·관리하되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의 누가기록 방법은 시도교육감이 정한다.



2018학년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참여 내용을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에 기재했어야 하는데,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에 오기재 하였습니다. 정정해야 하나요?



2018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따라, 방과후학교 활동 내용은 '교과학습발달상황' 영역에 교과 담당 또는 담임교사가 '강좌명(주요내용)과 이수시간'만을 기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교과학습발달 상황 영역이 아닌 창체 영역에 기재된 방과후 교육활동 내용은 정정 검토 대상입니다.



참고 or 관련 근거

● 2018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등 100쪽, 중등 133쪽)

12. 교과학습발달상황

[방과후학교 교육활동 입력 방식]

- 방과후학교 교육활동은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입력할 수 있다(입력 여부는 교육적 유의미성 등을 고려하여 학교에서 판단하되 교과담당교사 또는 담임교사가 입력함).
  - ※ 방과후학교 교육활동 이수시간은 계획된 시간으로 입력하되, 이수시간 입력 기준(예시 : 출석률 80% 이상 등)은 당해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로 결정함.
  - ※ 방과후학교 교육활동 입력 시 강좌명, 이수시간을 입력하되, 강좌의 주요 내용을 입력하는 경우 30자 이내로 함.
    - 예1) 방과후학교 강좌명(주요 내용, ○○시간)을 수강함.
    - 예2) 방과후학교 강좌명(○○시간)을 수강함.

인적·학적사항  
(공통)

출결상황  
(공통)

수상경력  
(중·고등학교)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고등학교)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공통)

교과학습  
발달상황  
(공통)

자유학기  
활동상황  
(중학교)

독서활동상황  
(중·고등학교)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공통)

정정사항  
(공통)

기타사항 등  
(공통)



타시도로 전출 간 학생의 누가기록(창의적 체험활동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입력 방법이 시도 간의 다른 부분이 있어서 당해 학년도 누가기록에 대한 입력을 수정(추가 입력 등)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옵니다. 창의적 체험활동과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의 누가기록을 전출교의 요구에 따라 수정(추가 입력) 해야 하나요?



전출이 발생할 경우 해당 전출생이 재학할 때까지의 각종자료(창체 누가기록, 행특 누가기록 포함)를 전출교 소속 시도교육청 지침에 따라 입력하여 전입교로 송부합니다.  
전출입교의 기준이 달라 전입교에서 전출교의 누가기록에 대하여 수정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전출교의 누가기록 방법에 대한 시도교육청 지침이나 학교장의 결정 사항에 대한 증빙자료(지침 또는 심의자료 등)를 전입교로 송부합니다. 다만, 누가기록 자료의 전송 방법은 시도교육청 지침에 따르는 바 시도교육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or 관련 근거

● 202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등 28쪽, 중등 28쪽)

04. 처리요령

자. 학생이 전출·휴학·면제·유예·제적·자퇴·퇴학할 경우에도 원적교에서는 해당 학생이 재학할 때까지의 각종 자료를 교육정보시스템 등에 입력하여 보관해야 한다. 다만,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영역별 누가기록과 행동특성 누가기록 관련 사항은 시도교육청 지침에 따른다.

※ ‘각종 자료’라 함은 학적 특기사항, 출결상황,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영역별 특기사항(누가기록 포함),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누가기록 포함) 등을 말함.

※ 학생부 내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의 누가기록 입력·관리 방법’을 시도교육감이 정하도록 하였는바, 전산입력 방법도 그 중 하나에 해당함.

차. 전출입 시 자료 송부는 다음에 따라 처리한다.

1) 전출 시에는 교육정보시스템 등에 전출일 현재까지의 각종 자료를 입력·확인 후 전입교로 전송한다. 이 때, 입력의 근거가 되는 증빙서류는 원적교에서 보관한다.

※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및 행동특성 관련 누가기록 자료의 전송 방법은 시도교육청 지침에 따름.

  
Q10

이전 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에 누가기록과 정규동아리명은 기재되어 있으나 특기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동아리활동 누가기록을 바탕으로 특기사항 정정이 가능한가요?

  
A10

누가기록은 학교생활기록부의 보조장부로서 단독으로는 정정의 객관적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입력주체가 당해 학년도에 작성했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동아리활동 특기사항이 있는 경우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정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 or 관련 근거

● 202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등 98쪽, 중등 174쪽)

12. 자료의 정정

1. 제19조(자료의 정정)

가. 당해 학년도 이전의 학교생활기록부 입력 자료에 대한 정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객관적인 증빙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학교생활기록부를 정정할 수 있다. 다만, 인적·학적사항의 '학생정보'(2020학년도 1, 2학년)와 인적사항(2020학년도 3~6학년)의 정정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 없이 증빙자료만으로 학교생활기록부를 정정할 수 있다.

1) 객관적 증빙자료란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료를 말한다.

가) 해당 증빙 자료가 해당 학년도에 작성되었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

나) 해당 증빙 자료가 훈령과 지침(기재요령)에 명시된 항목별 입력 주체가 작성한 것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

인적·학적사항  
(공통)

출결상황  
(공통)

수상경력  
(중·고등학교)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고등학교)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공통)

교과학습  
발달상황  
(공통)

자유학기  
활동상황  
(중학교)

독서활동상황  
(중·고등학교)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공통)

정정사항  
(공통)

기타사항 등  
(공통)

Q11

〈사례1〉

이전 학년도 나이스 화면 캡처본을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증빙자료로 인정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례2〉

전출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서 2016~2018학년도 학교스포츠클럽 이수시간이 17시간 미만임에도 특기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생활기록부 정정을 통해 학교스포츠클럽 특기사항을 삭제하려고 합니다.

나이스로 전송 받은 전입 자료에서 학교스포츠클럽 누가기록 나이스 화면을 캡처하여 인쇄한 뒤 원본대조필한 것을 증빙자료로 정정 가능한가요?

A11

나이스 화면을 출력한 후 실제 나이스와의 대조를 통해 원본대조필을 받은 자료의 객관성 여부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학교에서 판단하실 사항임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다만, 해당 자료 단독만으로 객관적 증빙자료로 활용하는데 무리가 있을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객관적 증빙자료 판단 여부 또한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에서 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전입생의 이전 학년도 자료 정정의 경우 전출교의 자료를 전송받아 처리하도록 함에 따라 전출교의 내부기안 문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 2가지 요건(해당 학년도에 입력 주체가 작성)을 충족하는 자료를 함께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or 관련 근거

○ 202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등 98쪽, 중등 174쪽)

■ 해설

1. 제19조(자료의 정정)

가. 당해 학년도 이전의 학교생활기록부 입력 자료에 대한 정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학교생활기록부를 정정할 수 있다. 다만, 인적·학적사항의 ‘학생정보’(2020학년도 1, 2학년)와 인적사항(2020학년도 3~6학년)의 정정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 없이 증빙자료만으로 학교생활기록부를 정정할 수 있다.

1) 객관적 증빙자료란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료를 말한다.

가) 해당 증빙 자료가 해당 학년도에 작성되었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

나) 해당 증빙 자료가 훈령과 지침(기재요령)에 명시된 항목별 입력 주체가 작성한 것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



초

중

고



Q12

진로활동에 정정할 건수가 여러 건인데, 한꺼번에 정정대장을 작성해도 되는지요?



A12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내의 기재예시를 참고하여 항목별로 구분하여 정정 대장을 작성하시기를 안내하여 드립니다. 예를 들어 한 학생의 같은 항목(창의적 체험활동상황) 내 여러 건(자율활동, 진로활동)의 정정은 1건으로 정정대장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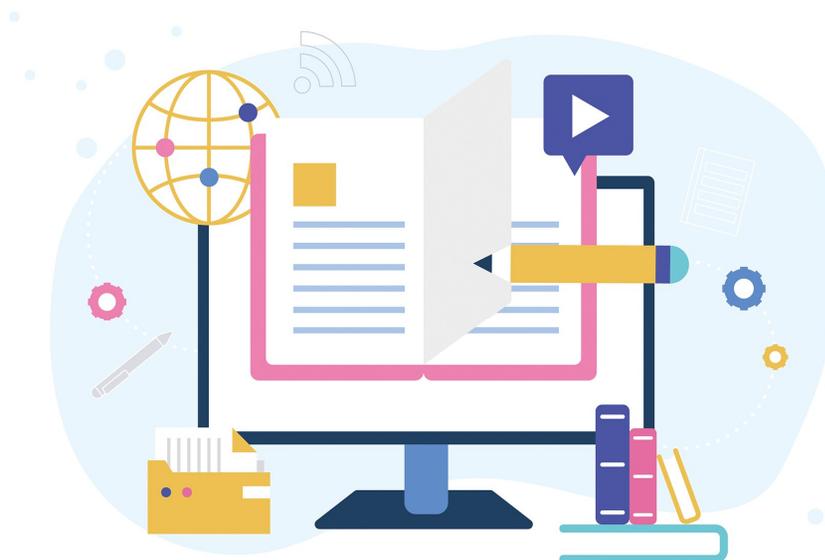
참고 or 관련 근거

202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등 99쪽, 중등 175~176쪽)

19. 자료의 정정

1. 제19조(자료의 정정)

사.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 작성은 정정 항목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인적·학적사항  
(공통)

출결상황  
(공통)

수상경력  
(중·고등학교)

자격증 및  
인증 취득사항  
(고등학교)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공통)

교과학습  
발달상황  
(공통)

자유학기  
활동상황  
(중학교)

독서활동상황  
(중·고등학교)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공통)

정정사항  
(공통)

기타사항 등  
(공통)

Q13

〈사례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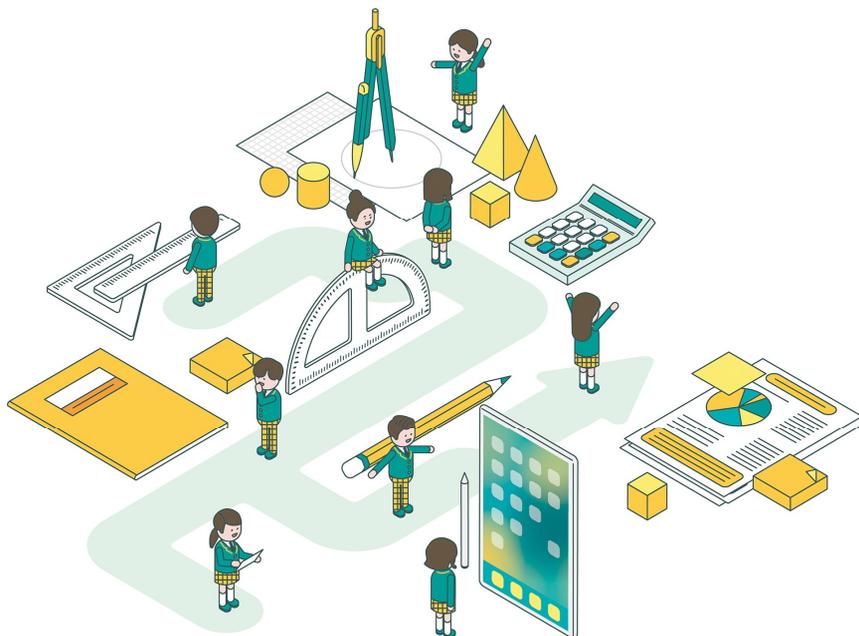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을 상신해야하는데 교감선생님의 병가로 인하여 4단 결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꼭 교감선생님을 결재선에 포함해야 하나요?

〈사례2〉

정정대장은 4단 결재를 거치라고 되어있고 통상 [담임 - 교무부장 - 교감 - 교장]의 결재를 거치는데, 보다 정확한 확인 과정을 위해 '4단 결재'라는 문구를 4단계 '이상'의 결재단계라고 해석하여, [담임 - 생기부담당 - 교무부장 - 교감 - 교장]이런 형태의 결재선도 무방한지 문의드립니다.

A13

부득이한 경우 해당 건의 정정을 위한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참석 위원 중 학교장이 정한 자를 포함하여 4단 결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감 선생님의 장기간 병가로 인하여 4단 결재가 불가하다면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참석 위원 중 학교장이 정한 자를 포함하여 4단 결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반드시 학교장의 결재를 포함하여 4단 결재(4단 결재를 초과하는 결재선 변경 불가)로 처리해야 하며, 학교생활기록부에 명시된 내용은 학교에서 임의로 변경하여 적용할 수 없음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 참고 or 관련 근거

### ○ 202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등 100쪽, 중등 177쪽)

제19조(자료의 정정)

차.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상 결재는 담임(담당), 담당부장, 교감, 교장의 4단 결재를 거치며 대결 또는 전결로 처리하지 않는다.

1) 다만, 부득이한 경우 해당 건의 정정을 위한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참석 위원 중 학교장이 정한 자를 포함하여 4단 결재를 실시할 수 있다. 이러한 사항에도 불구하고 4단 결재가 불가능한 경우 결재 단계를 축소할 수 있다.

- 4단 결재가 부득이한 경우: 교감 미배치교, 담임과 담당부장이 동일인인 경우 등(장기연수, 출장 등의 사유에 따른 장기간 공석은 결재가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
- 4단 결재가 불가능한 경우: 모든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참석 위원 인원을 결재 단계에 포함하였음에도 교원 수의 부족으로 4단 결재가 불가한 경우

2) '담당부장'은 학교생활기록부 업무를 관리하는 부서장이며, 결재 단계에 동일인이 2회 이상 포함될 수 없다.

###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348호)

[별표 10]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상

1.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상

일련 번호	정정 연월일	정정 대상자			정정 사항			결재 및 입력확인				
		학년도·학년·반·번호 (졸업대상번호)	성명	항목	오류 내용 (정정 전)	정정 내용 (정정 후)	정정 사유	담임 (담당)	담당 부장	교감	교장	

인적·학적사항  
(공통)

출결상황  
(공통)

수상경력  
(중·고등학교)

자격증 및  
인증 취득사항  
(고등학교)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공통)

교과학습  
발달상황  
(공통)

자유학기  
활동상황  
(중학교)

독서활동상황  
(중·고등학교)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공통)

정정사항  
(공통)

기타사항 등  
(공통)

  
Q14

학교생활기록부를 정정한 후 정정 전, 후 출력물을 보관해야 하나요?

  
A14

교육정보시스템의 전자결재를 사용하거나 단순 오탈자의 정정이 아니라면, 정정 전, 후 출력물은 따로 보관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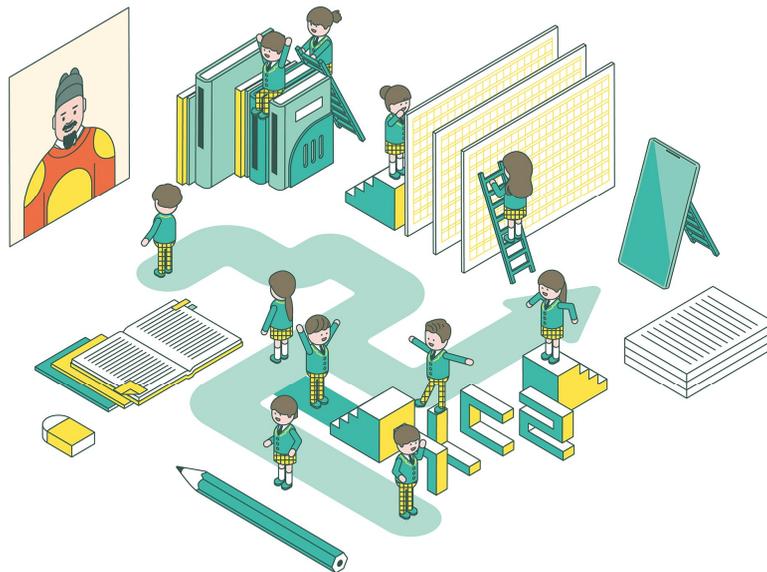
참고 or 관련 근거

○ 202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등 99쪽, 중등 175쪽)

■ 기재요령

1. 제19조(자료의 정정)

마. 교육정보시스템의 전자결재를 사용하는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전 출력물과 정정 입력 후 출력물을 첨부하지 않는다(결재 시 교육정보시스템에서 정정 전 내용과 정정 후 내용 확인 가능).



# 기타사항 등 FAQ



운동부 재학생이 선수등록을 위한 자료로 “학생부(II)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어떤 형태로 제공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재학 중인 운동부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 증명 발급은 교육정보시스템의 [민원] 메뉴를 활용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참고 or 관련 근거

- 202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등 28쪽, 중등 29쪽)
  - ※ 학교생활기록부 증명 발급은 교육정보시스템의 [학생부] 메뉴를 활용하지 않고, 반드시 [민원] 메뉴를 활용함.
  - 단, 졸업예정자 중 상급학교 전형자료를 온라인으로 제공하지 않는 학생의 경우 상급학교 전형자료용 학교 생활기록부는 [학생부]메뉴에서 출력함.



인적·학적사항  
(공통)

출결상황  
(공통)

수상경력  
(중·고등학교)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고등학교)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공통)

교과학습  
발달상황  
(공통)

자유학기  
활동상황  
(중학교)

독서활동상황  
(중·고등학교)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공통)

정정사항  
(공통)

기타사항 등  
(공통)



학교생활기록부와 정정대장의 보존 기간 및 보존기간 이후 처리 방법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는 준영구 보존하는 자료로 학생 졸업 후 5년 간 학교에서 보존해야 하며, 이후 처리 방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보존·관리해야 합니다. 이에, 학교생활기록부 I, II는 졸업 후 5년간은 학교에서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보관하고 이후에는 교육청 자료관으로 이관하여 관리합니다.

아울러,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은 교육정보시스템에서 전자결재 후 학기 중에는 전자문서로 관리하다가, 매 학년 말 처리가 종료되면 출력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준영구 보존해야 합니다.



참고 or 관련 근거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348호)

제18조(자료의 보존)

-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준영구 보존하는 학교생활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 I)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 II)를 학생 졸업 후 5년 동안 학교에서 보관하고, 이후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 31조, 제32조에 따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 202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등 97쪽, 중등 173쪽)

별표 10(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

3. 정정대장 기재 및 관리방법

- 라.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은 교육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결재 절차를 거쳐 학기 중에는 전자문서로 관리하다가 매 학년도 말 처리가 종료되면 출력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준영구 보관하되, 기록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관에 유의한다.



학교생활기록부 자료 보관 시, 출력물을 보관해야 할까요?



재학생 및 졸업생의 학교생활기록부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는 교육정보시스템에서 전자결재 후 전산자료로 보관하며 별도로 출력하여 관리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정정대장의 경우에도 결재 시, 교육정보시스템에서 정정 전 내용과 정정 후 내용을 확인 가능하므로, 교육정보시스템의 전자결재를 사용하는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전 출력물과 정정 입력 후 출력물을 첨부하지 않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or 관련 근거

● 202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등 95쪽, 중등 171쪽)

제18조(자료의 보존)

다. 재학생 및 졸업생의 학교생활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 I)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 II)는 교육정보시스템에서 전자결재 후 전산자료로 보관하고 별도로 출력하여 관리하지 않는다.

● 202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등 171쪽)

다. 학교생활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 I)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 II)는 해당학생 졸업 후 5년 동안 학교에서 보존·관리하고 이후 관할 교육청 자료관으로 이관하여 '기록물 전문 관리기관'으로 이관하기 전까지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라. 교육정보시스템의 졸업생 학생부 보존 시스템을 통해 학교생활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 I)와 학교 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 II) 전산자료를 준영구 보존·관리하므로 별도로 출력하여 관리하지 않는다.

마. 졸업생은 졸업과 동시에 교육정보시스템에서 전자결재 후 보관한다.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348호)

제18조(자료의 보존)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준영구 보존하는 학교생활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 I)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 II)를 학생 졸업 후 5년 동안 학교에서 보관하고, 이후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 31조, 제32조에 따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인적·학적사항  
(공통)

출결상황  
(공통)

수상경력  
(중·고등학교)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고등학교)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공통)

교과학습  
발달상황  
(공통)

자유학기  
활동상황  
(중학교)

독서활동상황  
(중·고등학교)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공통)

정정사항  
(공통)

기타사항 등  
(공통)



학교생활기록부의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 중 진로활동 특기사항에 입력 가능한 최대 글자 수는 어떻게 되나요?



창의적 체험활동의 진로활동 특기사항에 입력할 수 있는 최대 글자수(한글 기준)는 학년 단위로 700자입니다.



**참고 or 관련 근거**

○ 202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등 142쪽, 중등 220쪽)

• 참고자료 9 - 학교생활기록부 영역별 입력 가능 최대 글자수

영역	세부항목	최대 글자수 (한글 기준)	비고
4.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초등)	1~2학년(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안전한생활 특기사항)	2000자	통합
	3~6학년(자율활동, 동아리활동 특기사항)	1000자	통합
	진로활동 특기사항	700자	
	봉사활동실적 활동내용	250자	
영역	세부항목	최대 글자수 (한글 기준)	비고
7.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중등)	자율활동 특기사항	500자	
	동아리활동 특기사항	500자	
	봉사활동 특기사항	-	2020학년도 3학년의 경우 500자
	진로활동 특기사항	700자	
	봉사활동실적 활동내용	250자	

\* : 최대 글자수 기준은 학년 단위임.



영문을 기재하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대입 전송 시 오류 및 해석의 어려움 등이 이유인가요?



학교생활기록부는 공문서이며 법적 장부이므로, '행정업무운영 편람'의 공문서 작성의 일반적인 원칙에 따라야 하며, 문서작성의 일반적인 원칙 중 문서는 어문규범을 준수하여 한글로 작성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348호)」제4조에서도 '문자는 한글로(부득이한 경우 영문으로),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입력하시기를 안내드립니다.



참고 or 관련 근거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348호)

제4조(처리요령)

- ③ 문자는 한글로(부득이한 경우 영문으로),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입력한다.

○ 202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등 27쪽, 중등 28쪽)

바. 학교생활기록부의 문자는 한글로 입력하되, 부득이한 경우 영문으로 입력할 수 있다.

- 외국인 성명
- 도로명 주소에 포함된 영문
- 일반화된 명사(CEO, PD, UCC, IT, POP, CF, TV, PAPS, SNS, PPT) 등
- 고유 명사
- 외국 학교명
- 도서명과 저자명

○ 행정업무운영편람-행정안전부

3. 문서작성의 일반원칙

나. 이해하기 쉽게 작성

문서는 어문규범을 준수하여 한글로 작성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인적·학적사항  
(공통)

출결상황  
(공통)

수상경력  
(중·고등학교)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고등학교)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공통)

교과학습  
발달상황  
(공통)

자유학기  
활동상황  
(중학교)

독서활동상황  
(중·고등학교)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공통)

정정사항  
(공통)

기타사항 등  
(공통)



'UN'이나 'WTO'와 같은 국제기구의 명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특정 기관명은 입력할 수 없으므로, 'UN, WTO 등'의 국제기구도 입력 불가합니다.



참고 or 관련 근거

○ 202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등 18쪽, 중등 18쪽)

3. 다음은 사교육 유발 요인이 큰 사항으로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란을 포함하여 학교생활기록부의 어떠한 항목에도 기재할 수 없음.

가. 각종 공인어학시험 참여 사실과 그 성적 및 수상 실적

【기재불가 공인어학 시험】

영어(TOEIC, TOEFL, TEPS, 중국어(HSK), 일본어(JPT, JLPT), 프랑스어(DELF, DALF), 독일어(ZD, TESTDAF, DSH, DSD), 러시아어(TORFL), 스페인어(DELE), 상공회의소한자시험, 한자능력검정, 실용한자, 한자급수자격검정, YBM 상무한검, 한자급수인증시험, 한자자격검정

- 대학교육협의회, 자기소개서·교사추천서 유의사항 -

나. 교과·비교과 관련 교외대회 참여 사실과 그 성적 및 수상 실적

\*학교장의 참가 허락을 받아 참여한 각종 교외대회에서의 수상실적도 기재 불가함.

다. 교외 기관·단체(장)등에게 수상한 교외상(표창장, 감사장, 공로상 등도 기재 불가함.)

라. 교외 인증시험 참여 사실이나 그 성적

마. 모의고사·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원점수, 석차, 석차등급, 백분위) 및 관련 교내 수상실적

바. 논문을 학회지 등에 투고 또는 등재하거나 학회 등에서 발표한 사실

사. 도서출간 사실

아.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출원 또는 등록 사실

자. 어학연수, 봉사활동 등 해외 활동실적 및 관련내용

차. 부모(친인척 포함)의 사회·경제적 지위(직종명, 직업명, 직장명, 직위명 등) 암시내용

카. 장학생·장학금 관련 내용

타. 구체적인 특정 대학명, 기관명, 상호명, 강사명 등



학교생활기록부 서술형 항목(특기사항) 입력 시에 줄 바꿈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학교생활기록부 서술형 항목은 문단(또는 내용) 단위로 줄 바꿈을 하여 입력할 수 있습니다.



참고 or 관련 근거

- 202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등 29쪽, 중등 29쪽)

유의사항

- 학교생활기록부 자료 입력 시 교육정보시스템에 직접 입력함.  
※ 다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내용을 복사하여 입력한 경우 글자가 정상적으로 출력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등록된 내용을 반드시 출력하여 확인함.
- 학교생활기록부 서술형 항목 입력 시 특수문자, 문단구분 기호(번호) 입력은 지양함.
- 특기사항 등에 입력하는 서술형 문장은 명사형 어미로 종결하며 문단 내용 단위로 줄 바꿈을 하여 입력할 수 있음.

인적·학적사항  
(공통)

출결상황  
(공통)

수상경력  
(중·고등학교)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고등학교)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공통)

교과학습  
발달상황  
(공통)

자유학기  
활동상황  
(중학교)

독서활동상황  
(중·고등학교)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공통)

정정사항  
(공통)

기타사항 등  
(공통)



부위원장인 교감이 출장으로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회의를 개최할 수 있나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회의는 학교장이 정한 부위원장(교감 등)이 참석하지 않았더라도 재적인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 or 관련 근거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348호)

5.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 가. 학업성적 평가 및 관리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학교생활기록부의 전산처리 및 관리, 이에 따른 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나. 위원회의 위원장은 학교장으로 하며,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 중 학교장이 정한 사람으로 하며,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 위원장을 대행한다.
- 다. 위원의 수는 학교 규모에 따라 정하며, 교직원 중에서 교무분장 업무를 고려하여 학교장이 임명한다.
- 라. 학부모의 의견 수렴과 학업성적관리의 투명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학교장은 약간 명의 학부모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마. 위원의 임기는 학년도를 기준으로 매년 3월부터 차년도 2월까지로 한다.
- 바. 학업성적관리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 〈중략〉
  - 사.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 (1) 회의는 학기 초 및 심의사항이 발생했을 때 개의를 하며, 세부적인 개최 시기 등은 시도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따라 학교장이 결정할 수 있다.
    -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인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를 한다.
    - (3) 회의가 종료되면 회의 결과를 작성하고, 위원들의 확인을 받아 보관한다.



행정심판 소송으로 학교폭력 조치사항 8호(전학)에서 3호(학교에서의 봉사)로 변경될 경우, 학교 생활기록부에는 어떻게 기재해야 하나요?



최초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조치사항을 조치 결정일자(교육지원청 내부결재일)와 함께 입력하고, 향후 행정심판·소송으로 조치사항이 변경될 경우에는 최초 조치 결정일자는 변경하지 않되, 조치사항만 수정합니다.



참고 or 관련 근거

202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등 39쪽, 중등 45쪽)

다. '특기사항'란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제1항제8호(전학), 제9호(퇴학처분)에 따른 조치사항은 조치 결정일자(교육지원청 내부결재일)와 함께 결정 즉시 입력한다.

- 1) 조치 결정일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 요청에 대해 교육장이 조치 결정한 날(교육지원청 내부결재일)을 의미함.
2) 행정심판·소송이 청구된 경우에는 조치사항을 먼저 입력하고 향후 조치가 변경될 경우 이를 수정하되, 최초 조치 결정일자(교육지원청 내부결재일)는 변경하지 않음.

인적·학적사항 (공통)

출결상황 (공통)

수상경력 (중·고등학교)

자격증 및 인증 취득사항 (고등학교)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공통)

교과학습 발달상황 (공통)

자유학기 활동상황 (중학교)

독서활동상황 (중·고등학교)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공통)

정정사항 (공통)

기타사항 등 (공통)

Q10

〈사례1〉

코로나19 감염증 상황으로 인해 올해 초등학교 졸업사진을 촬영하지 않았는데 사진을 반드시 교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사례2〉

졸업 예정인 학생입니다. 사진을 교체해야 하는데, 반드시 흰색 배경으로 해야 하나요?

A10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348호) 제17조제4항에 따르면 '사진'란에 입학년도에 촬영한 상반신 사진을 입력하며, 졸업학년도에 촬영한 사진으로 교체 입력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생활기록부에 입력하는 사진은 학생의 얼굴을 잘 식별할 수 있도록 원형을 유지해야 하며, 천연색 상반신 사진(3.5\*4.5 사이즈)으로 입력합니다. 또한, 졸업 학년도에 해당하는 고등학생의 경우 여권용 사진 규정에 따라 촬영한 사진으로 교체 입력하는데, 현재 여권 사진 규정상 배경색은 흰색만 허용됩니다.

인적학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진, 주소)은 상급학교의 학생 선발에 활용되는 자료이므로, 소속 학교의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방법을 강구하여 반드시 졸업학년도에 촬영한 사진으로 교체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or 관련 근거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348호)

제17조(기타사항)

- ④ '사진'란에 입학년도에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사진(3.5cmX4.5cm, 전산자료)을 입력하며, 졸업학년도에 촬영한 사진으로 교체 입력한다.

● 202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등 167쪽)

1. 제17조(기타사항)

가. 고등학교의 경우, 특성화고등학교의 학기별 전공코스 이수, 산업체 실습과정(현장실습) 등을 명확히 구별하고, 일반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자율고등학교의 개인별 과정 선택, 직업과정 위탁교육, 대안 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교육과정 이수에 따른 특기사항을 입력한다. 단, 학점제를 적용받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에서 타학과 수업을 24학점 이상 이수하면 '부전공'으로 입력한다. 입력한 내용이 없을 경우에는 출력되지 않도록 한다.

나. 입학 당시 사진을 활용하되 졸업학년도에 촬영한 사진으로 새로 입력한다. 다만 고등학교의 졸업학년도에 입력하는 것은 여권용 사진으로 한다.

Q11

재학생 중 다른 사람의 사진이 입력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본인 사진으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정정 대장 작성이 필요할까요?

A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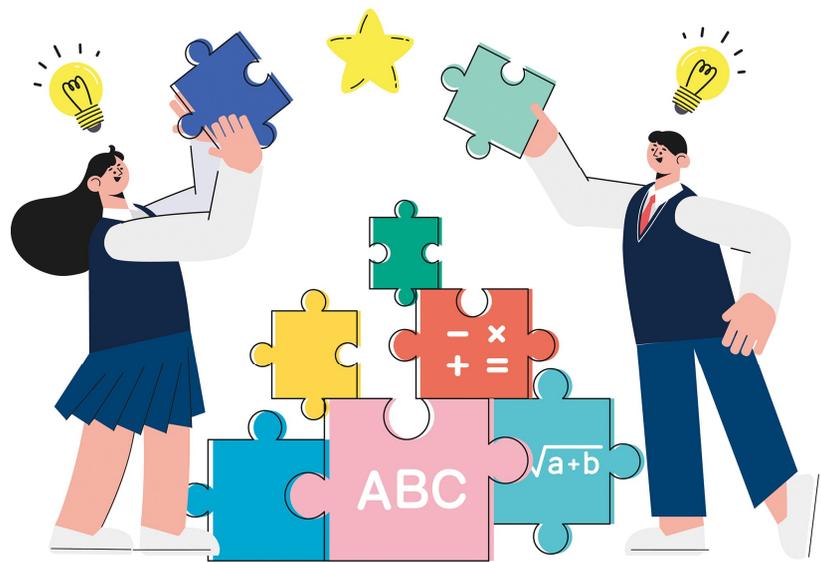
학교생활기록부의 학적사항의 재학생 사진은 증명사진으로 학적사항에서 정정절차 없이 교육정보 시스템의 [학적]-[기본학적관리]-[기본 신상 관리]에서 바로 변경 가능합니다.

참고 or 관련 근거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348호)

제17조(기타사항)

- ④ '사진'란에 입학년도에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사진(3.5cm×4.5cm, 전산자료)을 입력하며, 졸업학년도에 촬영한 사진으로 교체 입력한다.



인적·학적사항 (공통)

출결상황 (공통)

수상경력 (중·고등학교)

자격증 및 인증 취득사항 (고등학교)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공통)

교과학습 발달상황 (공통)

자유학기 활동상황 (중학교)

독서활동상황 (중·고등학교)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공통)

정정사항 (공통)

기타사항 등 (공통)

  
Q12

이전 학년도에 학교생활기록부 마감 이전에 받았던 생활통지표의 종합의견(긍정적 내용)과 학생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의 내용(부정적 내용)이 상반되게 기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당황스러웠던 기억이 납니다.  
당해학년도 학생부 마감 이전에 자녀의 학교생활기록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12

당해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자료 제공 시에는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영역별 특기사항, 교과학습 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자유학기활동상황 영역별 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제공하지 않으며, 그 외 항목은 제공 가능합니다.



참고 or 관련 근거

● 202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등 28쪽, 중등 29쪽)

04. 처리요령

1. 제4조(처리요령)

다. 학기 중 학생/학부모서비스나 교육정보시스템의 [민원] 메뉴에서 학교생활기록부 자료 제공 시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영역별 특기사항,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자유학기활동상황 영역별 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당해학년도에는 제공하지 않는다.

※ 학교생활기록부 증명 발급은 교육정보시스템의 [학생부] 메뉴를 활용하지 않고, 반드시 [민원] 메뉴를 활용함. 단, 졸업예정자 중 상급학교 전형자료를 온라인으로 제공하지 않는 학생의 경우 상급학교 전형자료용 학교생활기록부는 [학생부] 메뉴에서 출력함.

  
Q13

생활중국어 과목의 경우 한자의 사용이 많고 한자 표기도 많은데, 교과학습 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자유학년 교양과목의 특기사항에 한자표기를 할 수 있을까요?

인적·학적사항  
(공통)

출결상황  
(공통)

  
A13

학교생활기록부는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에 의해 작성되는 공문서(법정장부)로 가독성 제고를 위해 문자는 한글로 입력하되, 부득이한 경우 영문으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어 관련 교과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이라 하더라도 중국어 및 한자 표기는 불가한 사항입니다.

아울러, 「행정업무운영 편람」(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국어기본법」 제3조제3호에 의거 문서는 어문 규범을 준수하여 한글로 작성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수상경력  
(중·고등학교)

자격증 및  
인증 취득사항  
(고등학교)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공통)



참고 or 관련 근거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348호)

제4조(처리요령)

- ③ 문자는 한글로(부득이한 경우 영문으로),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입력한다.

○ 202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등 27쪽, 중등 28쪽)

04. 처리요령

1. 제4조(처리요령)

바. 학교생활기록부의 문자는 한글로 입력하되, 부득이한 경우 영문으로 입력할 수 있다.

- 외국인 성명
- 도로명 주소에 포함된 영문
- 일반화된 명사(CEO, PD, UCC, IT, POP, CF, TV, PAPS, SNS, PPT 등)
- 고유 명사
- 외국 학교명
- 도서명과 저자명

교과학습  
발달상황  
(공통)

자유학기  
활동상황  
(중학교)

독서활동상황  
(중·고등학교)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공통)

정정사항  
(공통)

기타사항 등  
(공통)

  
Q14

학교생활기록부에 K-MOOC와 관련한 내용을 기재할 수 있나요? 만약, 기재할 수 없다면 그 근거 내용은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A14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제8조에 따르면, 학교는 국가교육과정 및 시도 교육과정에 따라 학교교육과정을 편성하여야 하며, 편성된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을 운영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교육을 담당하는 초중고의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 교육관련 기관의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으므로, 학교생활기록부에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저촉되는 ‘K-MOOC’ 는 물론이고 ‘KOCW’ 등도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없습니다.





## 참고 or 관련 근거

###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공교육을 담당하는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관련기관의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교육기본법」에서 정한 교육 목적을 달성하고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8조(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 등) ① 학교는 국가교육과정 및 시·도교육과정에 따라 학교교육 과정을 편성하여야 하며, 편성된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방과후학교 과정도 또한 같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방과후학교 과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편성된 학교교육 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에서 「초·중등교육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학교의 휴업일 중 편성·운영되는 경우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중학교 및 고등학교 중 농산어촌 지역 학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지정하는 도시 저소득층 밀집 학교 등에서 운영되는 경우

### ○ 202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등 88쪽, 중등 155쪽)

#### 유의사항

##### •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 입력 불가 항목

- 각종 공인어학시험(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시 유의사항 참조)참여 사실과 그 성적 및 수상 실적, 교과·비교과 관련 교외대회 참여 사실과 그 성적 및 수상 실적(학교장의 참가 허락을 받아 참여한 각종 교외대회에서의 수상실적도 기재 불가), 교외 기관단체(장)등에게 수상한 교외상(표창장, 감사장, 공로상 등도 기재 불가), 교내·외 인증시험 참여 사실이나 그 성적, 모의고사·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원점수, 석차, 석차등급, 백분위) 및 관련 교내 수상실적, 논문을 학회지 등에 두고 또는 등재하거나 학회 등에서 발표한 사실, 도서출간 사실,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출원 또는 등록 사실, K-MOOC

※ 대회와 관련하여 대회의 명칭을 단순행사로 변경하여 입력하는 행위 불가 ,

※ 위 항목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포함하여 '수상경력'이외 학교생활기록부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하여서는 안 됨.

인적·학적사항  
(공통)

출결상황  
(공통)

수상경력  
(중·고등학교)

자격증 및  
인증 취득사항  
(고등학교)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공통)

교과학습  
발달상황  
(공통)

자유학기  
활동상황  
(중학교)

독서활동상황  
(중·고등학교)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공통)

정정사항  
(공통)

기타사항 등  
(공통)

  
Q15

학교생활기록부는 과거형으로 기재 불가한가요?(예시: ~을 발표하였음)

  
A15

학교생활기록부 서술형 문장의 시제에 대한 별도 규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학교생활기록부는 당해 학년도의 학생의 성장과 학습 과정을 상시 관찰 평가한 누가기록 중심의 종합기록이어야 하므로, 가급적 상시 관찰에 의한 현재형으로 작성하도록 권고드립니다.



참고 or 관련 근거

- 202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등 29쪽, 중등 29쪽)
  - 특기사항 등에 입력하는 서술형 문장은 명사형 어미로 종결하며, 문단(내용) 단위로 줄 바꿈을 하여 입력할 수 있음.



Q16

학생부 서술형 항목에 인명(유명인, 위인 등), 영화제목, 노래제목, 지역명, 유적지명, 관광지명 등을 기재해도 되나요?

A16

학생들이 참여한 강의(또는 교육활동)의 강사가 아니라면 단순 인명은 기재 가능합니다. 아울러 부모(친인척 포함)의 사회 경제적 지위를 암시하는 내용은 기재 불가합니다.  
또한, 영화나 노래 제목은 별도 입력 여부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기재할 수 있으며, '지역명', '문화유적지명', '관광지명'의 경우 기관명, 상호명에 해당되지 않는 단순 지명, 관광지지의 경우에는 기재 가능합니다.

참고 or 관련 근거

○ 202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등 18~19쪽, 중등 18~19쪽)

- 02.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시 유의사항
- 3. 다음은 사교육 유발 요인이 큰 사항으로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란을 포함하여 학교생활기록부의 어떠한 항목에도 기재할 수 없음.
- 타. 구체적인 특정 대학명, 기관명, 상호명, 강사명 등

【참고】

- \*기관명
  - 교육관련기관(교육부 및 소속기관\*, 시도교육청 및 직속기관·교육지원청 및 소속기관\*\*에 한함)의 경우 기관명을 입력할 수 있음.
  - \* 교육부 소속기관: 대한민국학술원, 국사편찬위원회, 국립국제교육원, 국립특수교육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중앙교육연수원 (총 6개 기관)
  - \*\* 시도교육청 및 직속기관·교육지원청 및 소속기관: [참고자료 5] 참조
  - 봉사활동 실적의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에는 구체적인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을 입력함.
- \*\*강사명
  - 특정 강사명은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 모두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참여한 강의(또는 교육활동)의 강사를 말함.

인적·학적사항 (공통)

출결상황 (공통)

수상경력 (중·고등학교)

자격증 및 인증 취득사항 (고등학교)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공통)

교과학습 발달상황 (공통)

자유학기 활동상황 (중학교)

독서활동상황 (중·고등학교)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공통)

정정사항 (공통)

기타사항 등 (공통)



## | 개발진 명단 |

- **기 획** 신진용 (교육부 교수학습평가과장) 서지연 (한국과학창의재단 창의활동지원팀장)  
유상범 (교육부 장학관) 홍석호 (한국과학창의재단 연구원)  
여인경 (교육부 교육연구사) 박건희 (한국과학창의재단 연구원)  
허혜령 (교육부 교육연구사) 차은채 (한국과학창의재단 연구원)  
박민선 (교육부 교육연구사) 김민교 (한국과학창의재단 연구원)
- **집필 및 검토진** 송준현(광주하남초등학교) 이래용(서울강현중학교) 박소영(부산과학고등학교)  
정준형(울산강남초등학교) 이영주(대전둔산중학교) 박희진(경남마산고등학교)  
한창희(서울백운초등학교) 정진구(강원미로중학교) 유경옥(경기곤지암고등학교)  
한서희(충북고등학교)

## 2020 학교생활기록부 종합 지원센터 질의·회신 사례집

- 발 행 일 : 2021년 2월
- 발 행 처 : 교육부, 한국과학창의재단
- 주 소 : (교육부)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1동  
(한국과학창의재단)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602(삼성빌딩) 8층 창의활동지원팀
- 편집·인쇄 : (주) 동진문화사(02-2269-4783)
- 자료 탐 재 : 학교생활기록부 종합 지원포털(<https://star.moe.go.kr>)

※ 이 자료는 학교생활기록부 종합 지원센터의 2020년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참고자료로, 학생부 이해 및 참고를 위한 목적 외에 본 자료를 활용할 경우 저작권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2020  
학교생활기록부 종합 지원센터  
**질의·회신 사례집**